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UCI]I804:24011-200000283080

2020년 2월

박사학위논문

개인의 조절초점과 사고방식이 법조전문직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조선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김 기 영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개인의 조절초점과 사고방식이 법조전문직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Regulatory Focus and Thinking Style on the Public Perception for Legal Profession

2020년 2월 25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김 기 영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개인의 조절초점과 사고방식이 법조전문직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이 계 원

이 논문을 경영학 박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10 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김 기 영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김기영의 박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최두진
위 원	전남대학교 교수	장 신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강성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이창재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이계원

2019년 12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목 차

제 1 장 서론 ·····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 1
제 2 절 연구의 목적 ····· 5
제 3 절 논문의 구성 ····· 7

제 2 장 변호사제도의 문제점 ····· 8

제 1 절 일반론적 고찰 ····· 8
제 2 절 변호사 양성 · 인증제도 ····· 10
제 3 절 상업광고 등 공공성 문제 ····· 13
제 4 절 전문화와 유사직역 ····· 16
제 5 절 사법정책적 문제 ····· 18

제 3 장 이론적 배경 및 가설의 설정 ····· 22

제 1 절 이론적 배경 ····· 22
1. 개인의 성향 ····· 22
2. 개인의 사고방식 ····· 23
제 2 절 연구 가설 ····· 25
1. 가설 설정을 위한 논의 ····· 25
2. 개인의 조절초점성향의 주 효과 ····· 27
3. 개인의 사고방식의 주 효과 ····· 29
4. 변호사제도에 대한 인식의 매개효과 ····· 32
5. 양성 · 인증제도에 대한 인식의 매개효과 ····· 35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 3 절 연구모형 ····· 38

제 4 장 연구방법 ····· 40

제 1 절 연구설계 ····· 40
제 2 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도구 ····· 42
1. 개인의 조절초점성향 ····· 42
2. 개인의 사고방식 ····· 43
3. 변호사제도에 대한 인식 ····· 43
4. 양성 · 인증제도에 대한 인식 ····· 44
5. 상업광고에 대한 인식 ····· 45
6. 전문분야제도에 대한 인식 ····· 45
7. 유사직역에 대한 인식 ····· 46
제 3 절 설문의 구성 ····· 47
제 4 절 분석방법 ····· 49

제 5 장 실증분석 및 가설검증 ····· 50

제 1 절 실증분석 ····· 50
1. 표본의 특성 ····· 50
2. 측정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도 분석 ····· 50
제 2 절 가설검증 ····· 55
1. 조절초점 성향에 따른 분산분석 ····· 55
2. 사고방식에 따른 분산분석 ····· 60
3. 매개효과 ····· 62

제 6 장 결 론 ····· 72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 72
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 77
제 3 절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방향 ····· 82

참고문헌 ····· 85

[부록]설문지 ····· 100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목 차

<표 1> 비교법적 관점에서 바라 본 우리나라의 변호사제도 ····· 26
<표 2> 설문지 구성 및 내용 ····· 48
<표 3> 타당성 및 신뢰도 분석결과 ····· 52
<표 4> 변수들 간 상관관계 분석결과 ····· 54
<표 5> 조절초점 성향과 기술통계량 ····· 55
<표 6> 조절초점성향과 일원배치 분산분석 ····· 57
<표 7> 조절초점성향 간 다중비교 ····· 58
<표 8> 전체주의 성향과 기술통계량 ····· 60
<표 9> 전체주의 성향과 일원배치 분산분석 ····· 62
<표 10> 조절초점성향과 양성 · 인증제도에 대한 인식과의 관계에서 변호사 제도에 대한 인식의 매개효과 ····· 63
<표 11> 조절초점성향과 상업광고에 대한 관계에서 변호사제도에 대한 인식의 매개효과 ····· 65
<표 12> 조절초점성향과 전문분야제도에 대한 관계에서 변호사제도에 대한 인식의 매개효과 ····· 66
<표 13> 조절초점성향과 유사직역에 대한 관계에서 변호사제도에 대한 인식의 매개효과 ····· 67
<표 14> 사고방식과 상업광고에 대한 관계에서 양성 · 인증제도에 대한 인식의 매개효과 ····· 68
<표 15> 사고방식과 전문분야제도에 대한 관계에서 양성 · 인증제도에 대한 인식의 매개효과 ····· 69
<표 16> 사고방식과 유사직역에 대한 관계에서 양성 · 인증제도에 대한 인식의 매개효과 ····· 70
<표 17> 연구가설 검증결과의 요약 ····· 71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그 림 목 차

<그림 1> 개념적 연구모형 1: 조절초점성향/전체주의성향에 따른 공공성 인식정도 차이 ····· 38
<그림 2> 개념적 연구모형 2: 변호사제도 전반의 공공성 인식의 매개효과 39
<그림 3> 개념적 연구모형 3: 변호사 양성제도 공공성 인식의 매개효과 ··· 39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ABSTRACT

The Effect of Regulatory Focus and Thinking Style on the Public Perception for Legal Profession

Kiyoung Kim
Adviser: Prof. Kyewon Lee Ph.D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It is true that the lawyer system, like other professional groups, has the character of public policy issues as to how the state should design, enact, substantiate and regulate. Therefore, Korea has a lot of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law experts, including lawyers, judges and prosecutors. For example, a court judge or a justic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s required to be appointed from among lawyers, or a law school graduate who is authoriz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to sit for the bar exam and passed it. The attorneys also can not freely utilize the commercial advertisement unlike ordinary businesses.

Until now, the research on the system of legal profession has been conducted mainly on the qualitative method and literature review, such as the products on legal history or comparative law.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ublic perception of the attorney system by combining the business research model. As mentioned above, the attorney system has the same characteristics as the knowledge industry or general expert group, while the sub-national character is mixed. This studies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hopefully will be a reference in improving it by knowing how the citizen perceives the attorney system depending on their regulatory focus and typical attending behavior. For example, we may have form a science-based understanding from this studies whether law education or professional training should be undertaken by a national institution such as the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or whether it is appropriate for the state to pay tuition or training expenses by granting the civil-servant status to trainees.

The studies conducted an empirical survey of citizen and policy stake-holders with respect to the dichotomy between the market and public role. In addition to the limitations-such as common method variance, social desirability and response errors, exclusive use of cross-sectional studies, as well as inherent limitations in the on-line survey method - the empirical analysis of public attitude to the attorney system overall and specific recent issues were performed. The author also suggested a new identity of profession, world view and ethics as a professional. Especially, I believe that it contributed to the field on the research of legal profession or attorney system provided that two theories popularly used in the market research - "regulatory focus" and "attending holistically or analytically," offered the basis of investigation as an independent variable beyond a simple empirical survey. As shown in the empirical data and analyzed result, the attorney system can not ignore the characteristics as a market and knowledge economy. Furthermore, the international reality of national system on attorney status and qualification heralds the policy priority as market-oriented and free competition. Therefore, groups, who have sided with the tradition to perceive the attorney system as having the essence of quasi-national system or public ethics, can not ignore the increasing need of marketability. One of the implications for business discipline is the convergence tendency betwee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market and public institution" or "studies on business administration and public policy"

In other words, we see that the new concepts, including a social enterprise or public corporations, business ethics, human capital, entrepreneurs' social responsibilities and public attitudes, are being emphasized in the private sector, which traditionally has a character as a market or problem of private enterprise. On the other hand, the national system of legal profession is being transformed as a business or industrial nature of knowledge economy in accordance with a market logic. Another implication is that, beyond the traditional legal ethics, it is necessary to rehabilitate the attorneys' professional ethics as well as market reorganization, as seen in CEO studies in the business discipline.

Key words: legal profession, attorney system, law school, attorney advertisement, sociocultural materialism, professional ethics, marketability, knowledge economy, legal education, expert system and public policy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국문초록

개인의 조절초점과 사고방식이 법조전문직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지금까지 변호사제도에 관한 연구는 주로 법사학적 또는 비교법적으로 문헌조사에 근거한 질적 연구방법에 의해 수행되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비즈니스 리서치 모델을 결합하여 변호사 제도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조사함에 있다. 변호사 제도는 지식산업이나 일반 전문가 그룹과 동일한 특성을 가지지만, 다른 한편 준 국가적·공공적 성격이 혼합되어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본 연구를 통하여 시민들이 개인의 조절초점성향과 사고방식에 따라 변호사 제도와 관련 쟁점들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파악함으로써 사법정책적으로 참고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예를 들어, 변호사 충원에 있어 사법연수원과 같이 국가기관을 중심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로스쿨제도를 통하여 양성할 것인가 그리고 변호사 상업광고를 어느 정도 허용할 것인가와 같은 정책적 문제들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는 시장성 v. 공공성이라는 변호사제도의 이중성과 관련하여 정책 이해관계자에 대한 실증적 조사를 수행하였다.

나아가 연구자는 법조전문직으로서의 정체성을 위하여 새로운 社會文化的 物質主義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시장 조사에 널리 사용되는 두 가지 이론, 즉“조절초점성향”과“사고방식”에 따른 경험적 조사, 실증 데이터 및 분석 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변호사제도는 시장을 전제하고 있고 지식산업으로서의 특성을 무시할 수 없다. 또한 법조전문직을 둘러 싼 국제적 현실은 시장지향적이고 자유로운 경쟁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변호사제도를 준 국가적 시스템 또는 공공윤리적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인식하는 전통은 시장과 경쟁이라는 중대한 현실을 외면하고 전문직 문화나 전문직 사회학적 관점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본 논문의 경영학적 의미의 하나는 “시장과 공제도” 내지 “경영학과 정책학”의 절충적 동질화 경향 (convergence tendency)이라 할 수 있다. 즉, 전통적으로 시장이나 기업문제로서의 성격을 갖는 사적 영역에 대하여 사회적 기업 혹은 공익기업, 윤리경영, 인간자본, 기업인의 사회적 책임과 공인으로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서의 자세가 강조되고 있는 한편, 전통적으로 공공적 성격의 제도로 인정되어 온 변호사제도가 시장논리에 따라 지식산업적 성격의 기업 내지 산업 문제로서의 성격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전통적 법조윤리를 넘어 유명 CEO 등 경영인 연구에서 보듯이 전문직 윤리에 더하여 변호사들의 인식을 시장적으로 재무장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는 동일 방법 편의 (common method variance)나 온라인 방식의 설문조사, 선행연구의 부족, 조절초점성향이나 사고방식의 측정을 위해 외국에서 개발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는 점, 횡단적 분석만을 하였다는 점 등 여러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한계는 향후 연구를 통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

핵심 단어 : 법조전문직, 변호사제도, 로스쿨, 변호사 상업광고, 사회문화적 물질주의, 전문직윤리, 시장성, 지식산업, 법학교육, 전문가 시스템 및 공공정책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변호사제도는 베버 (1954)가 말하였듯이 사회적 · 경제적 차원의 제도로서 준 관료주의적 성격을 갖는다.[1] 다수주의와 선거에 기반한 보통민주주의를 넘어 전문가 그룹의 정치 내지 그들의 정치적 역할에 주목하여 그 현실적 · 당위적 타당성을 철학적으로 궁구하는 학자 그룹도 있다(Evetts, 2003; Heinz, 2011; Kalyvas, 2008). 변호사를 비롯한 전문가 그룹에 대한 시스템적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특별한 취급을 하는 것에 대하여 학자들 간에 이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 갈등이론에 따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전문가 그룹의 본질을 계급투쟁이나 사회적 갈등과 그로 인한 투쟁의 산물로 바라보게 된다(Lowith, 2002; Polany, 2018). 반면에 그룹 내 훈련과 인증, 징계 등 교육과 전통을 통하여 공식화된 일정한 시스템을 가진 공공적 성격을 갖는 사회 조직의 하나로 바라보는 견해도 있다(Ritzer, 1975). 경영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변호사는 일정한 자격을 전제로 국가의 허가를 받아 법률서비스의 제공과 그 대가를 수익으로 하는 개인 기업이거나, 그 규모에 따라 중소기업 내지 대기업의 하나로 바라보게 될 것이다. 또한, 새로운 자본주의 또는 창조경제를 말하는 경영학자들은 그들의 창의성과 인적 자본의 시각에서 변호사나 그들의 사회적 역할을 바라볼 것이다.

---

1) 본고에서 '변호사 제도'라 함은 변호사라는 단어의 통상적 의미 범주에 따라 변호사를 교육, 훈련, 인증, 상벌하는 시스템과 변호사라는 공통의 전문직 자격자로 구성되는 전문직 사회의 윤리·규율체계 하에서 법률업무를 취급하고 일정한 수익을 얻는 자들에 관하여 국가나 전문직 사회가 입안·시행하는 공적 시스템을 의미한다. 이는 협의의 변호사제도라 할 수 있고, 검사, 판사, 법학교수 등은 동 시스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법조일원화 내지 같은 법조전문직이라는 공통의 기반에 따라 변호사제도를 광의로 정의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검사, 판사, 행정부 법률전문직 등 변호사자격을 가지고 공직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 공적 시스템이 될 것이다. 변호사제도를 최 광의로 이해할 때, 변호사자격 부여 관련 논란이 있는 법학교수나 공인중개사, 세무사, 변리사 등 변호사 유사직역까지도 포함하는 정책적 문제의 대상이 되는 제도 내지 공적 시스템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고에서 사용하는 변호사제도 내지 법조전문직이라는 용어는 문맥에 따라 협의, 광의 내지 최광의로 이해할 수 있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요컨대 변호사는 일정한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법학지식과 법률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실무지식을 습득하여 국가가 정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출 것을 전제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익으로 취하는 지식기업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는 데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Gordon, 1996). 한편, 다른 전문가 그룹과 달리 그 서비스 영역이 사회윤리나 시민의 생활에 중요하게 얽혀 있는 법률과 공적 질서의 문제라는 점에서 그 準 국가제도로서의 성격이 다른 전문가 그룹에 비해서 크다 할 수 있다. 공공적 성격은 불법 낙태, 부정회계 등에 대한 사회적 지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의사나 공인회계사, 기타 다른 전문가 그룹에게도 공통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것이지만, 변호사제도와 같이 포괄적으로 국가나 법제도에 관련되는 것은 아니다. 국립의료원이나, 감사원, 보건복지부, 관세청 등 다른 전문가그룹과 관련이 있는 국가기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3권 분립 하에 국가 3권의 하나를 담당하고 있는 법원·검찰제도나 다양한 행정관청에서 법률서비스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변호사를 공직에 채용하는 것은 변호사제도의 準 국가제도로서의 성격이 두드러진다 할 수 있다(Burnham, 1995).

변호사제도 역시 다른 전문가 그룹과 같이 국가가 어떠한 제도를 두고 이를 규제할 것인가는 공공정책적 문제로서의 성격을 갖는다(Freidman, 1975). 우리나라 역시 변호사법을 필두로 변호사나 검·판사 등 소위 법조인들로 통칭되는 법률전문가들과 관련되는 많은 법령조항을 가지고 있다. 예컨대, 법관이나 검사를 포함하여 헌법재판소 재판관 또는 대법관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들 중에서 임명토록 한다거나, 변호사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교육부가 인가한 로스쿨 졸업생에 한한다거나, 변호사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세무사로서 활동할 수 있다거나, 변호사는 일반 기업과 달리 상업광고를 자유롭게 할 수 없다는 것 등이 그 예이다(Brooks, 1994). 대한민국의 변호사 제도는 다른 전문가제도와 비슷하게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일본식 제도에서 시작하였다. 이후 변호사제도는 소수 엘리트만의 전유물인 것으로 당연히 인식되면서 사회적으로 부와 출세로 나아가는 방편으로 인식되어 왔다. 관료적 · 봉건적 유습이 남아 있는 한국사회에서 산업화를 위한 개발독재 시대가 오래 지속되면서 변호사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크지 않았다. 문제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의식을 가진 일부 법과대학 교수 그룹에서 변호사 숫자를 늘려야 한다거나, 법률기술자를 양산할 뿐인 변호사제도로부터 의식 있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변호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양심적 변호사를 길러 낼 수 있는 법학교육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을 뿐이었다(안경환, 2005).

대통령 선출방식이 1987년 직선제 개헌을 통하여 정상화되면서 한국의 민주주의도 새로운 희망이 열리게 되었다. 노태우 정권을 지나 김영삼 정부가 등장하면서 새로운 화두로 등장한 세계화의 물결은 선진국클럽이라 할 수 있는 OECD 가입과 함께 사회 여러 분야에서의 세계화를 지향하게 되었다(김종철, 2006; Bernabe-Riekohl, 1995). 그 중의 하나가 당시 가장 후진적 분야라고 여겨진 사법제도와 법학교육 분야의 개혁이었다. 민주주의와 세계화는 도식적으로 미국식 제도를 숭상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 이후의 과정을 통하여 증명되게 된다. 먼저, 3년제 대학원 체제인 미국식 로스쿨이 일본을 거쳐 한국에 뿌리내리게 된다. 그리고 2019년 현재 로스쿨 8기 졸업생이 배출되어 많은 법조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영미식 배심제, 민사 집중심리제, 검·경간 권한조정 등 미국식 제도가 모범이 되어 사법제도가 바뀌었거나 바뀌어 가고 있다. 한편, 우리 법조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군사정부 시절에는 '법은 정치의 시녀'라는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권력에 추종할 뿐인 유약한 존재, 민주화 이후에는 무분별한 사정을 비꼬는 검찰공화국, 그리고 전관예우 등 변호사 사회의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는 법조관행 등 부정적 이미지가 여전하다(신평, 2013; 하태훈, 2013). 또한, 최근 알려진 대법원장을 필두로 법원행정처 사법관료 그룹의 불법·부정행위는 변호사제도 또는 법조전문직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변호사제도는 건국 이후 일본의 제도를 받아들인 이후, 사법시험, 사법대학원, 사법연수원제도 등 법률가 양성과 관련하여 약간의 변천을 겪은 것을 제외하면 변호사법이나 검찰청법, 법원조직법 등 검찰, 법원 내지 변호사회의 구성과 역할 등에 있어 별다른 변화 없이 계속되어 왔다(안경환, 1988). 가장 괄목할 만한 변화는 1990년대 민주화와 함께 로스쿨로의 개혁이 논의되다가,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007년 일본의 영향을 받아 미국식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어 법률가 양성 시스템의 변화가 있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미국식 로스쿨제도의 도입은 변호사 양성을 시장원리에 따라 소비자가 비싼 등록금을 부담하더라도 변호사 양성을 정규 학교교육에 맡기자는 정책적 성격을 갖는다 할 수 있다.[2] 시장의 포화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 창조경제론에서 얘기하는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 사회철학 내지 인식전환과 함께, 첨단과학기술과 전문화라는 쌍두마차를 통하여 진전되어 가고 있다.[3] 시장과 경쟁의 문제는 공공적 성격과 함께 시장적 성격이 혼재되어 있는 전문직 세계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Giddens, 1971). 현실적으로 WTO의 출범과 서비스 무역협정의 타결, 그로 인한 법률서비스 시장 개방은 범세계적 시장경제체제의 규범화 내지 가혹한 시장현실을 웅변하고 있다.

WTO 출범 해인 1995년 즈음은 우리 정부가 문민화·세계화를 부르짖으면서, 미국식 로스쿨 도입과 사법개혁의 문제가 오랫동안 논의되던 시절이다(육소영, 2004; 안경환, 2005). 시장에서 우리 변호사의 경쟁력 내지 시방개방의 문제에 더하여 로스쿨 도입 및 사법시험 폐지 문제는 변호사, 법학교수, 시민 등 여러 이해관계자 간 사회학적 차원의 문제를 같이 가지고 있어 사법개혁 논의 시작 이후 가장 치열한 논쟁거리였고, 2007년에야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4] 이후 사법시험 합격자수가 약속대로 매년 줄었고, 2017년 결국 폐지되었으나, 새로운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이 낮아 일부 지방대 로스쿨은 합격률 저조로 새로운 문제를 떠안고 있다. 즉, 변호사시험이 학교에서 충실한 수업을 받으면 당연히 합격하는 “학교중심형 자격시험”이 아닌 예

2) 사회적 계층간 이동은 공공정책적으로 정책의 효과라는 관점에서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 새로운 로스쿨은 사회계층간 이동을 막는 실패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없지 않았고, 정책담당자들은 학생들에게 100% 장학금을 줄 것을 로스쿨 인가의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후 인가시 장학금지급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할 능력이 없게 된 로스쿨에 대한 사회적 비난여론이 있었다.

3) 신 사회주의자들에 의하여 새로운 기술자본으로 애널적 인식 혹은 비판적 모니터의 대상으로 취급되기도 하지만, 시장문제의 심각성은 주지하는 바이다. 소비자의 내심은 결국 시간이 가면서 새로운 상품에 익숙해지게 되며, 이러한 현실 뒤에는 시장에서의 경쟁과 전문화가 숨어 있다.

4) 사회적 갈등의 문제로 여러 관점에서 정책적 장단점이 치열하게 논의되었다. 예컨대 로스쿨을 도입하는 것이 과연 국제화 시대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있는 변호사를 양성하는데 우월한 제도인가 또는, 새로운 로스쿨 인가기준으로 전문화나 특성화를 인가기준에 포함시킨 것들이 한 예라 할 수 있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전 사법시험처럼 “과거식 임용시험” 형태로 변질되어 원래 로스쿨 도입 취지가 무색하게 되고 있다고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이호선, 2015-3, 2015-4; 이준웅, & 이재협, 2016; 남선모. 2014; 성중탁, 2018). 한편, 국가공무원 제도와 맞물려 헌법 또는 법률에서 공직 자격요건으로 변호사 자격을 가질 것을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가? 변호사는 법상 당연히 세무사 또는 변리사자격자로 취급되어 세무나 특허 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일정한 기간 법학교수로 재직한 자에게 당연히 변호사자격을 부여하여야 하는가?[5] 등등 변호사라는 法律專門職 성격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정책적 · 제도적 문제들이 적지 않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변호사의 상업적 광고를 어느 정도 허용할 것인가도 검토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제 2 절 연구의 목적

프랑스 사회학자인 자크 아탈리(Jacques Attali)는 인공지능 시대에 있어 절대로 사라져서는 안 되는 3가지 직역을 말한 바 있다. 즉, 소멸위험이 증가하는 순서에 따라 산부인과, 어린이집, 유치원 같은 어린이 보호직군, 환경보호 등 자연보호직군, 변호사, 판사, 기자, 문학, 역사, 철학 교수처럼 자유를 수호하는 직군이 그것이라고 말한다. 나아가 베버, 폴라니, 터너 등의 연장선상에서 정치와 전문직 문제, 즉 프로페셔널리즘의 문제를 인공지능의 문제에 연결시킨다(Weber, 1954; Polany, 2018). 즉, 한 사회에서의 권위와 가치는 결국 그 사회의 정치적 방향성과 관련을 가지며, 한 사회가 어떤 권위를 제거하겠다고 마음먹으면 활용이 용이한 여성 노동자 비율을 증가시키는 등 그 의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권위를 대표하는 것들의 가치를 빼앗기 시작하는데, 자유를 수호하는 직군에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기 시작했으며, 나머지 두

5) 미국의 경우 일부의 州에서 다른 州의 변호사자격을 가진 자가 일정기간 변호사로서 good standing, 즉 일반적 기준에 비추어 하자 없이 변호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경우, on motion, 즉 신청이 있는 경우 변호사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어느 州 건 변호사 시험에 한 번도 합격하지 않은 자인 경우 오랜 기간 법을 가르친 법학교수라 하여도 on motion에 따라 변호사자격을 부여하는 州는 거의 없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직군도 점차 그러한 추세를 보일 것이라고 하였다. 인공지능 문제는 본 논문에서 직접적으로 다루진 않았지만, 인공지능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러한 논쟁은 辯護士制度에 대한 본질적 이해와 정책적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의미가 크다 할 것이다(설민수, 2016).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달리 변호사제도의 본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경영학적 관점에서 과학적으로 조사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변호사제도는 지식산업 내지 일반적 전문가 그룹과 같은 성격을 가지는 한편, 준 국가적 성격이 혼재되어 있다. 우리 시민이 변호사제도를 어떠한 성격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조사함으로써 향후 변호사제도를 개선함에 있어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변호사 교육을 사법연수원과 같은 국가기관이 전부 또는 일부 맡아야 할 것인가, 연수생에 대한 공무원 신분을 부여하여 학비 혹은 훈련비 등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가? 등 많은 문제에 대하여 해결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이나 일본식 법학교육을 도입하였다면 변호사의 상업광고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될 수 있다. 또한 변호사의 본질을 지식산업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는 이러한 나라들과 같이 우리나라 시민들도 변호사의 상업광고를 대폭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가를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세무사 자격시험을 거치지 않고 법령에 따라 변호사가 당연직 세무사 자격을 갖는 것도 실증적으로 조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책을 고안한다면 시민민주주의, 법치국가 내지 헌법국가의 理想에 보다 부합하게 될 것이다. 다른 전문가 그룹과 달리 변호사제도는 在曹 · 在野에 대한 엄격한 선긋기 속에서도 공식적으로는 독립된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내지 검찰제도 등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 국가적 성격이 두드러진다. 따라서 변호사제도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한 제도의 고안 내지 개혁은 변호사제도의 본질은 물론 개별적 현안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조사가 필요하다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 중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주제에 관한 실증조사 분석을 하려고 한다. 즉, 개인의 조절초점성향과 사고방식에 따른 변호사제도 및 양성 · 인증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여러 현안 쟁점 중 가장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부각되고 있는 변호사 상업광고, 전문분야제도 및 변호사 유사직역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실증조사 분석하여 그 연구결과가 전달하는 의미를 알아보기로 한다. 나아가 본 연구의 시장성 v. 공공성이라는 2분법적 틀에 기초한 양적 연구를 질적 제언으로 보완한다는 차원에서 변호사 사회 내지 변호사의 정체성에 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이는 나날이 변화하는 정책적 환경과 사회적 가치관 속에서 변호사 사회 내지 변호사가 가져야 할 기본적 정신자세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제 3 절 논문의 구성

이하 제 2 장에서는 본고의 주제에 따라, 변호사제도, 변호사 양성·인증제도, 상업광고 등 변호사의 공공성 문제, 전문분야제도 등 전문화 및 유사직역 문제 등에 관한 기존의 담론을 살펴보기로 한다. 나아가 변호사제도의 개혁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논문들을 정리해 보았다. 한편 제 3 장 1절에서는 개인의 조절초점성향과 사고방식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 본 후, 제 2 절에서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제 3 절에서 연구모형을 제시하기로 한다. 제 4 장 연구방법의 장은 제 1 절 연구설계, 제 2 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도구, 제 3 절 설문의 구성, 제 4 절 분석방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5 장 제 1 절은 실증분석, 제 2 절은 가설검증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제 6 장은 연구결과를 요약한 연구의 요약, 연구의 시사점,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방향으로 각 구성되어 있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 2 장 변호사제도의 문제점

제 1 절 일반론적 고찰

변호사제도 내지 법조제도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법조제도를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결과물과 전문직 일반에 관한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또한 사적 연구, 비교법적 연구 법조제도에 관한 법철학적 내지 사회학적 이해와 분석을 내용으로 하는 것 등이 주류를 이룬다. 이 중 법철학 내지 사회학적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문직의 사회학 내지 프로페셔널리즘과 관련하여 M. MacDonald(1995)는 의사, 변호사, 회계사의 전문프로젝트를 연구하였고, 엘리엇 프라이드슨(Eliot Freidson)과 이영희(Young-hee Lee)는 전문직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과 전망을 논하였으며(Freidson, 1994; Lee, 2008), 강명구는 언론전문직의 사회학에 관하여 서술하였다(1993). 실증적 연구로 사회복지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감정노동, 이직의도 등 전문직 자아개념과 사회적 지원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가 있다(양정남, 최은정, 김장훈, & 김건태, 2015). 전문직의 정체성과 직무만족에 관하여는 여러 연구가 있다. 예를 들어, 민원홍 등 3인은 성취감, 승진, 책임감과 사명감, 근무조건 외 사회복지학위 소지여부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혔다(민원홍, 이형섭, & 김형민, 2010). 직무만족 향상 및 이를 통한 직무성과 증진을 위하여 정책적·실천적 노력이 필요하다.

한상희(2010)에 의하면 직업인으로서의 전문직은 마르크스의 종적인 계급분화로 보기보다는 횡적인 분업체제 내에서 생각해야 한다. 즉, 전문직은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독점적 생산자이고, 이를 지탱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로 지식의 상품화, 이윤의 극대화를 위한 독점의 구축, 상품화와 독점을 정당화하기 위한 지지의 동원, 집단내부적인 통제장치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베버적 전통에 의한 전문직의 개념화는 “전문직이 나름의 집단을 형성하고,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내부적인 규율을 행하며, 전문직으로 되기 위하여 또는 그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각종의 교육·훈련, 전문적 지식·기술과 이론적·학문적 지식의 연계, 그리고 그것이 수행한다고 주장되어지고 있는 제반의 사회적 기능들" 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전문직의 이해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기능한다. 이러한 베버의 분석은 전문직의 사회학(Sociology of professions)이라는 관점에서 전문직 개인과 사회라는 미시적·탈 정치적 분석으로 전문직의 제도화 · 조직화 문제나 국가권력에 의한 독점적 지위의 보장이나 강화·유지에 관한 당위론적 · 거시적 관점에서 제기되는 의문에 대하여 해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6]

마르크스 관점에서의 전문직은 그 사회학적 · 미시적 본질은 베버와 동일하지만, 생산관계론에 따른 착취계급과 피착취 계급관, 잉여가치의 착취자, 잉여가치의 생산자, 제 3의 계급 등의 개념을 통하여 현상화되는 차이점이 있다(한상희, 2010). 또한, 마르크스 이론에 따르면 경영학자들과 같이 전문직을 하나의 자본(human capital)으로 보거나, 자본가계급으로 분류할 수 있고, 나아가 지배 · 착취계급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전문직은 부모가 의사나 변호사라고 자식도 의사 또는 변호사인 것은 아니듯이 재생산 능력(social reproduction)이라는 관점에서 시장의 성격이 보통의 자본과는 전혀 다른 것이거나,[7] 독립된 제 3의 무엇이거나, 보통의 자본 · 노동 법칙에 모순되는 운동법칙에 따라 과거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 직능대표제에서 보듯이 부르조와 정치세력화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인식위에 전문직을 바라보는 기본 시각을 미국식과 대륙식으로 구분하고, 미국의 경우 법률전문직을 일종의 인간자본 내지 법률 상인으로 보며, 국가와는 독립된 하나의 계급으로 분류할 수 있다. 독일과 같은 대륙식은 법 이데올로기에 강하게 종속되는 특징을 가지며, 국가법의 집행자 · 실천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자본가에 대한 주변적 계급

6) 완전한 정보를 가진 경제행위자에 기초한 자유경쟁시장 이론모형 등 고전주의 경제학의 시장법칙과 유사하게 분석의 단위가 개개의 행위자에 놓여져 있는 행동과학 내지 사회학적 분석에 머무르는 한계가 있다. 거시적 차원의 예로 바이마르 헌법에서 직능대표제를 시행하였지만, 오래 가지 못하고 본 기본법에서 그것이 폐지된 것은 정치라는 것이 보편적 일반성을 지향한다는 특징을 갖기 때문이다.

7) 다만, 법률전문직 종사자의 2세들이 법률전문직에 진출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의 경우 사회 지배층의 로스쿨 입학청탁 내지 법률전문직 세습을 조장하는 입학정책 등이 문제되고 있는 바, 자본주의 사회의 윤리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내지 관료에 준하는 자들의 집단으로 볼 것이다.

세 번째라 할 수 있는 구조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본 전문직은 개인의 의지나 보편적·집합적 존재를 초월한 별도의 사회세력으로서, 집단의식에 초점을 맞춘 뒤르켐((Durkheim, 2018)의 전통을 이어 받아, 사회체계의 한 부분을 구성하는 일단의 직업적 결합체이다(한상희, 2010). 이에 따르면 법률전문직은 "정부와 고객 사이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중재하고자 노력하는 정부조직의 가장 핵심적 부분"으로 규정될 수 있을 것이다(Horsky, 1952). 이러한 구조 기능주의적 전문직觀 역시 미시론적 · 존재론적 차원의 논의에 머물러 전문직의 존재 자체가 그 사회에서 전문직 형성과 운영을 당연시하는 순환론법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 즉, 비판론적·당위론적 검토 과정을 결여하고 있다. 따라서 뒤르켐이나 파아슨스(Parsons)와 같은 입장에 있는 로꾸혼 가헤이(六本佳平)와 같이 전문직업인은 공공에의 봉사라고 하는 의무감에 의하여 일반적인 직업인과 구별된다는 중요한 명제를 아무런 검증 없이 현상학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입장에 의하면 이해관계그룹인 전문직 사회는 일반인으로부터 유리된 폐쇄회로를 형성해 가게 되고, 그들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엄격하고도 공식적인 독점체계를 형성·유지하기 위하여 국가권력을 이용하며, 일종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고, 사회 전 구성원을 위한 일반적 가치의 담지자 · 실천자로서의 기능을 행한다. 그러나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즉, 전문직 영역과 사회 일반의 통제구조와의 교호관계에 관한 분석이 결여되어, 전문적 판단이나 업무행태, 전문직이 지향해야 할 사회적 목표 등에 관하여 일반인 내지 고객의 통제가 전혀 인정되지 않게 되고, 전문직 스스로의 내부통제장치만이 거론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제 2 절 변호사 양성 · 인증제도

변호사제도와 변호사의 재생산이라는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법조인을 어떻게 양성하고 법조인의 자격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 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사법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문제는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국가제도 내지 정치적 문제와 관련되어 있으며, 근·현대 헌법 내지 관료제의 한 문제로 깊이 뿌리 박혀 있어, 소위 생산관계를 지탱하는 상부구조, 즉 부르조아 정치·경제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Albrow, 1975; Lowith, 2002; Trubek, 1972; Swedberg, 2018). 즉, 변호사의 양성 · 징계 · 훈련 · 포상 등의 문제는 갈등이론에 따를 때에 독점적 전문직, 진입장벽, 시장에서의 자유경쟁이라는 정치·경제적 차원의 가치를 둘러싼 계급 간 갈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단순 이분법을 넘어 현 한국 실정에서 변호사제도 문제는 여러 차원의 문제가 복합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관한 연구는 로스쿨 도입 찬반론 내지 개혁론에 관한 연구, 로스쿨 제도의 운영과 현황에 관한 연구, 로스쿨과 법조인제도의 원활한 연계에 관한 연구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영역의 연구로 박선영(2010)은 법조직 사회에서 중요한 의견발표의 장이 되고 있는 '고시계'라는 잡지를 통하여 진입장벽 높은 로스쿨은 위헌적이고 실무교육도 미흡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로스쿨 인가주의와 고 합격률의 변호사시험으로는 수준 높은 법조인을 양성하기 곤란하다. 이호선(2012, 2015-1, 2016-1, 2016-2), 신평(2013) 등은 헌법상 평등한 공무담임권의 침해, 기회에 있어서의 차별 내지 로스쿨의 특권층화를 우려하거나, 로스쿨 체제의 문제점을 다양하게 지적하고 있다. 한편, 보다 실제적으로 로스쿨 도입에 반대하고, 그 대안에 관하여 탐색할 필요가 있다(이관희, 2005). 이호선(2012, 2015-2, 2015-3, 2015-4, 2016-1) 역시 여러 논문에서 로스쿨의 문제점을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하고 도입을 반대하거나 비판하면서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두 번째 영역의 기존 연구를 보면, 로스쿨에서의 민법교육과정의 현실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전경근, 2014). 로스쿨은 전반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으며, 법조인 양성을 위한 로스쿨의 교육방향을 보다 확고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具相鎭, 2010; 김종철, 2005; 박동진, 2011). 백태승(2011)은 로스쿨 시대에 있어 사법연수원의 존재 이유에 대하여, 남선모(2014)는 로스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하여 고찰하고 연구하였다. 로스쿨제도 도입 후 학부과정에서의 법학교육방향과 패러리걸(paralegal) 제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도의 국내도입 문제는 여러 관점에서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고 논의되어야 한다(유선봉, 2003). 로스쿨체제 하에서 한국법학교육은 많은 문제점을 배태하고 있으며 이는 시급히 정상화되어야 한다(이관희, 2011). 이호선(2015-4)은 전국의 로스쿨 교수, 법과대학 교수, 변호사 등 세 집단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로스쿨 체제 하의 법조 인력양성에 관한 대내외적 평가를 분석하고 연구하였다. 로스쿨 운영 및 성과에 관한 조사결과 및 실증적 분석에 의하면, 현행 로스쿨제도의 문제와 개선방향에 대한 많은 시사점이 도출된다(黃海鳳, 2007).

세 번째 영역에 관한 연구를 보면 이재협, 이준웅, 황현정(2015) 등은 로스쿨 도입으로 인한 변화를 1,020명의 법률가를 상대로 설문조사방법을 통하여 분석 · 평가하였다. 조사대상은 3부류로 로스쿨 1기부터 3기 졸업 법률가를 조사의 표적집단, 동 시대에 사법연수원 (40기-43기)을 수료한 법률가를 비교집단, 로스쿨 도입이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경력법률가를 평가집단으로 삼아 표본추출방식으로 응답을 비교했다. 김제완(2012)은 로스쿨 졸업 변호사들의 진로확대에 관한 문제점, 현황, 해결방안 등에 관하여, 준법지원인 제도, 법무담당제도 등 전형적인 대안의 한계를 논하고, 새로운 법조인양성제도 하에서 변호사의 위상과 역할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신규 변호사에 대한 의무적인 실무수습제도, 사내변호사에 대한 규제 등은 문제점이 있으며, 변호사중개제도, 법률구조의 활성화, 질서 있는 취업지도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로스쿨 도입 이후 로스쿨이 일종의 직업교육기관이 됨으로써 학문으로서의 법학 내지 교육 역할을 수행해 나갈 학문 후속세대가 고사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 도쿄대와 교토대의 학문후속세대 양성 현황을 조사하고 서울대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양국의 제도개선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한다(천경훈 & 이상훈, 2015).

이관희(2005; 2011)는 새로운 로스쿨 도입이라는 한국이 처한 현실에서 세 가지 제언을 하고 있다. 즉, 미국의 일부 주 변호사제도와 같이 변호사시험 없이 로스쿨 졸업증으로 변호사자격을 줄 것, 일본과 같이 법학사와 비법학사를 구분하여 법학사는 2년, 비법학사는 3년으로 로스쿨 교육기간에 관한 법을 개정할 것, 법률시장의 전문화·국제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법학교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수에게 변호사자격을 부여할 것 등을 제언하였다. 변호사 시험의 성격과 로스쿨 도입의 성패는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변호사시험 헌법분야 출제방향, 로스쿨에서의 헌법교육, 미국의 변호사시험 헌법분야 출제방향 등을 비교해 볼 때, 바림직한 헌법출제방향을 정립하고 변호사시험을 선발시험이 아닌 자격시험의 성격을 갖도록 유지할 필요가 있다(임지봉, 2010). 같은 취지에서 시험이 지나치게 쉬어 변호사로서의 자격이 충분한 자를 가려내는 변별력이 없으면 문제라 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시험이 지나치게 어려우면 로스쿨 교육을 변호사시험 준비만을 위한 것으로 편향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로스쿨의 파행을 가져 올 수 있다고 보았다. 로스쿨과 법조직의 연계에 관한 논의는 이외에도 꽤 많다 할 수 있는데, 오정면(2010)과 이용구(2011)는 새로운 로스쿨 체제하에서 재판연구관의 확대 등 신규 법조인력 활용방안에 대하여, 이제원(2009)은 로스쿨 졸업 후의 변호사교육에 대하여 논의한 바 있다.

제 3 절 상업광고 등 공공성 문제

미국의 공적변호제도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정준영(2004-1; 2004-2)은 미국의 국선변호제도는 공적비용으로 변호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공적변호제도라 할 수 있고, 그 중 “퍼브릭 디펜더(Public Defender)” 제도는 정부의 한 부서로 변호인 조직을 두고 국선변호를 전담시키는 제도로 정착되어 있다고 보았다. 이는 변호사직역의 공공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국가비용으로 설립되는 “공익법무회사” 개념과 유사하다. 한편, 미국의 공적변호제도를 본받아 국선변호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퍼브릭 디펜더 시스템의 장점을 이용하여 적은 예산으로 국선변호료를 변호활동에 상응하게 체계화 ·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변호사의 공공성과 관련하여 한국 “공익변호사”의 현황과 전망은 복잡한 양상을 띄고 있다(염형국, 2013). 변호사는 전문직업인으로 법정 안 밖에서 법률사무를 제도적으로 독점하여 그 독점체제의 이익을 향유하는 만큼, 그 대가로 일정한 정도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공익변호사란 일정한 공익단체에 소속되어 낮은 보수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를 받고 비영리로 공익활동을 전담하는 프로보노(Probono)적 성격을 가지면서, 2000년대에 들어 활성화되고 있다. 변호사의 공익활동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는 한편, 변호사법 개정을 통해 공익법무법인의 근거를 마련하고, 집단소송제도 내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며, “법률조력인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 지원시스템의 확충을 통하여 공익변호사에 대한 정보제공 및 멘토링, 공익변호사 진로를 가진 학생을 위한 로스쿨 학비지원제도, 공익변호사 임금지원제도, 로스쿨 공익법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또한, 변호사회 차원에서 공익법률기금을 조성하여 지원하여야 하고, 공익활동에 관한 교육 및 중개를 위한 “공익활동교육중개센터”가 설립되어야 한다. 한편, 사법연수원의 공익기금조성, 개별 로스쿨에서 동기를 위한 공익변호사양성기금 조성,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공익 펠로우십 운영계획 등은 변호사의 공익적 활동과 관련하여 괄목할 성과이다. 한편, 황승흠(2004)은 변호사의 공익활동의무에 관하여 논하고 있다.

변호사라는 전문직의 이중적 성격(시장성 v. 공공성)과 관련하여 사적 非行이나 직무 외 非行까지도 포함할 수 있도록 변호사법은 너무 포괄적이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모든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징계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이러한 변호사법 규정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의 지식산업적 성격보다는 공공적 성격을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렇듯 품위라는 모호한 개념을 도입하여 막연히 도덕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법률조항과 판례는 비판받아야 하며(박선아, 2017). 2006년부터 2014년까지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사례 특히, 직무 외 非行에 대한 실증조사를 통하여 직무 외 비행 관련 대한변호사협회 징계 현황을 살펴보았을 때, 많은 문제점이 있으며 개선책이 필요하다 아니할 수 없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대리인이며, 법제도의 공무담당자라 할 수 있는 公人으로서 변호사윤리장전이 정하는 여러 직업윤리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 바, 이러한 변호사 직업윤리는 변호사로서의 정체감과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 내지 공정성을 담보하는 기능을 한다(정형근, 2009).

인간노동의 인공지능에 의한 대체가 화두가 되고 있는 이때에, 이병규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018)는 인공지능 법률서비스에 대한 변호사법 제 109조 제 1호 적용여부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현재 법률서비스 분야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국내외 일부 대형 로펌에서 이를 도입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으며, 인공지능시장을 넓히고 관련 산업을 진흥하고자 위 조항에 대한 위헌론 또는 개정론이 제기되는 시점이다. 이러한 때에 동 연구는 변호사 직역은 상업논리나 시장논리만이 적용될 수만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재미있는 논쟁거리를 야기하고 있다. 이석현(2017)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있어 인공지능이 법률전문가를 대체할 수 있는지, 대체한다면 어느 정도로 대체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해야한다고 한다. 이는 우리 사회가 법률전문가에게 독점적 법률서비스 공급 지위를 부여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한 궁극적 질문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았다. 한편, 법조윤리를 독자적인 분과 즉, 일반윤리학의 한 분과인 법률가학으로 정립하기 위한 이론적 시도를 하고 있는 연구들이 있다. 법조윤리가 변호사법 및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내용에 관한 해설을 대상으로 하는 단순한 수험과목이 되어서는 안 되고, 법률가학 나아가 법률가의 인간학이 되어야 한다(具相鎭. 2010). 이는 변호사제도가 인간 철학과 법률가의 정체성 내지 공공성에 관한 인식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현대는 돈과 상업성에 기초한 자본주의사회라 할 수 있고, 이러한 자본주의 체제는 법률가에게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윤리를 도외시하고 상인성만을 부각시키고 있다(황남석, 2010). 그는 자본주의에 물들지 않은, 나아가 자본주의의적 부정과 부패에 대한 방부제로서 윤리적 법조가 필요하고 윤리적 법률가의 탄생만이 자본주의 사회 윤리를 지탱해갈 수 있다고 보았다(Smart, 1993). 같은 맥락에서 법조윤리교육을 한국의 로스쿨이 관심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주제로 보는 한편, 적정 수 변호사 문제, 심도 있는 사법개혁, 법치와 경쟁력확보를 위한 실태분석의 필요성 등 우리 변호사체계에 대한 학술연구라는 관점에서 문제점이 많다 아니할 수 없다(한상희, 2008, 2010).

변호사는 그 업무의 공공적 성격으로 인하여 아무런 규제 없이 상업적 광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Hykand, 2010; Wallace, & Mckelvey, 1987). 예컨대 미국은 변호사의 인터넷을 이용한 광고에 대하여 2가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일반적 광고는 폭넓게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허용하면서도, 잠재적 고객 개발을 위하여 특정인을 상대로 한 직접 권유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Calvani, & Shuford, 1988). 변호사 광고의 공공적 규제는 美 변호사 협회가 제정한 변호사윤리준칙에 따르되, 각 주에서 이를 주 사정에 맞도록 수정하여 채택하고 있다(Johns, 1988; Maute, 1985).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서울변호사회가 한 법무법인의 TV 상업광고를 허용해 변호사 업계에도 본격적인 TV 광고시대가 열릴지 주목된다. 즉,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17. 12. 17. 광고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법무법인 헤리티지의 방송광고 심의 안건을 통과시킨 것이다. 국내 변호사업계는 지속적인 경기불황에 따른 소비자 수 감소와 변호사간 경쟁심화로 심각한 경영난 또는 부익부 · 빈익빈 현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신규 변호사의 양산으로 변호사 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직역 개발, 공동사무소 내지 소규모 로펌 등을 통한 경영난 해소 등 생존을 위한 다각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법률서비스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가장 적극적인 방안으로 변호사 광고의 중요성을 생각해 볼 시점이 되었다(Meyer, & Smith, 1978). 국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알 권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며, 경제와 시장의 발전으로 인하여 법률서비스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어느 때 보다도 높다. 이러한 경제 · 사회적 변화는 향후 변호사 광고가 법률소비자를 유인하는 중요 역할을 수행하리라 예상된다(Smith & Meyer, 1980).

제 4 절 전문화와 유사직역

변호사제도의 직역 내지 전문화와 관련하여 공인중개변호사 제도에 관련된 “공인중개변호사”의 부동산 공인중개의 법적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이재상, 2016). 전문적 공인중개라는 키워드 관점에서 양 직역 간에는 차이가 있는데,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트러스트 부동산 변호사” 명칭을 사용하여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영업을 하는 것은 양 전문직 간 자격요건의 불일치와 비전문성의 문제를 갖는다. 즉, 공인중개사는 변호사와 달리 미래가치와 주변의 상권변화, 매매가 상승요인, 생활 편의환경, 교통까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지 여러 변수들을 고려해서 중개하는 것이 보통이며, 계약과 관련된 환경 및 정보 등 실제에 밝은 반면, 법적 문제해결에는 취약하므로, 정책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변호사직역의 전문화 내지 광고의 문제와 관련하여, 변호사 입장이나 잠재적 의뢰인 입장에서 전문분야를 표시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의 보장을 위하여도 필요하다(Burlin, 1991; 오종근, 2007). 또한, 전문변호사 인정절차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주관하는 것이 타당하며 명확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고 전문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해당 전문분야에 대한 특별한 이론적 지식과 실무적 경험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업무광고규정 제 7조는 전문분야 외에 주요 취급분야를 표시하는 광고를 허용하고 있는데, 고객이 오도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는 “주요 취급분야”를 “주요 관심분야”와 “주요 활동분야”로 나누어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는 변호사가 전문지식과 훈련, 동료간 제재, 서비스 시장 내지 경쟁 개념 등 현대 전문직 사회가 갖는 특질을 유지하면서도 공동체내에서의 영향력과 변호사업의 공공적 성격으로 인하여 국가나 변호사회 등의 규제를 광범위하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변호사의 전문화 내지 지식산업으로서의 문제와 관련하여 법률시장 개방과 변리사제도를 미국의 “특허전문변호사제도”로 개편하여야 하고, 그 중간단계로 변리사에게 특허관련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이 현실적이라 할 수 있다(김성배, 2012; 김영환, 2012; 조천권, 2017). 오늘날의 시장과 경제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불가분으로 얽혀져 있고, 특허변호사나 변리사는 관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직으로서 나날이 변화하는 법 환경에 따라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예컨대, 로스쿨 도입으로 학부에서 공학이나 의학 등을 공부한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배출되고 있으며, 기존의 변호사도 실무적 경험과 연찬 등을 통하여 타 학문적 지식이 있는 자가 적지 않을 것이므로 특허관련법령과 공학적 지식의 검증을 통해서 변호사가 변리사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변리사회도 산학협력차원에서 변리사의 재교육 위탁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변리사 자격 갱신심사 제도를 도입하여 법 환경의 변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을 따라 잡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변리사의 소송대리인 자격제도와 관련하여 김용섭(2015)은 주제의 성격이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변리사와 변호사간의 업권 분쟁적인 것이라고 전제하고, 변리사직역의 기술적 전문성과 산업계의 요청을 감안하더라도 변호사제도의 특성과 법체계성을 고려하고 로스쿨제도전반에 미치는 심도 있고 종합적인 논의 후에 변리사의 소송대리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나아가 로스쿨제도의 개선, 인접 법률자격사간 동업의 허용(MDP: Multidisciplinary Practice)과 특허전문변호사제도의 도입 등에 관하여 소개하고 있다. 동 연구는 변호사 또는 인접 전문직 문제가 광범위한 제반 환경 및 요소들로 이루어지고 상호 유기체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제도의 설계나 개혁은 사회과학적 인식의 바탕위에서 전문직의 정체성을 유지 ·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현대 지식산업사회에서 변리사의 전문성을 중시하여야 하며, 영국의 클레멘티 보고서(Clementi Report)나 프랑스의 다르와 보고서(Rapport sur les professions du droit), 일본의 사법개혁보고서에 비추어 볼 때,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헌법재판소의 변리사법 제 8조에 대한 해석은 타당하지 않다(조천권, 2017). 특허 등 침해소송의 핵심 쟁점사항이 특허기술의 권리분석을 통한 침해여부이며, 헌법재판소가 변호사는 공공성, 즉 준사법기관적 성격의 지위로 인식하면서도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에 부정적인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다. 즉, 지식중심사회로의 이행에 따라 기업은 경쟁자 퇴출, 시장협상, 마케팅 등에서 지식재산법을 활용하고 있고, 제 4차 산업혁명 내지 대규모 특허분쟁에서 보듯이 지식산업은 시장과 자유경제를 축으로 하고 있는 시민사회의 새로운 화두인 바,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인식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

제 5 절 사법정책적 문제

법조인은 국가로부터 획득한 자율성을 기초로 독특한 이데올로기를 형성한 그룹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프라이드슨 등(1973; Freidson, & Miller, 1975; Freidson, Chamboredon, & Menger, 1986)이 말한 여러 전제조건을 충족할 것을 전제로 한다(이경원 & 김정화, 1996). 한편, 전문가 집단에 윤리적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 능력적 문제가 있을 때는 전문가집단 자체가 적절한 규제를 가하게 되는데, 한국사회에 있어 세계화에 함께 닥친 법조의 위기는 바로 법조인들의 자율적 자기규제가 실패하였다는 것을 대변한다. 이러한 자기규제의 실패는 국가라는 외부세력이 전문가집단에 대한 자율성을 부인하고 침해하는 계기가 된다. 나아가 이경원 등(1996)은 지난 사법개혁과정에서 나타난 국가와 전문직의 관계, 법조인의 반응과 국가의 한계, 전문직으로서의 법조인의 성격, 그들의 특징과 문제점, 사법개혁이 법조인에 대해 갖는 의미 등에 관한 실증적 분석을 하였다. 사법개혁과정에서 보여준 국가의 한계는 정책결정자의 연구부족이라 할 수 있고, 실증적 연구와 분석에 근거하지 않는 정책은 결과적으로 정책실패를 가져온다.

한상희(2014)는 로스쿨이 사회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계층화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주장에 대하여, 그 주요원인을 등록금 다과에서 찾아서는 안 되며 전일제 수업체제를 통하여 야간로스쿨을 도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전문직제도는 이를 양성하는 input 시스템이 중요하며, 진입장벽 문제 등 독과점 문제를 포함하여 사회 · 경제 · 교육 · 문화적 시스템과 맞물려 있다. 또한 오랜 법사회학적 관찰을 토대로 법률전문직의 의의와 성격에 대한 체계적 분석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카이쓰 맥도날드. & 오훈권, 1999. 한상희, 2010). 법률전문직은 현대 법질서를 유지하는 핵심에 있다고 전제하고, 그룹의 특징으로 일정한 자격요건, 다른 직업과의 특유한 경계, 동업조합, 자율적 윤리준칙 및 동료 간 통제, 국가권력에 의한 독점적 지위 보장, 사회계층에 있어 상층적 지위 등의 시스템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한상희(2004, 2010)는 나아가 법치와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우리 변호사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실태를 분석하였다. 한국 법률서비스 시장에의 진입장벽은 매우 높은데 비해 법률서비스 수요는 상당하여 변호사 공급과소 현상이 존재하고 있다(서순복, 2012). 법률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서비스 시장에서의 독점성도 매우 높아 국민의 사법 접근권을 침해하고 있다.[8] 법치의 조건은 “관료체제”에서 “시민사회와 시장의 자율성”으로 지향하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법률전문직은 “전통적인 법조관료모델”로

8) 무변촌의 과다현상 내지 본인소송의 문제를 예로 지적하고 있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부터 탈피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로스쿨 체제는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한편, 우리 변호사 사회의 현황과 문제점을 보면 (i) 진입규제, (ii) 변호사의 숫자 (iii) 법률서비스 시장의 독점 (iii) 변호사의 배타적 직역의 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비판적 검토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한상희, 2004).[9] 변호사제도로 인하여 법률서비스 시장이 독점됨으로써 사법정의가 훼손될 수 있으며.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세 가지 문제로 본인소송 문제, 무변촌 및 변호사의 지역적 편재 문제, 소액심판제도를 통한 사법정의의 희생 등을 들 수 있다. 1990년대 일본의 경험을 토대로 법률서비스 시장의 변화와 개혁의 당위성을 인정하여야 한다.

정형근(2010)은 변호사의 보수에 관한 고찰에서 변호사를 헌법상 인정되는 인권옹호를 사명으로 하는 준 사법기관에 해당된다고 보았다. 한편, 전문 소송기술 등 무형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즉 공공성과 상인성을 함께 가지고 있다. 그러나 헌법, 변호사법, 변호사윤리장전에 따를 때 변호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할 수 없으며, 과다한 성공보수의 약정은 그 적법성 문제가 있으며, 과도한 금액은 위법하거나 반윤리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보수에 관한 적정한 기준을 법으로 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는 사회주의 국가에서와 같은 계획경제에 준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률서비스 가격결정이 순수한 시장경쟁원리에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변호사의 상인성 문제는 순수한 철학적 문제를 떠나 변호사의 지위와 역할, 적용되는 법률에 차이를 가져 올 수 있는 문제이다(박경제, 2011). 전통적 학설과 판례가 변호사의 商人性을 부인하고 있으나, 공공성이 문제되는 수임사무 처리를 위한 변호사의 활동과 상인성이 문제되는 변호사와 의뢰인사이의 사무관계는 구분되어야 하며, 변호사선임계약 자체는 수임사무의 내용에 관계없이 사적인 위임계약이고, 적용가능한 상법규정은 변호사와 의뢰인사이에 적용될 필요가 있다. 변호사는 그 직무활동이 상업적 성격을 짙게 띠고 있고, 有償의 위임계

9) 진입규제와 관련하여서는 교육여건, 수습기간, 자격시험제 등에 관한 각국 제도 현황과 진입규제 정도를 나타내도록 수치화한 자료, 변호사의 숫자와 관련하여서는 1인당 변호사의 수와 인구 1만명당 변호사의 수, 법률서비스 시장의 독점성과 관련하여서는 변호사 1인당 연간 신규사건 접수 수, 인구 1만명당 신규 민사소송 사건 접수 숫자, 변호사수 대비 소송접수 건수 등을, 변호사의 배타적 직역과 관련하여 각국 변호사의 독점영역에 관한 대비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약을 통하여 사실상 영리를 목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영업에 적합한 상인적 설비를 갖추고 있고, 법무법인의 경우 규모의 대형화와 함께 기업수준의 조직과 활동을 하고 있어 회사기업과 유사한 것이다.

법조 전문직의 준 국가적 성격과 관련하여 제도적 미비와 개선점을 다룬 논문들의 경우, 공소유지 변호사제도의 재도입에 관한 연구에서 기소독점주의 즉,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따른 항고 · 재항고제도를 보완하기 위하여 2007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기 이전 시행하였던 공소유지 변호사제도를 재도입할 필요가 있는지에 관한 연구, 성범죄나 미성년이 피해자인 범죄 등 일부 범죄에 관하여 특별법을 제정하여 인정되어 오던 범죄피해자 변호사제도를 모든 범죄에 확대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연구 등이 있다(김재희, 2017; 안현준, & 최재용, 2015; 정지혜, 2015).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피해자 변호사제도는 “헌법상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비롯하여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당사자적 지위와 형사정책상의 필요성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피해자의 권익보호에 있어서 필수적인 제도이며, 이를 적극적으로 발전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강동욱, 2014). 이러한 연구들은 변호사 내지 변호사제도가 단순한 전문직이 아니고, 준 국가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변호사들이 단순한 시장논리의 대상이 되는 지식기업이 아닌 국가적 · 공공적 성격을 갖는 전문직이라는 관점에서, 정지혜(2015)는 공판과정에서의 국선 피해자 참가변호사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연구자는 일본변호사협회와 법 테라스의 운영현황 분석을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피해자변호사를 국가가 나서 선임하는 것에 대하여 논하였다. 한국의 법조제도의 현황 및 개선책이라는 제하에 신동운(1988)은 한국의 검찰제도, 안경환(1988)은 법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하여 논하였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 3 장 이론적 배경 및 가설의 설정

제 1 절 이론적 배경

1. 개인의 성향

조절초점이론(regulatory focus theory)은 Higgins(1997, 2002)가 제안한 것으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개인동기의 초점을 어디에 더 두느냐에 따라 향상초점과 예방초점으로 나누어진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향상초점의 경우에는 번영, 성공, 열망 등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예방초점의 경우에는 의무, 책무에 초점을 맞춘다. 아울러 향상초점은 더 나아지고자 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반면에 예방초점은 더 나빠지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향상초점의 전략이 “더 긍정적인 것으로 향하는” 접근전략이라고 한다면, 예방초점의 전략은 “더 부정적인 것으로부터 피하는” 회피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향상초점에 있어 성공과 실패는 긍정적 결과물이 있을 경우에는 성공(gain), 긍정적 결과물이 없을 경우에는 실패(nongains)인 반면에, 예방초점에 있어 성공과 실패는 부정적 결과물이 없을 경우에는 성공(nonlosses), 부정적 결과물이 있을 경우에는 실패(losses)에 해당된다(Idson, Liberman, and Higgins 2004). 향상초점은 달성을 하고자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무작위오류 즉, 달성하지 못한 상태에 대해 민감한 반면에, 예방초점은 작위오류(errors of commission), 즉 실수를 범하는 것에 민감하다. 향상초점은 위험을 추구하는 성향(risky bias)을 보이고 모험적이며, 예방초점은 보수적인 성향(conservative bias)과 안전지향적인 모습을 보인다(Crowe and Higgins 1997). 한편, 향상초점은 불확실하더라도 더 나아지는 결과만 있다면 받아들이는 반면, 예방초점은 안전한 정보를 더 선호한다. 또한 향상초점은 긍정적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결과를 최대화 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득'을 나타내는 방향으로 가고 예방초점은 '손실 없음'을 나타내는 방향으로 간다(Higgins 2000).

조절초점이 다양한 마케팅 맥락에서 조절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을 많은 연구에서 밝혀왔다. 즉, 소비자의 선택 의사결정(Crowe and Higgins 1997; Higgins 2002), 감정표출(Higgins, Friedman, Shah 1997; Chitturi et al. 2008), 정보처리(Jain et al. 2006)뿐만 아니라 가격맥락에서 조절초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연구한 결과물들이 많다(Kim and Ryu 2008; Yoo and Hyun 2011; Lee, Choi & Li, 2014). 과제를 처리하는 데에 있어서도 향상초점과 예방초점은 다르게 나타나는데, 예방초점은 안전한 것을 더 선호하는 반면, 향상초점은 더 나은 위치로 가는 것이라면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더 나아지고자 하는 경향을 보인다(Liberman et al. 2001). 가격할인 상황에서는 최대가격할인광고의 경우 향상초점이 예방초점 보다 더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인 반면, 최소가격할인광고의 경우에 예방초점이 향상초점 대비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Kim and Ryu 2008). 이는 최대목표를 설정하고 위험에 민감하기 보다는 결과에 더 비중을 두는 향상초점의 성향으로 인해 최대가격할인(ex. 최대 00%까지 할인)에 대해 최소가격할인(ex. 최소 00%부터 할인)보다 좋은 태도를 보였다. 반대로 확실함이 보장되는 것이 더 중요한 예방초점은 최소가격할인에 대해 최대가격할인 보다 좋은 태도를 보였다(Kim and Ryu 2008). 향상초점과 예방초점의 서로 다른 양상으로 인해 가격을 처리하는 방식에서도 차이를 보인다고 예상할 수 있다.

2. 개인의 사고방식

개인의 사고방식을 전체주의적(holistic)사고방식과 분석주의적(analytic) 사고방식의 두 유형으로 나누는 관점이 있다. 분석주의적 사고방식은 대상을 배경과 독립적으로 보는 사고방식이고,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은 대상을 배경과 함께 보는 사고방식이다. 관련 선행연구들은 이를 문화적 차이의 관점에서 보았는데 아시아문화권인 한국, 중국, 일본은 상대적으로 전체주의적인 인지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으며, 유럽 문화권에서는 상대적으로 분석주의적인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인지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Ji et al. 2000; Nisbett et al. 2001). 이 때 동양인과 서양인의 문화적 차이의 핵심이 이러한 분류 영역과 관련 있다고 하였는데,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서양 문화권의 사람들은 그 원인을 어떤 '대상'으로 歸仁하는 반면에 동양 문화권의 사람들은 그 원인을 '배경'에 귀인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의 동양인들은 전체 배경에 더 주의를 기울이고 분류나 논리를 덜 중요하게 여기는 반면, 분석주의적 사고방식의 서양인들은 대상의 내적 속성에 관한 규칙들을 만들어내는 것에 더 친숙하여 이러한 규칙들에 따라 사물을 분류하는 경향이 있다(Nisbett et al. 2001). 또한,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이 높을수록 성과물을 내는 데에 있어서 분석주의적 사고방식 보다 전체적인 패턴을 중시하는 경향이 더 높게 나타났다(Choi et al. 2007). 분석주의-전체주의 척도(Analysis-Holism Scale; AHS)를 개발한(Choi et al., 2007) 연구에서도 같은 동양문화권, 구체적으로 한의학을 전공한 한국학생들의 척도(AHS), 즉 전체주의적 사고의 정도가 한의학을 전공하지 않은 한국학생들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 밝혀졌다(Koo and Choi, 2005).

이처럼 분석주의적 사고방식은 바탕이 맥락에서 대상을 분리하고 대상의 속성에 주의를 두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은 맥락과 대상을 일관되게 보는 경향이 있다. 이를 기반으로 분석주의적 사고방식을 지니고 있는 소비자와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을 지니고 있는 소비자는 변호사제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인식함에 있어 지각하고 판단하는 방식이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즉,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의 경우에는 대상을 배경과 함께 고려하기 때문에 변호사제도를 전통적이고 국가적 시스템과 함께 연관지어 이해하려 할 것이고, 따라서 보다 공공적 · 윤리적 · 감성적으로 인식하고 국가적 규제와 보호가 많아야 한다고 인식할 것이다. 한편, 분석주의적 사고방식은 대상과 배경을 분리하여 고려하므로, 시장에서의 경쟁 또는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한 법률서비스와 같은 고유의 속성을 초점대상으로 할 것이고, 변호사제도 개혁 문제에 있어서도 원인을 중요시하고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며, 장기적으로 시장친화적 변호사제도를 만들려 노력할 것이라 본다. 또한, 국가적 규제나 조장은 도덕이나 윤리관의 영향을 받거나 원인과 결과와 같은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과학적 인과관계를 경시할 수 있고, 고유의 속성과 유리되어 인위적이나 당위적일 수 있어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러한 사고방식유형에 관한 이론은 전문직 서비스 광고에 관한 실증적 연구에 사용되기도 한다.

제 2 절 연구가설

1. 가설 설정을 위한 논의

본 논문에서는 가설의 설정에 있어 변호사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과 함께 개인의 사고방식과 조절초점이론을 가미하였다(Glendon, Gordon, & Osakwe, 1982; Glenn, 2006; Merryman, 1974). 기존 논문의 경우 양적 연구가 빈약함은 물론, 양적 연구 결과물이 일부 있는 경우에도 일원적 성격의 참여자 그룹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다. 본 논문은 개인의 심리학적 특성을 가미함으로써 향후 변호사제도나 법학교육의 개혁이 필요할 경우 참고하거나, 새로운 조사 · 연구가 필요할 때에 참고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려 한다. 전체주의와 분석주의라는 사고방식의 특성은 보수(保守)와 진보(進步)라는 두 개의 정치 패러다임과 관련성을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프레임워크를 통하여 보수 정당이 집권한 경우와 진보 정당이 집권한 경우 로스쿨이나 변호사제도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Ball, 2013; Kennedy, 2007). 또한, 향상·예방초점 특성은 법학교육의 콘텐츠와도 관련되는데, 법학은 기본적으로 예방초점적 사회과학의 한 분과라 할 수 있다(Kahn-Freund, 1966). 나아가 최근에 이르러 적극 국가관의 가치가 높아지고, 다양한 급여적·복지적 성격의 법률, 새로운 법률서비스 영역 개발이나 확대 등 법조전문직에도 향상 초점적 특질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따라서 조절초점성향 역시 법학교육이나 법조사회학적 관점에서 유의미한 변인이라 할 수 있고 이를 조절변수의 하나로 하였다. 아래는 비교법적 관점에서 변호사제도의 특징을 요약해 놓은 그림이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1> 비교법적 관점에서 바라 본 우리나라의 변호사제도

법문화나 법 전통	미합중국	대영제국	유럽 대륙국가	사회주의 국가 내지 신정국가
지적 전통	귀납법	귀납법	연역법	노동자 독재의 사회과학/절대적 알라신
정치문화의 특질	시스템적 자유민주주의	보수적 자유민주주의	진보적 자유민주주의	극단의 노동자 중식적 일원적 평등주의/신의 사명으로서의 자본과 노동
변호사제도	- 3년 대학원제 로스쿨(가장 강한 수준의 학교중심 양성) - 변호사회의 역할 중요 - 시장중심적/지식산업적 - 연방제/일부 보수제적 전통	- inn을 통한 전문교육(차단계의 학교중심 양성) - 변호사회의 역할 중요 - 시장중심적/지식산업적 - 보수적 특질	- 국가 중심적 변호사 양성 - 변호사회 보다는 국가기관의 영향력 - 관료제적/공공적 - 중도적 · 사무적 특질	- 노동자 독재의 이념/극단의 국가 중심적 - 노동당과 그 지령을 받는 국가기관의 영향력 - 계획경제하의 법률서비스 제공 - 노동자 이익과 착취배제 - 신정국가의 경우 과학적 지배가 아니므로 사회주의 국가와 달리 영국이나 유럽식에 가까움 - 사회주의 국가나 신정국가 모두 기술적으로는 유럽 대륙국가의 법제도에 가까움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 개인의 조절초점성향의 주 효과

개인이 현상을 바라보고 인식함에 있어 일정한 조절초점성향이 있다는 점은 전술한 바와 같다. 이러한 조절초점성향은 광고나 매출 등 경영학적 관점에서 소비자의 인식이나 행위를 예측하는데 사용되지만, 선거나 정책의 수립과 집행과 관련하여서도 중요한 변수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시민사회는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기반하고 있고, 이는 사적 영역 내지 시장에 초점을 맞춘다면 대량생산·대량소비 사회지만, 정부나 공적 영역에서는 선거제도와 시민에게 영향을 주는 공공정책의 수립과 이행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한다. 기존의 변호사제도는 top down 방식에 따라 법무부, 법원, 변호사회 및 법학교수회 등 관련이해 당사자, 특히 정부의 주도적 역할하에 정책 담당자의 의사에 따라 일방적으로 고안되고 보완되어 왔다. 로스쿨 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변호사제도와 관련된 여러 쟁점이 부각되고 있고, 이는 변호사제도 전반에 대한 인식태도와, 변호사양성, 변호사의 상업적 광고, 변호사의 전문분야 등록제, 변호사와 유사 전문직역간의 정책적 조정 문제 등을 야기하고 있다(Fromson, & Miller, 1975; Kilpatrick, 1997; Kritizer, 1997, Manning, 1973, Mindes, 1975, Perry, 1962; Rhode, 1996; Rousso, 2000).

개인의 조절초점성향은 개인을 심리학적으로 이해함에 있어 매우 중요하며, 정책 담당자나 이해관계자가 어떠한 조절초점성향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은 변호사제도의 고안이나 수정·보완에 있어 의미가 있다. 나아가 변호사제도 내지 법률서비스에 영향을 받는 법률소비자인 일반 시민들 즉, 정책 수혜자의 조절초점성향 역시 변호사제도가 사회에서 공제도로서 원활하게 작동케 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향상주의적 개인은 변호사제도나 주요 쟁점에 대한 인식에 있어 시장, 경쟁 등 진보적 성격의 정책을 선호할 가능성이 있다. 즉 변호사제도를 공공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시장적으로 인식할 것이고, 변호사 양성에 있어 시법시험이나 사법연수원제도 보다는 로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스쿨제도를 지지할 것이며, 보다 적극적인 상업적 광고를 허용할 것이고, 전문분야제도의 활성화에 찬성할 가능성이 크다. 변호사 유사직역 문제에 있어서도 지식과 경쟁을 중시하여 법에 의하여 변호사에게 당연히 인접 전문직 자격을 주는 것에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Thies, 2009). 이에 대하여 예방주의적 개인은 이와 반대의 인식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변호사제도는 법학 내지 법문화의 중요한 영역으로서, 정책 담당자나 이해관계자의 조절초점성향은 변호사제도의 나아갈 방향을 측정할 수 있게 하고, 나아가 기존의 법학교육이나 법의 본질, 또는 법에 대한 철학적 인식을 재점검할 수 있게 한다. 법 내지 법학은 사회과학이자 실천과학으로서 본질에 대한 인식이 중요함은 물론 정책 담당자나 사회구성원들과의 소통과 인식 또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Trubek, 1972; Turner, 1994, 2001, 2002; Turner, & Factor, 2003). 따라서 개인에 대한 심리학적 변수는 변호사제도를 포함하여 법 학습, 법문화의 정체성, 법교육 등 관련문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므로 지금까지 이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없었다는 점을 문제로 인식하여야 한다. 개인은 조절초점 성향에 따라 향상주의적 개인과 예방주의적 개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법학, 법률전문가, 변호사제도의 이해 당사자 들은 일반적으로 예방주의적 성향과 정(正)의 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Parsons, 1991; Raz, 1970). 그러나 사회의 발전에 따라 급부행정이 늘어나고,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법의 성격이 예방주의적 차원에서 향상주의적 차원으로 발전해 가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Dorf & Sabel, 1998). 요컨대 현대의 법학자들과 변호사제도를 고안하는 정책담당자 또는 법률서비스와 접촉하는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높은 예방초점과 높은 향상초점에 대해 균형감각을 지니고 있을 때 법학이나 변호사제도를 이해함에 가장 적절한 조절초점성향을 가진 것이라고 가정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법학이나 변호사제도와 오랜 역사를 같이해 온 예방주의적 접근방식을 차순위 조절초점성향으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으로 향상초점성향 그룹을 상정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낮은 예방초점, 낮은 향상초점의 자들을 변호사제도에 관심이 없거나 법학적 성향과 가장 거리가 먼 그룹으로 가정하였다. 즉, 본 논문에서는 법학이나 변호사적 성향과 얼마나 가까운가에 따라 i) 소극적 중간초점 (저 예방초점/ 저 향상초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점), ii) 향상초점 (저 예방초점/고 향상초점) iii) 예방초점 (고 예방초점/저 향상초점), iv) 적극적 중간초점 (고 예방초점/고 향상초점) 등 4가지 조절초점 성향 그룹으로 분류하여 검증 분석하였다. 법학적 성향에 가까운 자일수록 변호사제도나 양성·인증제도와 같은 오랜 기간 갈등을 겪어오고 큰 주제와 관련하여 공공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상업광고, 전문분야제도, 유사직역과 같은 구체적 현안에 관하여는 이를 시장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고 가정해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방향성에 관하여 확실한 선행연구가 부족하므로 본 논문에서는 개인의 4가지 조절초점 성향 그룹 간 5가지 문제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가설로 설정하기로 한다. 이에 개인의 조절초점성향의 주 효과 부분에 대한 5개의 가설이 아래와 같이 도출된다.

가설 1: 개인의 조절초점성향과 변호사 제도의 공공성 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1: 조절초점성향에 따라 변호사 제도전반의 공공성 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2: 조절초점성향에 따라 변호사 양성제도의 공공성 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3: 조절초점성향에 따라 변호사 상업광고의 공공성 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4: 조절초점성향에 따라 변호사 전문분야등록의 공공성 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5: 조절초점성향에 따라 변호사 유사직역의 공공성 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3. 개인의 사고방식의 주 효과

개인의 사고방식의 차이가 변호사제도의 기본적 성격을 인식함에 있어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사회심리학적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다. 전체주의적 개인은 사물과 현상을 바라봄에 있어 부분보다는 전체를 중시함으로 인하여 국가 지향적이고 중앙집권적인 정치적 성향을 가지며, 각개의 구성요소 또는 개별적·전문적 지식보다는 전체 사회의 윤리나 조화를 중요시하는 특질을 갖는다. 인간의 정치적 성향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에서도 전체주의적 성격의 사회는 우파적 특질을 가지며, 평화를 사랑하면서도 국가적·전체적 문제에 관하여 경쟁심을 가지기 쉽고, 전쟁도 불사하는 심리상태로 발전한다고 한다(Sypnowich, 1990). 이에 비하여 분석주의적 개인은 사물과 현상을 바라봄에 있어 보다 구체적으로 접근하고,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려는 성향을 가진다. 이러한 개인들은 보다 지적이고, 부분 사회를 이해하며 전체주의적 차원에서 결과된 윤리나 행위기준 또는 부분사회에 특별히 적용되어야 할 정의감이나 윤리를 강요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사고방식의 개인은 중앙집권적 정부보다는 지방분권적 정부를 선호하고, 국가를 중심으로 사회를 일원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다원화된 사회를 선호하고 받아들이게 된다.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의 개인은 원리나 중심, 체계지향성을 보이는데, 이는 유럽 대륙 국가들의 지적 전통인 연역법적 사고방식과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하여 분석주의적 사고방식의 개인은 귀납법적 사고방식에 가깝다고 볼 수 있고, 풀뿌리 민주주의 전통이 강한 영국, 그리고 그러한 전통에 기반한 미국식 정치모델이 그 예가 될 수 있다(Sonsterg, Ward, Bruce, & Petersen, 2007). 다원화된 사회는 시장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고, 분석주의적 개인은 특정한 사회적 쟁점에 대하여 시장중심적 인식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전체주의적 개인은 어떠한 사회적 쟁점에 대하여 그 사물이나 현상이 국가나 사회 전체적 관점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또는 국가나 사회 전체적 관점에서 형성된 윤리기준이나 공적 질서에 얼마나 부합하는가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게 된다. 따라서 분석주의적 개인은 변호사제도를 시장중심적, 시장에서 법 지식을 판매하는 지식산업의 하나로 볼 가능성이 크고, 전체주의적 개인은 변호사제도의 기본적 성격이나 주요 쟁점에 대하여 보다 공공적 성격을 강조할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Parsons, 1991; Slapper, 2003; Synopwich, 1990; Tunney, & Frank, 1974).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이러한 가정 하에 개인의 사고방식은 변호사제도나 주요쟁점에 대한 인식에 일정한 주 효과를 보일 것이라고 가정한다.

이때에 개인의 성향은 보다 학습적이고 고유한 성질로서의 성격을 가짐에 대하여 개인의 사고방식은 개인의 성향이 사회적 객관적 외부 대상과의 관계에서 의지적이고 장기적으로 형성된다는 특징을 갖는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와 관련하여 개인의 조절초점성향은 설문에 응한 그룹 중 법과대학이나 로스쿨 학생과 교수, 변호사, 검사, 판사 등 법조전문직의 자들에게 더 큰 의미를 가질 것이고, 개인의 사고방식 부분은 일반 대학 교수 및 시민에게 더 큰 의미를 가질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Sueldfed, & Tetlock, 1991). 특히 사고방식 부분은 인식론적 탐구를 넘어 현실적·공공정책적으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인간의 인식 영역은 정책적 개혁과 같은 문제에 선행한다고 할 때, 정책문제를 단기적이고 현재적으로 접근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조절초점성향이 보다 큰 변인이 될 가능성이 크고, 정책문제를 장기적이고 일반적으로 접근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사고방식이 보다 큰 변인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탐험적 실증조사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보다 자세한 조사·분석은 후속 연구들의 노력으로 보완되기를 희망한다.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의 경우에도 배경과 맥락의 논리에 따라 변호사제도나 양성·인증제도와 같이 오랜 기간 갈등을 겪어오고 큰 주제와 관련하여 공공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상업광고, 전문분야제도, 유사직역과 같은 구체적 현안에 관하여는 이를 시장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고 가정해 볼 수 있다. 즉, 변호사제도에 관한 두 가지 큰 제도적 문제는 공공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시장적 성격의 로스쿨 개혁이 이미 이루어졌고, 세계화나 시장개방요구라는 배경 하에 구체적 현안에 관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배경과 맥락 논리에 따라 구체적 현안에 관하여는 시장적 인식을 할 가능성이 크다. 즉, 구체적 문제에 관한 시장화 논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국가적 중앙집권적 성격의 문제로서 발전한 것으로 인식하고, 전체적 관점에서 그러한 주장을 긍정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러한 방향성에 관한 선행연구가 부족하므로 본 논문에서는 개인의 사고방식이 5가지 문제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을 가설로 설정하여 검증해보기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로 한다. 요컨대 본 연구에 있어 개인의 사고방식의 주 효과 부분에 대한 5개의 가설이 아래와 같이 도출된다.

가설 2: 개인의 사고방식에 따라 변호사 제도의 공공성 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1: 전체주의성향에 따라 변호사 제도전반의 공공성 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2: 전체주의성향에 따라 변호사 양성제도의 공공성 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3: 전체주의성향에 따라 변호사 상업광고의 공공성 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4: 전체주의성향에 따라 변호사 전문분야등록의 공공성 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5: 전체주의성향에 따라 변호사 유사직역의 공공성 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4. 변호사제도에 대한 인식의 매개효과

한편 본 연구는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의 변호사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관찰이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 영미법계 변호사제도는 대륙법계와 달리 전통적인 귀납적 사고방식의 지적 전통 하에서 발전하게 되는 바,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은 엄격하게 구별되어야 하며, 정부는 자유시장체제를 보호 유지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개입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본다(Burnham, 1995; Ehrmann, 1976). 따라서 변호사는 법률서비스를 전문적으로 공급하는 자이며, 일정한 직업교육 및 훈련과정을 거치고 국가의 인증절차를 마치면, 시장에서 일정수준의 독과점적 지위를 행사하는 자로 파악하게 된다. 직업교육 및 훈련은 대륙법계 변호사제도와 달리 시간과 정도라는 관점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비교적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변호사제도는 그 나라의 정치나 역사 또는 최고법체계와 관련을 가지므로 같은 영미법계 국가라 하더라도 영국계와 미국계는 다른 점이 있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Bok, 1983; Friedman, 1975). 즉, 미국계 변호사제도는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고 세계 최초로 성문헌법에 기반한 민주주의를 실현시킨 역사적 배경 하에 변호사가 보다 정치적 영역과 밀접하게 관련되면서, 20세기 중반 무렵 대학원제에 기반한 3년제 로스쿨을 실시해 오고 있다. 3년제 로스쿨은 미 변호사협회와 긴밀하게 관련되어 그 감독과 지도를 받게 되는데, 따라서 단순한 교육제도를 넘어 보다 직업적 성격이 강하다(Swartz, 2012). 보다 직업적 성격이 강하다는 것은 보다 경제적·전문적·시장중심적 제도라는 것을 의미한다. 영국의 변호사제도는 같은 법계로 인하여 그 특질이 유사하지만, 대학원식 즉, 학교중심적 변호사 양성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기보다는 변호사협회의 발언권이 강한 inn[10]이라는 특수한 직업훈련 교육기관을 통하여 1-2년의 전문직 훈련을 거쳐 변호사를 양성한다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미국보다는 학교중심적이라 할 수 없지만, 법조 공직의 보수성이라는 요소를 제외하면 보다 직업적이고 시장중심적이라 할 수 있다(Kolsaker, 2008). 영국의 변호사제도가 직업과 시장요소가 강하다는 것은 변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성격이 무엇인가에 따라 법정변호사(Barrister)와 사무변호사(Solicitor)라는 두 가지 유형의 변호사를 두고 있다는데 에서도 알 수 있다. 물론 대륙법계 변호사제도에도 공증변호사인 노타리(Notary)나 우리와 같은 법무사제도가 있지만, 변호사로부터 엄격하게 분리하여 인식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Durkheim, 2018; Johnstone, 1989; Orenstein, 1984).

대륙법계 변호사제도는 기본적 학교교육을 통하여 법학을 공부하게 한 후 국가가 관리·운영하는 공기관에서 전문가로서 필요한 실무지식을 수습하게 하는 특징을 갖는다.[11] 대륙법계 변호사제도는 연역적 사고방식이라는 지

10) 법학원(Inns of Court)은 역사적으로 법학교육을 담당해온, 런던에 위치한 유서 깊은 4개의 교육기관(Lincoln's Inn, Gray's Inn, Inner Temple, Middle Temple)을 지칭한다. 법학원은 자발적인 단체이며, 정관(定款)도 없고 비법인(非法人)이며 기부받은 재산도 없다. 그러나 각 학원에는 평의원회(benchers)라는 통솔기관이 있어서 변호사의 자격부여에 관해 독점적인 권리를 행사한다.

11) 따라서 양대 법계 변호사제도의 차이는 법학교육의 소프트웨어하고도 관련을 갖는데, 영미법계 변호사교육은 판례법 중심의 교육을 하게 되며, 법원의 선례와 이를 간략히 소개하고 분석해 놓은 casebook이 법학교육의 가장 중요한 콘텐츠가 된다. 대륙법계 변호사교육은 법학교수가 콘텐츠 개발의 중심에 서게 되며, 제정법조항에 기반한 주석서 내지 법철학 내지 법사회학적 강론을 담은 treatise 들이 가장 중요한 콘텐츠가 된다. 과거 사법시험 시절에는 2년의 사법연수원 교육이 이러한 실무교육 중심이었으며, 판례의 학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적 체계에 따라 국가중심적 문화가 발전해 왔고, 이러한 역사와 전통이 당연히 변호사제도에도 영향을 미쳐왔다. 국가중심적 문화에서 변호사양성은 국가가 시행하는 표준시험을 통해 변호사를 충원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12] 국가가 시행하는 표준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는 국가가 관리·운영하는 공기관에서 변호사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실무지식을 연찬하고 최종적으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이는 학교중심적 교육을 통하여 변호사를 양성하고 졸업 후 고합격률의 자격시험을 통하여 변호사자격을 부여하는 영미법계 변호사제도와 차이가 있다. 따라서 대륙법계 국가들의 변호사제도는 보다 공공적·윤리적·국가중심적 제도라 할 수 있다(Glendon et al, 1982). 본 논문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양 제도의 기본적 특질의 차이를 조사하기 위하여 "시장적 v. 공공적" 이라는 두 개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변호사제도에 관한 양 법계의 차이는 과거 우리 법조계의 키워드였던 법조일원화의 명제와도 관련된다. 변호사협회와 학교중심적 변호사 양성은 두 유형의 대표적 공직인 검사, 판사와 시장에서 직접 고객을 상대하는 변호사, 즉 소위 법조 3륜이 변호사협회를 통하여 하나의 뿌리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국가 중심적 변호사제도 하에서 국가의 관여와 통제로 인한 법조직 내의 이질성 내지 다원화와는 차이를 갖는다.[13] 즉 새로이 도입된 로스쿨제도와 같이 변호사협회와 로스쿨이 중심이 되는 양성·인증제도하에서는 연수원 수료 후, 검사나 판사로 임용되면 평생 변호사와는 다른 자가 되는 법조문화가 불식될 수 있고, 오랜 경력변호사가 판사로 임용되는 것이 관행이 되며,[14]

습은 자발적 학습조직을 통하여 판례연구회 비슷하게 비공식적으로 토론하고 학습하는 관행이 있었다. 따라서 변호사 양성의 콘텐츠라는 측면에서 양 제도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새로운 로스쿨제도는 철학이나 사회학적 마인드가 부족한 법지식 상인을 양성할 우려가 있으며, 과거의 사법연수원 제도는 실행과 해결이라는 소비자 요구나 경쟁을 중시하는 세계화시대에 뒤떨어질 수 있는 윤리적 · 관료적 폐쇄집단을 양성할 뿐이라는 우려가 있다.

12) 과거 우리의 사법시험이 대표적인 한 예가 되는데, 우리의 경우 기존 변호사집단의 보수성, 폐쇄성 및 직역이기주의로 인하여 선발인원이 과도하게 제한을 받고, 봉건제 시절 과거제 유습이라는 비난과 함께 적폐청산 대상의 하나가 되면서 시장이나 민주주의적 요구에 밀리는 한편, 고시낭인, 학교 법학교육의 파행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는 비판 속에서 로스쿨제도로 이행한 바 있다.

13) 법조사회학적 관점에서는 이질감이라 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폐쇄적 법조사회를 비판함에 있어 말하여지는 법조 다원화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14) 따라서 작금의 변호사들은 과거의 변호사들과 달리 자신이 처리한 사건이나 활동을 경력으로 모아 두는 등 대학교수들과 같이 curriculum vitae 비슷한 직역문화를 갖게 된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외교관이나 전문분야 또는 직역이 다른 출신의 자가 최고법원 재판관이 되는 것은 법조일원화 내지 전문화의 논리에 따라 어렵게 된다(Swartz, 2012). 이러한 양 제도의 기본적 차이는 변호사제도에 대한 인식에 있어 차이를 가져올 것이고, 그러한 차이는 양성 인증제도. 변호사의 상업광고 허용 및 그 정도, 전문분야제도 도입이나 제도적 보완, 전문직역간 조정의 문제 등을 인식함에 있어 조절초점성향이 미치는 영향을 부분적으로 매개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사제도에 대한 인식은 개인의 조절초점성향과 4가지 개별 쟁점과의 관계에서 일정한 매개효과를 보일 것이라 가정할 수 있다.

가설 매개 1 조절초점성향과 양성·인증제도와의 관계는 변호사제도에 대한 인식에 의하여 매개될 것이다.

가설 매개 2 조절초점성향과 상업광고와의 관계는 변호사제도에 대한 인식에 의하여 매개될 것이다.

가설 매개 3 조절초점성향과 전문분야제도와의 관계는 변호사제도에 대한 인식에 의하여 매개될 것이다.

가설 매개 4 조절초점성향과 유사직역와의 관계는 변호사제도에 대한 인식에 의하여 매개될 것이다.

5. 양성 · 인증제도에 대한 인식의 매개효과

전문직의 사회학이라는 관점에서 전문직을 어떻게 양성하고 전문가로서

다. 즉 자신의 경력관리가 필요한 것이다. 이는 과거 검사나 판사들이 단순히 출세 경로 관리만을 하는 것과 다른 법조직 문화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관료제적 변호사 제도로부터 전문서비스 공급 내지 시장이라는 단어가 법조사회의 key word가 된다는 것을 뜻한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의 자격을 부여할 것인가 하는 교육 및 훈련과 인증의 문제는 당해 전문직 제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Freidson, 1988). 따라서 변호사 양성제도는 단순히 변호사 충원과 법조전문직의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할 뿐만 아니라, 판사, 검사, 변호사 등 소위 법조 3륜이 현실적 · 정서적으로 상호 어떠한 관계에 놓이는가, 소위 법조일원화 논쟁과도 관련된다 할 수 있다. 변호사제도를 공공적 혹은 시장적 성격의 것으로 인식하는 2분법적 관점은 변호사양성제도에도 해당될 수 있는 바, 국가가 관여하여 양성하는 공공적 양성제도와 로스쿨을 중심으로 변호사를 교육 · 훈련시키는 시장적 양성제도로 구분해 볼 수 있다(Kahn-Freund, 1966; Merryman, 1974). 엄격한 국가시험과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일정한 실무수습교육을 시키는 과거 사법연수원제도는 유럽 대륙국가들이 채택하고 있으며,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들이 상급 대학원에 진학하여 학교를 중심으로 법 전문교육을 받는 로스쿨제도는 미국과 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영국식 양성·인증제도는 학교와 변호사회 중심으로 법률전문가를 양성한다는 점에서는 미국제도에 유사하지만, 학위를 수여하는 로스쿨이 아닌 inn이라는 전문가 교육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는다는 점에서 절충적이라 할 수 있다(1974; Glendon et al, 1982). 우리나라는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이라는 공공적 양성·인증제도를 오랜 기간 채택·시행해 오다가, 10여년전부터 일본을 통하여 미국식 로스쿨제도를 도입·시행해 오고 있다. 이로써 우리의 법학교육은 기존의 법과대학 체제와 새로운 로스쿨 체제 2개로 양분되어 있다.

변호사를 어떻게 양성하고 자격을 부여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전문직의 사회학이라는 관점에서 핵심적 부분이라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인식은 현재 문제되고 있는 변호사제도 전반에 대한 기본적 인식, 변호사의 상업적 광고, 전문분야등록제, 변호사 유사직역과의 관계를 둘러싼 정책적 갈등과 얽혀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Fox, & Alldred, 2016; Freidson, 1988; Gerhardt, 1993). 특히, 2007년 로스쿨제도가 도입된 것은 우리 변호사제도 역사상 가장 핵심적 변화라 할 수 있고, 현재 대한민국의 법학교육은 일반 법과대학과 로스쿨이라는 이원적 차원으로 분립되어 평행선을 이루며 가고 있다. 아직도 제도를 보완·개선하기 위한 여러 정책적 대안들이 제시되는 가운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데 새로운 로스쿨 제도 즉, 변호사 양성·인증제도에 대한 인식이 변호사제도 관련 현안문제에 대하여 의미있는 매개효과를 보이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Ball, 2013; Black, & Black, 2004). 본 연구에서는 이들과 달리 개인의 사고방식을 사용하였는데, 개인의 사고방식은 전기한 바와 같이 보다 사회적이고 객관적이라 할 수 있고, 정당의 정치적 정향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로스쿨 제도가 정착된 지 12년이 지난 이때에 3가지 현안문제에 대하여 보다 현실적·정책적 관점에서 조절초점성향을 변수로 하는 것보다 의미있는 실증조사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개인의 사고방식이 변호사제도의 주요 쟁점에 미치는 총 효과와 관련하여 변호사 양성·인증제도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일정한 매개효과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아 다음과 같은 3 가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매개 5: 사고방식과 상업광고와의 관계는 양성·인증제도에 대한 인식에 의하여 매개될 것이다.

가설 매개 6: 사고방식과 전문분야제도와의 관계는 양성·인증제도에 대한 인식에 의하여 매개될 것이다.

가설 매개 7: 사고방식과 유사직역과의 관계는 양성·인증제도에 대한 인식에 의하여 매개될 것이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 3 절 연구모형

본 연구는 개인의 조절초점이 한국의 변호사제도에 관한 보편적 인식, 상업적 광고, 전문분야제, 유사직역문제 등에 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 간의 관계에서 변호사제도에 대한 인식의 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밝히고자 하였다. 또한 변호사제도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 중 영미식 로스쿨제도는 변호사제도를 고안하고 개혁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input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사고방식과 변호사 상업광고, 전문분야제, 유사직역 문제에 대한 관계에서 변호사 양성·인증제도에 대한 인식의 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밝히고자 하였다. 각 변수에 대한 선행연구의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종합하여 <그림 1>, <그림 2>, <그림 3>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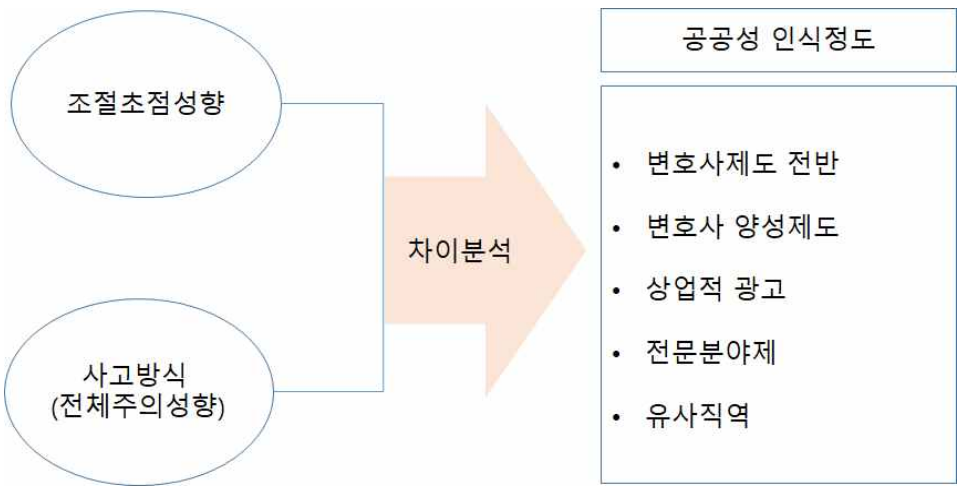

<그림 1> 개념적 연구모형 1: 조절초점성향/전체주의성향에 따른 공공성 인식정도 차이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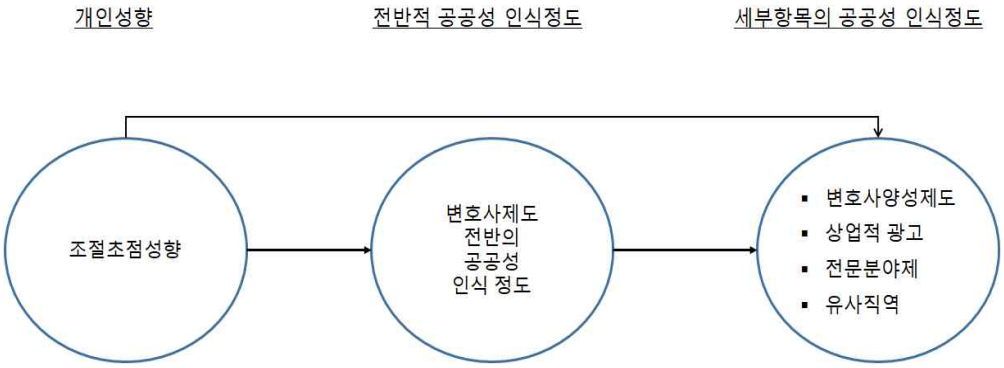

<그림 2> 개념적 연구모형 2: 변호사제도 전반의 공공성 인식의 매개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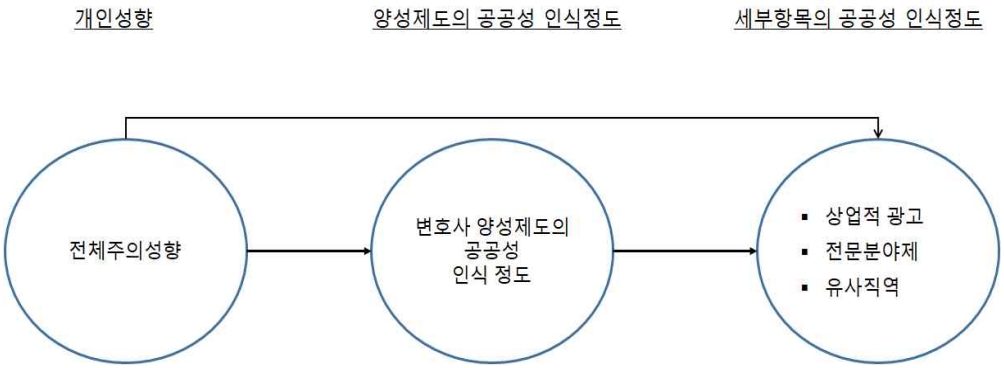

<그림 3> 개념적 연구모형 3: 변호사 양성제도의 공공성 인식의 매개효과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 4 장 연구 방법

제 1 절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개인의 사고방식이나 조절초점성향이 변호사제도, 양성·인증제도 및 기타 3가지 현안쟁점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 간의 관계에서 변호사제도에 대한 인식의 매개효과, 양성·인증제도에 대한 인식의 매개효과를 밝히는 개인 수준의 연구로서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작성된 설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설문조사는 구글 닷컴의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이 이용되었는바, 온라인 설문조사의 경우 흔히 발생하는 낮은 응답률로 인하여 부득이 개별접촉의 형태로 응답에 응하도록 하였다. 자료조사의 실시율을 높이기 위하여 e-mail 또는 카카오 톡 방을 활용하였다. 설문조사 응답자는 모두 331명이었으며, 응답 중 불성실 응답, 누락된 설문, 임원급 응답자 등 19부를 제외한 312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고방식유형을 측정하기 위해 전체주의적 시각을 나타내는 항목(analytic-holistic thinking scale: AHS)을 4가지로 측정하였는바, 이는 Choi, Koo, & Choi (2007)의 AHS 문항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1) 어떤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분보다는 전체를 고려해야 한다.
(2) 부분보다는 전체에 주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3)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
(4) 세부적인 사항보다 전체적인 맥락에 주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각 항목별 측정은 1= '그렇지 않다', 7= '그렇다' 로 리커트의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따라서 4가지 항목을 평균하여 중간값 분리(median split)를 하여 상위에 해당되는 그룹은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의 집단, 하위에 해당되는 그룹은 분석주의적 사고방식의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본 연구에서는 Haws, Dholakia, & Bearden(2010)의 조절초점 측정항목을 적용하였다. Haws et al.(2010)의 연구에서 개발한 항목은 총 10 개였으며, 이 중 5개는 향상 초점, 나머지 5개는 예방초점을 나타내었다.

먼저, 향상초점과 관련된 문항은 다음과 같다:

(1) '나는 내게 중요한 것을 성취할 수 있는 시점에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만큼 잘 해내지는 못하는 편이다'

(2) '나는 내 삶을 성공적인 방향으로 잘 진행시켜왔다고 느낀다'

(3)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발견하면, 바로 신이 난다'

(4) '나는 내가 희망하거나 열망하는 것을 어떻게 달성할까에 대해서 자주 생각 한다'

(5) '나는 주로 "이상적인 나"(나의 희망, 바램, 열망을 완성하는 것)에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생각 한다' 이었다.

그리고 예방초점과 관련된 문항은 다음과 같다.

(1) '나는 부모님이 정해 놓은 규칙과 규정을 잘 지킨다'

(2) '나는 주의를 충분히 기울이지 않아 문제가 생기곤 한다'

(3) '나는 내가 실수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한다'

(4) '나는 내 인생에서 어떻게 하면 실패를 하지 않을까에 대해서 자주 생각한다'

(5) '나는 주로 "의무적인 나"(나의 의무, 책임, 직무를 완수하는 것)에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생각 한다' 이었다.

이 중 향상초점 관련 질문 (4)과 (5)는 동일한 취지의 질문이라는 의견이 많이 있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5)를 제외하고 9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 2 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도구

1. 개인의 조절초점성향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조절초점성향을 Higgins(2000)의 자기차이이론에 따라 “현재의 자신과 자신이 목표로 하는 상태간의 불일치를 의미하며, 차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접근동기를 이상적 또는 당위적 접근동기”로 정의하였다. 여기서 이상적 접근동기는 자신이 바라는 상태 즉, 희망이나 열망을 나타내는 이상적 자기(ideal self)를 의미하고, 당위적 접근동기는 도덕적 책임이나 의무처럼 자신이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속성들을 의미하는 당위적 자기(ought self)로 설명된다. 개인은 이러한 접근동기를 통해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하려는 전략을 스스로 조절해간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그는 개인의 동기적 성향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조절체계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긍정적인 결과를 획득하고 이상적으로 바라는 상태를 추구하려는 향상초점(promotion focus)성향과 다른 하나는 손실을 회피하고 부정적 결과를 막으려는 예방초점(prevention focus)성향으로 설명된다고 하였다. 또한, 그에 의하면 향상초점과 예방초점의 개인적 차이 즉, 조절초점성향은 어느 하나가 강할 수 있고, 2 가지 모두 강해지는 등 개인의 사회화과정을 통하여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Higgins(2002)가 개발한 개인의 조절초점성향에 대한 측정도구 10개의 설문항목을 사용하였으며 리커트 7점 척도 (1=‘전혀 아니다’에서 7=‘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응답자를 설문 문항의 향상초점 관련 부분과 예방초점 관련 부분을 각 합산하여 중간값 분리를 한 후, i) 소극적 중간초점 (저 예방초점/ 저 향상초점), ii) 향상초점 (저 예방초점/고 향상초점) iii) 예방초점 (고 예방초점/저 향상초점), iv) 적극적 중간초점 (고 예방초점/고 향상초점) 등 4가지 조절초점성향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즉, 적극적 중간초점을 가장 법학적 또는 정책적인 것으로 보고 최고 점수를 부여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하였고, 다음으로 예방초점, 향상초점 순위로 하였다. 소극적 중간초점은 법학적 정책적으로 가장 소극적인 것으로 보아 가장 낮은 점수를 부여하여 그룹화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변호사제도, 양성·인증제도나 개별 현안 쟁점에 대하여 어떠한 인식 차이를 보이는지 조사하였다.

2. 개인의 사고방식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사고방식을 전체주의적(holistic)사고방식과 분석주의적(analytic)사고방식으로 나누어 변호사제도, 양성·인증제도 및 개별 현안 쟁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광고 등 마케팅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지만, 변호사제도에 대한 연구를 포함하여 사회학이나 정치학, 심리학 등 인접사회과학 분야에서 널리 사용될 수 있다. Ji, Peng, & Nisbet(2000)등의 정의에 따라 분석주의적 사고방식을 “대상을 배경과 독립적으로 보는 사고방식으로서 어떤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그 원인을 어떤 대상으로 귀인시키는 인식태도”라고 정의하고,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을 “어떤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그 원인을 배경에 귀인시키는 인식태도”라고 각 정의하기로 한다. Ji, Peng, & Nisbet(2000)가 개발한 개인의 사고방식에 대한 측정도구 중 4개의 설문항목을 사용하였으며, 응답 점수를 합산한 결과가 높을수록 사고방식이 전체주의적이며 낮을수록 분석주의적이라 할 수 있다.

3. 변호사제도에 대한 인식

본 연구에서 변호사제도의 기본적 성격을 공공적 변호사제도와 시장적 변호사제도로 이분하고 공공적 변호사제도는 맑스, 베버, 폴라니의 정치경제학 혹은 전문직 정치이론에 근거하여 변호사제도를 “단순한 지식산업을 넘어 국가 공제도의 하나로 인식하고, 시장, 경쟁, 효율 등의 가치보다는 공적 윤리, 안정성, 평등 또는 전체성과 시스템의 가치를 중시하고 변호사제도는 관료제와 함께 사회의 공적 가치를 수호하는데 일조하여야 한다는 인식태도”로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정의한다. 시장적 변호사제도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엄격히 분리하여 인식하는 영미식 사고체계에 따라 변호사제도를 “법률전문가로서 소비자에게 자신들의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받는 체계로 보아 시장중심적으로 인식하고, 부차적으로 자본주의·법치주의에 기여토록 한다는 인식태도”로 정의한다(Bernade-Riefkohl, 1995; Bok, 1983; Kahn-Freund, 1966).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여러 요소를 기준으로 14개의 설문문항을 작성하여 변호사제도의 공공성과 시장성 측정도구로 사용하였다. 설문 문항이 시장적으로 구성된 경우와 공공적으로 구성된 경우가 있어, 결과치를 역으로 변환하여 합산하였는바, 합산 점수가 클수록 변호사제도를 공공적 관점에서 인식하는 것으로 하였고, 합산 점수가 작을수록 변호사제도를 시장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하였다.

4. 양성 · 인증제도에 대한 인식

본 연구에서 양성·인증제도란 “변호사를 교육하고 훈련하여 공적으로 그 자격을 부여하고 인증하는 제도”라고 정의하고 로스쿨은 “학부수료 후 대학원에서 3년의 수업 중심 법학석사 학위과정을 거쳐 변호사를 양성하는 한국의 로스쿨을 지칭”하며, 이는 본 연구목적상 “사법시험 플러스 사법연수원 2년 연수를 통한 변호사 양성제도”와 대칭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변호사 양성·인증제도는 변호사제도와 그 재생산이라는 관점에서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고, 근·현대 헌법 내지 관료제와 얽혀 사회에 깊이 뿌리 박혀 있으며, 변호사자격, 훈련 및 징계, 포상 등을 자율적으로 행한다는 점에서 거시경제 내지 사회적 재생산이라는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Friedman, 1975; Friedson, 1994; Ritzer, 1975). 변호사 양성 인증 문제는 과거 로스쿨 도입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많은 논쟁이 있었던 부분이었고, 로스쿨 도입 찬반론 내지 개혁론, 로스쿨 제도의 운영과 현황, 로스쿨과 법조인제도의 원활한 연계 등의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다. 변호사제도 전반에 대한 인식과 동일하게 변호사 양성·인증제도도 공공적 혹은 시장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보았다. 설문 문항이 시장적으로 구성된 경우와 공공적으로 구성된 경우가 있어, 시장적 설문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문항의 결과치를 역으로 변환하여 합산하였는바, 합산 점수가 클수록 양성·인증제도를 공공적 관점에서 인식하는 것으로 하였고, 합산 점수가 작을수록 양성·인증제도를 시장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하였다.

5. 상업광고에 대한 인식

본 연구에서 변호사 광고 내지 변호사의 상업적 광고란 “변호사나 변호사 회사 등을 대중에 노출시켜 위임인을 유인하는 상업적 목적의 광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변호사의 상업적 광고 문제는 미국에서 많이 문제되고 있는데, 그 업무의 공공적 성격으로 인하여 아무런 규제 없이 상업적 광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미국의 경우 美 변호사 협회가 제정한 일반적인 변호사 윤리 준칙에 따라 상업적 광고를 허용하기도 하고 제한하기도 한다. 국내 경기의 지속적 침체로 인한 변호사업계의 소비자수 감소와 변호사간 경쟁심화, 부익부 빈익빈 등으로 변호사 광고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광고의 시간과 수단, 내용 등을 어느 정도 제한할 것인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Hykand, 2010; Lidsky, 2007; Maute, 1985). 이러한 배경하에 14개의 설문문항을 측정도구로 사용하여 변호사의 상업적 광고를 얼마나 적극적·시장적 혹은 소극적·제한적으로 인식하고 있는가를 측정하였다. 상업광고 부분도 설문 문항이 시장적으로 구성된 경우와 공공적으로 구성된 경우가 있어, 공공적 설문문항의 결과치를 역으로 변환하여 합산하였는바, 합산 점수가 클수록 상업광고를 시장적 관점에서 인식하는 것으로 하였고, 합산 점수가 작을수록 상업광고를 공공적 관점에서 인식하는 것으로 하였다.

6. 전문분야제도에 대한 인식

본 연구에서 변호사 전문분야제도는 “변호사전문분야 등록관리제도”의 약칭으로 변호사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 제 1조에 따라 “변호사 업무와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관련하여 전문분야를 등록 · 관리함으로써 변호사 업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각 업무분야의 전문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라고 정의한다. 변호사 전문분야제도는 변호사회의 주도하에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바, 전문분야의 확대와 등록심사비용, 재등록 등 제도의 개선과 보완이 문제되고 있다(김성만, 2010). 외국의 전문변호사제도(Kilpatrick, 1997; Lumbard, 1981, Mindes, 1975)와 현재 우리나라에서 문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12개의 설문문항을 전문분야제의 공공성과 시장성 측정도구로 사용하였다. 설문 문항이 시장적으로 구성된 경우와 공공적으로 구성된 경우가 있어, 공공적 설문 문항의 결과치를 역으로 변환하여 합산하였는바, 합산 점수가 클수록 전문분야제도를 시장적 관점에서 인식하는 것으로 하였고, 합산 점수가 작을수록 전문분야제도를 공공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하였다.

7. 유사직역에 대한 인식

본 연구에서 변호사 유사 전문직역이란 변호사 업무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부동산 중개사 등의 직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한다(Black, & Black, 2004; Brown, 1975; Johstone, 1989; Perry, 1962; Rousso, 2000). 변호사제도의 직역 내지 전문화는 변호사를 포함하여 인접 전문직 제도를 국가적 차원에서 어떻게 도안할 것인가의 문제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전문직의 의의와 역할에 있어 어느 정도 공공성 또는 시장성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것인가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공인중개변호사 제도를 비판하면서 전문성 내지 시장성에 포커스를 마친 비판, 법률시장 개방과 변리사제도의 개선과 관련하여 특허전문변호사제도의 도입과 제도적 개편,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부여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변리사법 제 8조에 대한 해석 등 현재 갈등을 보이고 있는 문제들이 그러한 성격의 것이라 할 수 있다(김용섭, 2015). 또한, 변호사회의 이 메일 통신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변호사 유사직역의 문제는 상당한 빈도수를 보이면서 현안의 하나가 되고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있다. 외국과 한국에서 문제되고 있는 유사직역문제 분석을 바탕으로, 변호사 유사직역의 시장성·공공성에 관한 인식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8개 문항을 측정도구로 사용하였다. 문항이 시장적으로 구성된 경우와 공공적으로 구성된 경우가 있어, 공공적 문항의 결과치를 역으로 변환하여 합산하였는바, 합산 점수가 클수록 유사직역 문제를 시장적 관점에서 인식하는 것으로 하였고, 합산 점수가 작을수록 유사직역 문제를 공공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하였다.

제 3 절 설문의 구성

설문지는 모두 8개 분야 72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조절초점성향과 사고방식을 측정하기 위해 각 4개 문항과 9개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설문의 항목은 기존의 연구결과를 통하여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설문문항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따라서 설문문항 구성의 타당도나 신뢰도의 문제를 특별히 분석할 필요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변호사제도의 전체적 성격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14개 문항이 사용되었고, 변호사 양성·인증제도와 법학교육에 관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9개 문항이, 변호사의 상업적 광고에 관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14개 문항이 사용되었다. 그리고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제 및 유사직역과의 문제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각 12문항, 8문항이 사용되었다. 타당성과 신뢰도 검사를 통하여 일부 문항이 삭제되었으며, 삭제된 문항은 아래 표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다. 변수 5가지 중 변호사제도의 전체적 성격에 대한 인식과 양성·인증제도를 제외한 나머지 3가지는 전술한 바와 같이 정책 담당자나 관련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현재 가장 문제되고 있는 구체적 쟁점들이라고 할 수 있다. 설문문항 구성은 공공적·시장적 부분 2가지로 나누어졌다. 한편 제 1변수인 변호사제도에 대한 전반적 인식은 제 1매개변수로, 제 2변수인 변호사 양성·인증제도에 대한 인식은 제 2매개변수로 연구에 이용하였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2> 설문지 구성 및 내용

구성개념	설문의 성격	문항번호	문항수	삭제된 문항	항목의 원천
사고방식	개인의 사고방식을 전체주의/분석주의 관점에서 측정	A. 1-4	4	삭제문항 없음	Higgins (1997, 2000, 2002); Kim and Ryu (2008); Yoo and Hyun (2011); Lee et al. (2014); Liberman et al. (2001)
조절초점	개인의 조절초점을 향상초점/예방초점 관점에서 측정	B. 1-9	9	B. 2, 5	Ji et al. (2000); Nisbett et al. (2001); Choi et al. (2007); Gentner & Medina (1998); Koo & Choi (2 005); Masuda & Nisbett (2001)
변호사제도	변호사제도에 대한 인식을 공공적/시장적 관점에서 측정	C. 1-14	13	C. 14	Bernade-Riefkohl (1995); Bok (1983); Kahn-Freund (1966)
변호사 양성·인증	변호사양성제도에 대한 인식을 공공적/시장적 관점에서 측정	D. 1-9	9	D. 1	Friedman (1975); Friedson (1994); Ritzer (1975)
변호사 상업광고	변호사상업광고에 대한 인식을 공공적/시장적 관점에서 측정	E. 1-14	14	E. 9, 10, 13	Hykand (2010); Lidsky (2007); Maute (1985)
전문분야 제도	변호사전문분야제에 대한 인식을 공공적/시장적 관점에서 측정	F. 1-12	12	F. 8	Kilpatrick (1997); Lumbard (1981); Mindes (1975)
변호사 유사직역	변호사유사직역에 대한 인식을 공공적/시장적 관점에서 측정	G. 1-8	8	삭제문항 없음	Black, & Black (2004); Brown (1975); Johstone (1989); Perry (1962); Rousso (2000)
인구통계적 특성	성별, 연령. 직업	H. 1-3	3	삭제문항 없음	
8개 섹션	8개 섹션/3개 인구통계문항	8개섹션 /72문항	72문항	8 문항	분석에 이용된 문항 수: 64문항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 4 절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조절초점성향과 사고방식이 변호사제도나 양성·인증제도에 대한 인식이나 구체적 쟁점들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의 관계에서 변호사제도에 대한 인식의 조절효과 및 매개효과, 변호사 양성·인증제도에 대한 인식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모형을 기초로 가설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SPSS IBM 25 통계패키지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론 변수들을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정하였고, 신뢰도 검정을 위해 각 이론 변수들에 대한 측정변수들의 Cronbach's Alpha 계수로 내적 일치도를 평가하였다. 변수에 대한 전체항목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모두 0.6 이상으로 하였다. 타당성 평가를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개인의 조절초점성향을 법학적 정책적 기질의 정도에 따라 4 그룹으로 분류하고, 전체주의와 분석주의 사고방식을 변수로 하여 각 그룹간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시행하였다. 한편 Hayes(2009)가 개발한 Process macro를 사용하여 변호사제도에 대한 인식의 매개효과와 변호사 양성·인증제도에 대한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 5 장 실증분석 및 가설검증

제 1절 실증분석

1. 표본의 특성

실증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전국 소재 법과대학 교수, 조선대학교 교수,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학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기회 및 연구자의 지인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집되었고, 설문조사기간은 2018년 10월 15일-11월 5일이었다. 응답자는 모두 331명이었으며, 응답자 응답 중 불성실 응답, 누락된 설문 등 19부를 제외한 312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의 설문에 응답한 표본의 특성으로 성별은 남성이 160명 (49.8%), 여성이 154명 (48.0%)으로 남성 · 여성 비율이 비슷하였다. 직업은 법학교수 17명 (5.3%), 비 법학교수 8 (2.5 %), 법과대학 학생 196 (61.1%), 변호사 4 (1.25%), 회사원 30 (9.3%), 기타 60 (18.7%)으로 응답자의 상당수가 법과대학 학생이었다. 응답자를 나이별로 보면, 20대 218명, 30대 12명, 40대 26명, 50대 51명, 60대 8명으로 역시 법과대학 학생들이 많이 분포할 것으로 보이는 20대 응답자 비율이 높았다.

2. 측정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도 분석

가. 타당성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은 표준화된 실제 관측치, 요인득점행렬, 요인부하량, 독자요인 등의 개념을 이용하여 변수의 수가 많을 때 이론적 배경이나 변수의 성질에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따라 하나의 변수로 만들어 주는 분석이다. 요인분석을 하면 여러 개의 변인들이 몇 개의 잠재요인으로 묶이기 때문에 변인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고, 척도의 문항 개발과 활용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으며, 각종 측정 및 평가에서도 중요하게 사용된다. 주 성분법을 사용하여 지정한 고유치 이상의 값을 갖는 요인만을 추출하였으며, 베리맥스 회전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에서 요인적재치는 변수들의 중요도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그 수치가 낮을수록 중요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하고, 일반적으로 요인적재치가 0.4 이하일 때는 해당변수를 제거하는 것이 좋다. 본 연구에서도 0.4 이상을 기준으로 사용하였으며, 요인 간 체계일관성을 위하여 일부 설문항목의 경우에는 0.4 이상인 경우에도 삭제하는 등 요인적재치가 높으면서 측정을 위한 체계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다.

KMO(Kaiser-Mayer-Olkin)와 Bartlett 검정을 통하여 수집된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 KMO값은 변수간의 편상관관계를 조사하여 요인분석에 사용된 변수의 수와 case의 수가 적절한지를 보는 표본 적합도를 나타내는 값으로 0.5이상이면 표본자료는 요인분석에 적합하다고 한다(Kaiser, 1974; 이경수, 김태형, 정재광, & 안상진. 2013).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은 변수간의 상관행렬이 단위행렬(상관계수가 대각행렬이라는 것은 변수들 간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함)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검정인데, 유의행렬이 유의수준 0.05보다 작으면 요인분석을 하는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나. 신뢰도 분석방법

신뢰도분석은 동일한 개념에 대해 측정을 반복했을 때 동일한 측정값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하는 것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 정확하고 일관되게 측정되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내적 일관성법을 실시하여 확보된 설문항목들에 대한 Cronbach's Alpha 값을 통해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3> 타당성 및 신뢰도 분석결과

개념	변수명	요인분석		신뢰도	타당도
		요인적재량	고유값	Cronbach Alpha	KMO
사고방식	A.1	.743	2.111	.693	.688
	A.2	.752			
	A.3	.652			
	A.4	.753			
성향	B.6	.815	1.518	.605	.620
	B.1	.796			
	B.7	.500			
	B.3	.883	1.572		
	B.4	.865			
	B.2	삭제			
	B.9	.818	1.671		
	B.8	.751			
	B.5	삭제			
변호사제도	C.11	.798	1.551	.673	.706
	C.10	.728			
	C.9	.689			
	C.13	.685			
	C.6	.770	1.688		
	C.5	.740			
	C.12	.498			
	C.3	.729	1.778		
	C.8	.643			
	C.1	.507			
	C.7	.492			
	C.4	.802	2.298		
	C.2	.681			
	C.14	삭제			
변호사 양성제도	D.6	.822	1.053	.609	.818
	D.5	.803			
	D.9	.801			
	D.7	.792			
	D.4	.787	1.267		
	D.2	.661			
	D.8	.270			
	D.3	.598	2.979		
	D.1	삭제			
상업	E.4	.860	1.255	.605	.734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광고	E.3	.838			
	E.5	.766			
	E.1	.702			
	E.6	.878	1.312		
	E.2	.843			
	E.9	삭제			
	E.11	.592	2.119		
	E.12	.745			
	E.14	.570			
	E.10	삭제			
	E.8	.921	3.025		
	E.7	.597			
	E.13	삭제			
전문분야 제도	F.3	.855	1.165	.644	.799
	F.1	.832			
	F.5	.829			
	F.9	.796			
	F.6	.770			
	F.7	.490			
	F.11	.736	1.789		
	F.12	.694			
	F.10	.642			
	F.4	.518			
	F.2	.834	3.788		
	F.8	삭제			
변호사 유사 직역	G.1	.729	1.738	.600	.591
	G.6	.683			
	G.2	.671			
	G.3	.653			
	G.8	.935	1.775		
	G.7	.935			
	G.4	.921	1.926		
	G.5	.904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Bernstein & Nunnally(1994)에 의하면 탐색적 연구분야는 0.60 이상, 기초 연구분야는 0.80 이상, 응용 연구분야는 0.90이상일 때 검사문항들이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한다. 본 연구는 탐색적 연구에 해당하며 분석결과 모든 차원들이 기준값 0.6을 초과함으로써 각 문항에 대한 신뢰성이 높게 나타났다.

다. 상관관계 분석

상관관계란 변수들 간의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두 개 이상의 변수에 있어서 한 변수가 변화함에 따라 다른 변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와 같은 변화의 강도와 방향을 의미한다. 본조사의 개인의 사고방식 및 성향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표 4> 변수들 간 상관관계 분석결과

	평균	표준편차	변호사제도	양성인증	상업광고	전문분야제도	유사직역	조절초점성향	사고방식
변호사제도	57.75	8.979	1						
양성·인증	31.58	6.796	.469**	1					
상업광고	48.78	7.288	.350**	.273**	1				
전문분야제도	53.69	7.574	.333**	.296**	.373**	1			
유사직역	35.34	6.035	.128**	.208**	.257**	.510**	1		
조절초점성향	33.53	5.263	.269**	.124*	.205**	.371**	.219**	1	
사고방식	17.81	4.422	.318**	.172**	.222**	.205**	.169**	.204**	1

** p<.01, * p<.05.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 2 절 가설 검증

1. 조절초점 성향에 따른 분산분석

가설 1의 검증을 위해 적극적 중간초점, 예방초점, 향상초점, 소극적 중간초점 등 조절초점 성향 4가지로 하여 일변량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공공성 인식의 정도변수는 낮을수록 공공성이 높고 높을수록 시장성이 높도록 재코딩(recoding) 되었다. 즉 평균값이 낮을수록 공공성이 높고 평균값이 높을수록 시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5> 조절초점 성향과 기술통계량

		N	평균	표준편차
변호사 제도전반	소극적중간초점(저향상/저예방)	67	3.616	.586
	향상초점(고향상/저예방)	79	3.520	.642
	예방초점(저향상/고예방)	96	3.596	.549
	적극적중간초점(고향상/고예방)	79	3.433	.604
	합계	321	3.541	.596
변호사 양성제도	소극적중간초점(저향상/저예방)	67	3.416	.721
	향상초점(고향상/저예방)	79	3.742	.775
	예방초점(저향상/고예방)	96	3.537	.663
	적극적중간초점(고향상/고예방)	79	3.384	.787
	합계	321	3.524	.745
변호사 상업광고	소극적중간초점(저향상/저예방)	67	3.976	.556
	향상초점(고향상/저예방)	79	4.006	.805
	예방초점(저향상/고예방)	96	3.981	.713
	적극적중간초점(고향상/고예방)	79	4.045	.836
	합계	321	4.002	.737
변호사 전문분야등록	소극적중간초점(저향상/저예방)	67	4.271	.395
	향상초점(고향상/저예방)	79	4.525	.559
	예방초점(저향상/고예방)	96	4.407	.576
	적극적중간초점(고향상/고예방)	79	4.529	.562
	합계	321	4.438	.542
변호사 유사직역	소극적중간초점(저향상/저예방)	67	4.268	.673
	향상초점(고향상/저예방)	79	4.348	.753
	예방초점(저향상/고예방)	96	4.391	.626
	적극적중간초점(고향상/고예방)	79	4.200	.696
	합계	321	4.308	.687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6>에서 보는바와 같이 적극적 중간초점, 예방초점, 향상초점, 소극적 중간초점 등 4가지 조절초점성향의 주 효과를 보았을 때에 변호사 제도 전반의 공공성 인식 (F=1.533, P>.1), 변호사 상업광고의 공공성 인식(F=.142, p>.1>, 변호사 유사직역의 공공성 인식(F=1.026, p>.1)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변호사양성제도의 공공성 인식(F=3.770, p<.05), 변호사 전문분야등록의 공공성 인식(F=3.740, p=<.05)에 대하여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법학적 정책적 성향이 강한 그룹인가 약한 그룹인가라는 변인이 변호사제도 전반의 공공성 인식, 변호사 상업광고의 공공성 인식, 변호사 유사직역에 대한 공공성 인식에 대하여 유의한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변호사 또는 변호사광고의 사회적 노출이나 공중과의 일상적 관계, 변리사나 세무사 등 유사직역과의 갈등 문제에 대한 상식적 차원에서의 공중의 인지도 등이 높아 특별히 개인적 성향에 따른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하여 로스쿨제도인가 사법시험제도인가에 대한 문제 또는 변호사전문분야 등록제도에 대한 인식과 평가는 오랜 전문가들의 토론이나 심도가 있었던 문제로서의 성격을 가지면서 보다 신중한 응답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개인의 법학적 정책적 성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다중비교를 위하여 Bonferroni 분석을 시행하였는바, 그 결과는 <표 7>에 나타나 있다. 변호사양성제도에 대한 공공성 인식의 경우 소극적 중간초점과 향상초점 (p=.048), 그리고 소극적 중간초점과 적극적 중간초점 (p=.014) 그룹간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변호사전문분야등록에 대한 인식의 경우 소극적 중간초점과 향상초점 (p=.027), 그리고 소극적 중간초점과 적극적 중간초점 (p=.024) 그룹간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변호사양성제도에 대한 인식에 있어 평균차 (I-J)를 보면 적극적 중간초점과 다른 3가지 조절초점 성향이 모두 음(-)(소극적 중간초점에 대하여 -.03229, 향상초점에 대하여 -.35865, 예방초점에 대하여 -.15307)으로 나타났다. 이는 변호사양성제도에 대한 인식에 있어 법학적 정책적 성향이 높은 그룹이 법학적 정책적 성향이 낮은 그룹에 비하여 공공적 인식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변호사전문분야등록에 대한 인식의 평균차 (I-J)를 보면 적극적 중간초점과 다른 3가지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조절초점성향이 모두 양(+)의 값을 보였다. 이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법학적 정책적 성향이 높은 그룹이 법학적 정책적 성향이 낮은 그룹에 비하여 변호사전문분야 등록제도를 공공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시장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로스쿨이나 사법시험제도 등 변호사양성제도에 관하여는 시민들이 그것이 법치주의나 법률서비스에 미치는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보다 윤리적이고 공공적이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인식에는 로스쿨 부정입학, 로스쿨제도가 부의 대물림이나 사회적 계층 고착화에 기여한다는 비판이 일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된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사법시험이나 사법연수원 체제로 돌리기 위한 방안을 고려함과 동시에 로스쿨 교육에 있어 법조윤리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변호사전문분야 등록제에 관하여는 법률서비스 질의 제고를 위하여 이를 활성화시켜는 한편, 시장논리에 따라 제도의 발전을 꾀해야 한다는 인식이 많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진 않았지만, 변호사제도 전반에 대한 인식이나 변호사 유사직역 및 상업광고에 대한 인식에 있어 법학적 정책적 성향이 강할수록 시장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6> 조절초점성향과 일원배치 분산분석

		제곱합	df	평균제곱	F	유의확률
변호사 제도전반	집단-간	1.625	3	.542	1.533	.206
	집단-내	112.046	317	.353		
	합계	113.671	320			
변호사 양성제도	집단-간	6.119	3	2.040	3.770	.011
	집단-내	171.490	317	.541		
	합계	177.609	320			
변호사 상업광고	집단-간	.233	3	.078	.142	.935
	집단-내	174.020	317	.549		
	합계	174.254	320			
변호사 전문분야등록	집단-간	3.221	3	1.074	3.740	.011
	집단-내	91.008	317	.287		
	합계	94.230	320			
변호사 유사직역	집단-간	1.812	3	.604	1.282	.280
	집단-내	149.343	317	.471		
	합계	151.155	320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7> 조절초점성향간 다중비교

구분	(I)조절초점 집단	(J) 조절초점집단	평균차 (I-J)	표준오차	유의확률
변호사 제도전반	소극적 중간초점	향상초점	.096	.098	1.000
		예방초점	.020	.094	1.000
		적극적 중간초점	.183	.098	.387
	향상초점	소극적 중간초점	-.096	.098	1.000
		예방초점	-.076	.090	1.000
		적극적 중간초점	.086	.094	1.000
	예방초점	소극적 중간초점	-.020	.094	1.000
		향상초점	.076	.090	1.000
		적극적 중간초점	.162	.090	.434
	적극적 중간초점	소극적 중간초점	-.183	.098	.387
		향상초점	-.086	.094	1.000
		예방초점	-.162	.090	.434
변호사 양성제도	소극적 중간초점	향상초점	-.326*	.122	.048
		예방초점	-.120	.117	1.000
		적극적 중간초점	.032	.122	1.000
	향상초점	소극적 중간초점	.326*	.122	.048
		예방초점	.205	.111	.400
		적극적 중간초점	.358*	.117	.014
	예방초점	소극적 중간초점	.120	.117	1.000
		향상초점	-.205	.111	.400
		적극적 중간초점	.153	.111	1.000
	적극적 중간초점	소극적 중간초점	-.032	.122	1.000
		향상초점	-.358*	.117	.014
		예방초점	-.153	.111	1.000
변호사 상업광고	소극적 중간초점	향상초점	-.029	.123	1.000
		예방초점	-.004	.117	1.000
		적극적 중간초점	-.068	.123	1.000
	향상초점	소극적 중간초점	.029	.123	1.000
		예방초점	.024	.112	1.000
		적극적 중간초점	-.038	.117	1.000
	예방초점	소극적 중간초점	.004	.117	1.000
		향상초점	-.024	.112	1.000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적극적 중간초점	-.06381	.11255	1.000
	적극적 중간초점	소극적 중간초점	.068	.123	1.000
		향상초점	.038	.117	1.000
		예방초점	.063	.112	1.000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	소극적 중간초점	향상초점	-.254*	.088	.027
		예방초점	-.135	.085	.671
		적극적 중간초점	-.258*	.088	.024
	향상초점	소극적 중간초점	.254*	.088	.027
		예방초점	.118	.081	.885
		적극적 중간초점	-.004	.085	1.000
	예방초점	소극적 중간초점	.135	.085	.671
		향상초점	-.118	.081	.885
		적극적 중간초점	-.122	.081	.801
	적극적 중간초점	소극적 중간초점	.258*	.088	.024
		향상초점	.004	.085	1.000
		예방초점	.122	.081	.801
변호사 유사 직역	소극적 중간초점	향상초점	-.079	.114	1.000
		예방초점	-.123	.109	1.000
		적극적 중간초점	.067	.114	1.000
	향상초점	소극적 중간초점	.079	.114	1.000
		예방초점	-.043	.104	1.000
		적극적 중간초점	.147	.109	1.000
	예방초점	소극적 중간초점	.123	.109	1.000
		향상초점	.043	.104	1.000
		적극적 중간초점	.190	.104	.408
	적극적 중간초점	소극적 중간초점	-.067	.114	1.000
		향상초점	-.147	.109	1.000
		예방초점	-.190	.104	.408

* p<.05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 사고방식에 따른 분산분석

<표 8> 전체주의 성향과 기술통계량

		N	평균	표준편차
변호사제도전반	개인주의	153	3.543	.584
	전체주의	168	3.540	.608
	합계	321	3.541	.596
변호사양성제도	개인주의	153	3.448	.681
	전체주의	168	3.594	.794
	합계	321	3.524	.745
변호사상업광고	개인주의	153	3.889	.713
	전체주의	168	4.105	.747
	합계	321	4.002	.737
변호사전문분야등록	개인주의	153	4.390	.494
	전체주의	168	4.481	.581
	합계	321	4.438	.542
변호사유사직역	개인주의	153	4.249	.686
	전체주의	168	4.362	.685
	합계	321	4.308	.687

다음 <표 9> 에서와 같이 전체주의 사고방식의 주 효과를 보았을 때에 변호사 제도 전반의 공공성 인식 (F=.002, P>.1), 변호사전문분야등록의 공공성 인식(F=2.242, p>.1>, 변호사 유사직역의 공공성 인식(F=1.026, p>.1)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변호사양성제도의 공공성 인식(F=3.117, p<.1), 변호사 상업광고의 공공성 인식(F=6.967, p=<.05)에 대하여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전체주의 사고방식의 소유자인가 분석주의적 사고방식의 소유자인가라는 변인이 변호사제도 전반의 공공성 인식,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의 공공성 인식, 변호사 유사직역에 대한 공공성 인식에 대하여 유의한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변호사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도 전반의 공공성 인식이나 변호사 유사직역에 대한 공공성 인식 등이 유의한 결과를 보인 두 변인에 대하여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의 것인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즉, 개인의 사고방식에 따른 차이보다는 변호사제도나 변호사 유사직역에 대한 상식적 이해와 사회적 분위기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인식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하여 로스쿨제도인가 사법시험제도인가와 같은 변호사 양성 인증제도에 대하여는 그동안 언론이나 대중매체 또는 다른 학습기회를 통하여 성찰할 기회가 많았고, 그에 따라 개인의 사고방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낳은 것으로 보인다. 즉, 변호사양성제도에 대한 인식과 평가는 오랜 전문가들의 토론이나 심도가 있었던 문제로서의 성격을 가지면서 보다 신중한 응답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개인의 사고방식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변호사 상업광고 문제는 조절초점성향과 달리 개인의 사고방식이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는 시장체제에 관한 문제인 것이어서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8>에서 보듯이 개인주의 사고방식 그룹의 평균이 3.889이고 전체주의 사고방식 그룹의 평균이 4.105이어서 개인주의 그룹에 비하여 전체주의 그룹이 변호사 상업광고 문제를 보다 시장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의외의 결과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변호사 사회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랄지 법률서비스 시장의 개방과 자유경쟁 원리의 도입 등이 시민들에게 광범위하게 인식되어진 것이 연구결과를 통하여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많은 시민들이 광고의 시간과 수단, 광고의 내용에 관하여 규제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장적 성격의 광고를 허용하는 경우 자유경쟁원리에 따라 법률서비스시장의 활성화와 조직화가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법률서비스 시장에서 개인 변호사보다는 변호사 회사의 비중이 높아질 것이고, 대형 로펌 외에 중·소형 로펌도 전문분야를 확대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당장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법률서비스 시장이 한 차원 도약함에 있어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미국과 같이 개인을 접촉하여 광고하는 것과 같이 변호사라는 전문직의 최소한의 품위와 공공성을 희생하여서는 안 된다고 본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9> 전체주의 성향과 일원배치 분산분석

		제곱합	df	평균 제곱	F	유의확률
변호사제도전반	집단-간	.001	1	.001	.002	.968
	집단-내	113.671	319	.356		
	합계	113.671	320			
변호사양성제도	집단-간	1.719	1	1.719	3.117	.078
	집단-내	175.890	319	.551		
	합계	177.609	320			
변호사상업광고	집단-간	3.724	1	3.724	6.967	.009
	집단-내	170.529	319	.535		
	합계	174.254	320			
변호사전문분야 등록	집단-간	.658	1	.658	2.242	.135
	집단-내	93.572	319	.293		
	합계	94.230	320			
변호사 유사직역	집단-간	1.026	1	1.026	2.179	.141
	집단-내	150.129	319	.471		
	합계	151.155	320			

3. 매개효과

가. 변호사제도에 대한 인식의 매개효과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Baron & Kenny (1986)와 Sobel Test가 다수의 연구에서 활용되었다. 그러나 Baron & Kenny의 검증법은 정밀도가 낮은 결점을 가지고 있으며, 매개효과를 부분매개효과와 전체매개효과로 구분해 오던 전통적 접근법도 불필요한 절차라는 인식하에 최근에는 매개효과 검증방법으로서 사용하는 것을 지양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비하여 부스트랩(bootstrap)을 이용한 매개효과 분석법은 Hayes(2009)가 개발한 Process macro를 사용하는 검증방법으로서 Sobel Test와 비슷하지만 좀더 복잡한 모형에도 쉽게 적용이 가능하며 비모수를 가정하기 때문에 Sobel Test보다 엄격한 매개효과 검증방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연구 분석에 필요한 변수를 입력하면 한 번에 결과를 보여 주기에 Baron & Kenny (1986)나 Sobel Test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와 같이 많은 과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변호사 제도 전반에 대한 인식과 양성·인증제도에 대한 인식의 매개효과를 입증하기 위하여 Process macro 프로그램 부스트랩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Model 4를 활용하였다. 부스트랩 샘플 수를 5,000개로 지정하였고, 총 효과분석, 간접효과의 크기를 분석하기 위해 Total effect model, Effect size를 선택했다. 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아래에 제시되어 있다.

<가설 매개 1> 조절초점성향과 양성·인증제도와의 관계는 변호사제도에 대한 인식에 의하여 매개될 것이다.

개인의 조절초점 성향과 양성·인증제도에 대한 관계에서 변호사제도에 대한 인식의 매개효과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총 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개인의 조절초점성향이 변호사제도에 미치는 영향의 P값이 모두 <.05가 되어 통계적으로 유의하여야 한다. 나아가 간접효과 95% 신뢰구간의 상한값과 하한값이 모두 양수이거나 음수이어서 중간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이때에 직접효과 값은 매개변수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 총 효과에 비하여 절대값이 작게 되고 부분적 매개효과가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사제도 전반에 대한 공공성 인식이 조절초점성향과 양성·인증제도에 대한 인식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라는 <가설 매개1>은 기각되었다.

<표 10> 조절초점성향과 양성·인증제도에 대한 인식과의 관계에서 변호사제도에 대한 인식의 매개효과

효과	경로	b	CI_{95low}	CI_{95high}
총 효과	조절초점성향 → 변호사양성제도에 대한 인식	.159*	.017	.302
직접효과	조절초점성향 → 변호사양성제도에 대한 인식	-.003	-.135	.129
간접효과	조절초점성향→ 변호사제도에 대한인식 → 변호사양성제도에 대한 인식	.163*	.051	.282

*p<.05, b: 비표준화계수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가설 매개 2> 조절초점성향과 상업광고와의 관계는 변호사제도에 대한 인식에 의해 매개될 것이다.

개인의 조절초점성향이 상업광고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총 효과 (c)는 .2830(t=3.6696, p=.0003)로 나타나 법학적 정책적 기질이 강한 자일 수록 변호사 상업광고제도를 공공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개인의 조절초점성향이 매개변수인 변호사제도에 대한 공공적 인식의 경로 회귀계수는 .4547(t=4.8574, p=.0000)로 나타나 적극적 중간초점과 같이 법학적 정책적 기질이 강한 자일수록 변호사제도에 대한 공공적 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개인의 조절초점성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매개변수인 변호사제도 전반에 대한 인식이 변호사 상업광고제도에 대한 인식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효과를 확인해 본 결과, 경로 회귀계수는 .2596(t=5.8169, p=.0000)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의 조절초점성향이 변호사 상업광고제도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직접효과 (c')는 .1650(t=2.1688, p=.0309)로 유의하였으며, 매개변수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 조절초점성향이 변호사 상업광고제도에 대한 인식에 미쳤던 총 효과 (c)에 비해 절대값이 감소되었다. 이는 조절초점성향이 변호사 상업광고제도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변수인 변호사제도 전반에 대한 인식이 부분적으로 매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매개 모형의 간접효과 크기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스트랩 절차를 거쳐 확인하였으며 재추출한 표본 수는 5,000개였다. 검증결과는 <표 11>에 제시된 바와 같이 매개효과 계수는 .1180이며, 95% 신뢰구간의 상한값과 하한값이 각각 .0307과 .2310으로 나타나 0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제도에 대한 인식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변호사제도에 대한 인식이 조절초점성향과 변호사 양성·인증제도에 대한 인식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라는 <가설 매개 2>는 지지되었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11> 조절초점성향과 상업광고에 대한 관계에서 변호사제도에 대한 인식의 매개효과

효과	경로	b	CI_{95low}	CI_{95high}
총 효과	조절초점성향 → 변호사 상업광고에 대한 인식	.283*	.131	.434
직접효과	조절초점성향 → 변호사 상업광고에 대한 인식	.165	.153	.314
간접효과	조절초점성향→ 변호사제도에 대한인식 → 변호사 상업광고에 대한 인식	.118*	.030	.231

*p<.05, b: 비표준화계수

<가설 매개 3> 조절초점성향과 전문분야제도와의 관계는 변호사제도에 대한 인식에 의하여 매개될 것이다.

개인의 조절초점 성향이 변호사 전문분야제도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총 효과 (c)는 .4987(t=7.0557, p=.0000)로 나타나 법학적 정책적 기질이 강한 자일수록 변호사 전문분야제도를 시장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조절초점성향의 매개변수인 변호사제도에 대한 공공적 인식에의 경로계수는 .4601(t=5.7325, p=.0000)로 나타나 법학적 정책적 기질이 강한 자일수록 변호사제도에 대한 공공적 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개인의 조절초점성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매개변수인 변호사제도 전반에 대한 인식이 변호사 전문분야제도에 대한 인식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효과를 확인해 본 결과, 경로계수는 2.006(t=4.8301, p=.000)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의 조절초점성향이 변호사 전문분야제도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직접효과 (c*)는 .4064(t=5.7325, p=.0000)로 유의하며, 매개변수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 개인의 조절초점성향이 변호사 전문분야제도에 대한 인식에 미쳤던 총 효과 (c)에 비해 절대값이 감소되었다. 이는 조절초점성향이 변호사 전문분야제도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변수인 변호사제도 전반에 대한 인식이 부분적으로 매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매개 모형의 간접효과 크기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스트랩 절차를 거쳐 확인하였으며 재추출한 표본 수는 5,000개였다. 검증결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과는 <표 12>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각각 매개효과 계수는 .0923이며, 95% 신뢰구간의 상한값과 하한값이 각각 .0173과 .2007로 나타나 0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제도 전반에 대한 인식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변호사제도에 대한 인식이 조절초점성향과 변호사 전문분야제도에 대한 인식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라는 <가설 매개 3>은 지지되었다.

<표 12> 조절초점성향과 전문분야제도에 대한 관계에서 변호사제도에 대한 인식의 매개효과

효과	경로	b	CI_{95low}	CI_{95high}
총 효과	조절초점성향 → 변호사 전문분야제에 대한 인식	.498**	.359	.637
직접효과	조절초점성향 → 변호사 전문분야제에 대한 인식	.406**	.266	.545
간접효과	조절초점성향→ 변호사제도에 대한인식 → 변호사 전문분야제에 대한 인식	.092*	.017	.200

**p<.01, *p<.05, b: 비표준화계수

<매개 가설 4> 조절초점성향과 유사직역과의 관계는 변호사제도에 대한 인식에 의하여 매개될 것이다.

개인의 조절초점 성향과 변호사 유사직역에 대한 관계에서 변호사제도 전반에 대한 인식의 매개효과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총 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개인의 조절초점성향이 변호사제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의 p값이 모두 <.05가 되어 통계적으로 유의하여야 한다. 나아가 간접효과 95% 신뢰구간의 상한값과 하한값이 모두 양수이거나 음수이어서 중간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직접효과의 p값이 >.05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변호사제도 전반에 대한 인식이 향상초점 성향과 변호사유사직역 문제에 대한 인식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라는 <가설 매개 4>는 기각되었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13> 조절초점성향과 유사직역에 대한 관계에서 변호사제도에 대한 인식의 매개효과

효과	경로	b	CI_{95low}	CI_{95high}
총효과	조절초점성향 → 변호사 유사직역에 대한 인식	.250	-.125	.375
직접효과	조절초점성향 → 변호사 유사직역에 대한 인식	.227*	.098	.356
간접효과	조절초점성향→ 변호사제도에 대한인식 → 변호사 유사직역에 대한 인식	.023	-.016	.087

*p<.05, b: 비표준화계수

나. 양성·인증제도에 대한 인식의 매개효과

<가설 매개 5> 사고방식과 상업광고와의 관계는 양성·인증제도에 대한 인식에 의하여 매개될 것이다.

개인의 사고방식이 변호사 상업광고제도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총 효과(c)는 .3687(t=3.9941, p=.0001)로 나타나 전체주의자일수록 변호사 상업광고제도를 시장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러한 관계는 의외라 할 수 있지만, 상업광고제도에 대한 시장적 인식, 자유경쟁, 자유로운 광고는 언론의 역할 등 정보의 대중화와 다양한 교양매체로 인하여 시민들이 국가적 공공적으로 당연히 필요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를 갖는다. 개인의 사고방식의 매개변수인 변호사 양성·인증제도에 대한 시장적 인식의 경로계수는 .3005(t=3.4769, p=.0006)로 나타나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일수록 변호사 양성제도에 대한 시장적 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개인의 사고방식을 통제한 상태에서, 변호사 양성·인증제도에 대한 인식이 변호사 상업광고제도에 대한 인식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효과를 확인해 본 결과, 경로계수는 .2547(t=4.3016, p=.0000)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의 사고방식이 변호사 상업광고제도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직접효과 (c')는 .2922(t=3.1918, p=.0016)로 유의하며, 매개변수를 고려하지 않았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을 때 개인의 사고방식이 변호사 상업광고제도에 대한 인식에 미쳤던 총 효과 (c)에 비해 절대값이 감소되었다. 이는 전체주의 사고방식이 변호사 상업광고제도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변수인 변호사 양성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분적으로 매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매개 모형의 간접효과 크기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스트랩 절차를 거쳐 확인하였으며 재추출한 표본 수는 5,000개였다. 검증결과는 <표 14>에 제시된 바와 같이 매개효과 계수는 .0765이며, 95% 신뢰구간의 상한값과 하한값이 각각 .0142과 .1753으로 나타나 0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 양성·인증제도에 대한 인식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변호사 양성·인증제도에 대한 인식이 개인의 사고방식과 변호사 상업광고제도에 대한 인식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라는 <가설 매개 5>는 지지되었다.

<표 14> 사고방식과 상업광고에 대한 관계에서 양성·인증제도에 대한 인식의 매개효과

효과	경로	b	CI_{95low}	CI_{95high}
총효과	사고방식 → 변호사 상업광고에 대한 인식	.368*	.187	.550
직접효과	사고방식 → 변호사 상업광고에 대한 인식	.292*	.112	.472
간접효과	사고방식→ 변호사양성제도에 대한인식 → 변호사 상업광고에 대한 인식	.076*	.142	.175

*p<.05, b: 비표준화계수

<가설 매개 6> 사고방식과 전문분야제도와의 관계는 양성·인증제도에 대한 인식에 의하여 매개될 것이다.

개인의 사고방식과 변호사 전문분야제도에 대한 관계에서 양성·인증제도에 대한 인식의 매개효과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총 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개인의 사고방식이 변호사 전문분야제도에 미치는 영향의 p값이 모두 <.0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야 한다. 나아가 간접효과 95% 신뢰구간의 상한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값과 하한값이 모두 양수이거나 음수이어서 중간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이때에 직접효과 값은 매개변수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 미치는 총효과에 비하여 절대값이 작게 되고 부분적 매개효과가 인정될 수 있다. 간접효과의 p값이 <.05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변호사 양성·인증제도에 대한 인식이 사고방식과 변호사 유사직역 문제에 대한 인식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라는 <가설 매개 6>은 채택되었다.

<표 15> 사고방식과 전문분야제도에 대한 관계에서 양성·인증제도에 대한 인식의 매개효과

효과	경로	b	CI_{95low}	CI_{95high}
총효과	사고방식 → 변호사 전문분야제에 대한 인식	.329*	.153	.505
직접효과	사고방식 → 변호사 전문분야제에 대한 인식	.255*	.083	.427
간접효과	사고방식→ 변호사양성제도 대한 인식 → 변호사 전문분야제에 대한 인식	.073*	.009	.180

*p<.05, b: 비표준화계수

<가설 매개 7> 사고방식과 유사직역과의 관계는 양성·인증제도에 대한 인식에 의하여 매개될 것이다.

개인의 사고방식이 변호사 유사직역제도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총 효과(c)는 .2340(t=3.0126, p=.0028)로 나타나 전체주의 사고방식일수록 변호사 유사직역제도를 시장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러한 관계는 의외라 할 수 있지만, 변호사 유사직역에 대한 시장적 인식, 지식산업적 관점의 자유경쟁, 자유로운 광고는 언론의 역할 등 정보의 대중화와 다양한 교양매체로 인하여 시민들이 국가적 공공적으로 당연히 필요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를 갖는다. 개인의 사고방식의 매개변수인 변호사 유사직역제도에 대한 시장적 인식의 경로계수는 .2356(t=2.7477, p=.0064)로 나타나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일수록 변호사 유사직역제도에 대한 시장적 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개인의 사고방식을 통제한 상태에서, 변호사 양성·인증제도에 대한 인식이 변호사 유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사직역제도에 대한 인식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효과를 확인해 본 결과, 경로계수는 .1682(t=3.3163, p=.0010)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의 사고방식이 변호사 유사직역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직접효과(c*)는 .1944(t=2.5121, p=.0125)로 유의하며, 매개변수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 개인의 사고방식이 변호사 유사직역에 대한 인식에 미쳤던 총 효과(c)에 비해 절대값이 감소되었다. 이는 전체주의 사고방식이 변호사 유사직역제도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양성·인증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분적으로 매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매개 모형의 간접효과 크기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스트랩 절차를 거쳐 확인하였으며 재추출한 표본 수는 5,000개였다. 검증결과는 <표 16>에 제시된 바와 같이 매개효과 계수는 .0396이며, 95% 신뢰구간의 상한값과 하한값이 각각 .0019과 .1054로 나타나 0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양성제도에 대한 인식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변호사 양성·인증제도에 대한 인식이 개인의 사고방식과 변호사 유사직역제도에 대한 인식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라는 <가설 매개 7>은 지지되었다.

<표 16> 사고방식과 유사직역에 대한 관계에서 양성·인증제도에 대한 인식의 매개효과

효과	경로	b	CI_{95low}	CI_{95high}
총 효과	사고방식 → 변호사 유사직역에 대한 인식	.234*	.081	.386
직접효과	사고방식 → 변호사 유사직역에 대한 인식	.194*	.042	.346
간접효과	사고방식→ 변호사양성제도 대한 인식 → 변호사 유사직역에 대한 인식	.039*	.001	.105

*p<.05, b: 비표준화계수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가설검증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의 <표 17>과 같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17> 연구가설 검증결과의 요약

구분	가설	채택 여부
가설 1	개인의 조절초점성향과 변호사 제도의 공공성 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일부 지지/일부 기각**
가설 1-1	조절초점성향에 따라 변호사 제도전반의 공공성 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기각
가설 1-2	조절초점성향에 따라 변호사 양성제도의 공공성 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지지**
가설 1-3	조절초점성향에 따라 변호사 상업광고의 공공성 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기각
가설 1-4	조절초점성향에 따라 변호사 전문분야등록의 공공성 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지지**
가설 1-5	조절초점성향에 따라 변호사 유사직역의 공공성 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기각
가설 2	개인의 사고방식에 따라 변호사 제도의 공공성 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일부지지/일부 기각**
가설 2-1	전체주의성향에 따라 변호사 제도전반의 공공성 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기각
가설 2-2	전체주의성향에 따라 변호사 양성제도의 공공성 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지지**
가설 2-3	전체주의성향에 따라 변호사 상업광고의 공공성 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지지**
가설 2-4	전체주의성향에 따라 변호사 전문분야등록의 공공성 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기각
가설 2-5	전체주의성향에 따라 변호사 유사직역의 공공성 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기각
가설 매개-1	조절초점성향과 양성·인증제도와의 관계는 변호사제도에 의해 매개될 것이다.	기각
가설 매개-2	조절초점성향과 상업광고와의 관계는 변호사제도에 의해 매개될 것이다.	**지지**
가설 매개-3	조절초점성향과 전문분야제도와의 관계는 변호사제도에 의해 매개될 것이다.	**지지**
가설 매개-4	조절초점성향과 유사직역과의 관계는 변호사제도에 의해 매개될 것이다.	기각
가설 매개-5	사고방식과 상업광고와의 관계는 양성·인증제도에 의해 매개될 것이다.	**지지**
가설 매개-6	사고방식과 전문분야제도와의 관계는 양성·인증제도에 의해 매개될 것이다.	**지지**
가설 매개-7	사고방식과 유사직역과의 관계는 양성·인증제도에 의해 매개될 것이다.	**지지**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 6 장 결 론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변호사 양성·인증시스템 또는 변호사제도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관심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개인의 성향이 변호사제도에 대한 인식, 변호사 양성·인증제도에 대한 인식, 변호사의 상업광고 문제에 대한 인식, 전문분야제도에 대한 인식, 변호사와 유사직역 간 문제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하였다. 나아가 이들 간의 관계에서 변호사제도에 대한 인식의 매개효과, 변호사 양성·인증시스템에 대한 인식의 매개효과를 밝히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의 조절초점성향, 즉 개인이 법학적 정책적 기질에 얼마나 가까운 자인가 하는 것에 따라 그룹간 비교를 한 경우 변호사양성시스템, 전문분야제도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변호사제도 전반, 변호사 상업광고, 변호사 유사직역 문제 등에 대한 공공성 인식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가설은 기각되었다. 적극적 중간초점과 같이 법학적 정책적 기질이 높은 자일수록 변호사양성제도를 보다 공공적 성격의 제도로 인식하고, 로스쿨보다는 변호사양성을 국가가 책임지고 공공적으로 양성하는 것을 지지하는 경향을 보여 정(+)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법학적 정책적 기질이 높을수록 변호사 전문분야제도의 문제에 대하여 보다 시장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여, 역시 정(+)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 개인의 조절초점성향의 주 효과가 법학적 정책적 기질과 변호사 양성·인증시스템에 대한 공공적 인식사이에서 정(+)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은 변호사 양성·인증제도의 기본 혹은 골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결국 시장적이라기보다는 공공적이라는 것을 입증한다. 이는 변호사제도나 변호사 양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성·인증시스템에 대한 개혁은 변호사제도의 공공적 성격으로 인하여 급진적이거나 혁명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점진적으로 시민에 대한 교육과 의식개혁을 동반하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가지 개별적 쟁점에 대하여 시민들의 인식이 차이를 보이는 것은 큰 틀에 있어서 공공적 성격의 변호사 양성·인증제도를 지지하면서도 법률서비스 시장과 직접 관련이 있는 전문분야제도에 관하여는 시장적 요소를 대폭 가미하여 전향적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개인의 조절초점 성향이 법학적 정책적 기질이 가까운 자일 수록 변호사 전문분야제도를 지지하고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변호사의 전문화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창조경제 등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의 등장과 연결되어 있고, 법률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이 치열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률서비스를 받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이다. 즉, 20년간 의료과오 소송을 전문적으로 취급해온 변호사와 일반 변호사는 경쟁력이나 서비스 질에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의과대학의 전문의 제도와 달리 변호사의 전문분야제도가 이름뿐인 것으로 형해화될 수 있다. 그런 경우 전문분야제도는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증진하려는 본래의 취지와 달리 혼란을 가중할 뿐인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 나아가 변호사간 위화감 내지 등록심사나 재등록 등 과정에서의 부정, 타락 등 부작용이 노출될 수 있다. 따라서 일정한 수준의 연수를 필요적으로 거치게 하는 등 적절하고 건강한 전문분야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넷째,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개인의 조절초점 성향이 법학적 정책적 기질이 강한 그룹이 변호사 유사직역을 시장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변호사 유사직역을 공공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변호사와 유사전문직을 지식산업적 성격으로 이해하고 제도의 보완이나 개정 시 지식산업적 요소를 반영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경우에도, 법치주의나 법률서비스 시장과 관련하여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에 변호사는 법에 의하여 세무사나 변리사의 자격을 당연히 인정받아 세무소송이나 특허소송에서 대리인으로 소송업무를 수행하였다. 이에 대하여 세무사. 변리사,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공인중개사 등은 소송업무를 대리하지 못하고 소송업무 아닌 세무절차, 특허절차, 부동산매매절차에서 의뢰인에게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한다거나 대행할 뿐이었다. 이는 특허소송을 다루는 변호사가 특허법원에서 소송업무를 대리하고, 특허심판원이나 그 이전 단계에는 관여하지 않거나, 특허관련 지식의 부족으로 관여할 수 없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다. 로스쿨 제도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공과대학 출신의 변호사 등 특허관련 지식을 겸비한 변호사들이 배출되면 변리사 자격과 변호사 자격간의 경계획정이 보다 중요한 정책적 쟁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의 특허 변호사제도와 같이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여 업무 영역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전체주의 성향과 분석주의 성향간 그룹비교를 한 결과 변호사 제도 전반의 공공성 인식, 변호사전문분야등록의 공공성 인식, 변호사 유사직역의 공공성 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러나 변호사양성제도의 공공성 인식, 변호사 상업광고의 공공성 인식에 대하여 양 그룹간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변호사제도 전반의 공공성 인식이나 변호사 유사직역에 대한 공공성 인식 등이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 두 종속변인에 대하여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의 것인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 본대로 개인의 사고방식의 차이에 따른 차이보다는 변호사제도나 변호사 유사직역에 대한 상식적 이해와 사회적 분위기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인식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로스쿨제도나 사법시험제도와 같은 변호사 양성·인증제도에 대하여는 그동안 언론이나 대중매체 또는 다른 학습기회를 통하여 성찰할 기회가 많았고, 그에 따라 개인의 사고방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낳은 것으로 보인다. 부연하면 가설검증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변호사 양성·인증제도에 대한 인식과 평가는 오랜 전문가들의 토론이나 심도가 있었던 문제로서의 성격을 가지면서 보다 신중한 응답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개인의 사고방식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여섯째, 전체주의 성향과 변호사의 상업광고 문제를 시장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정(+)의 상관관계에 있다는 것은 의외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많은 시민들이 변호사의 광고 시간과 수단, 광고의 내용에 관하여 규제의 필요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성을 느끼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시장적 성격의 광고를 허용하는 경우 자유경쟁원리에 따라 법률서비스시장의 활성화와 조직화가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향후 법률서비스 시장에서 개인 변호사보다는 변호사 회사, 소위 로펌의 비중이 높아질 것이고, 대형 로펌 외에도 10-20명의 중소형 로펌도 전문분야를 확대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변호사 상업광고를 법률서비스 시장이 한 차원 도약함에 있어 중요한 계기로 삼는 것이 필요하지만, 변호사라는 전문직의 최소한의 품위와 공공성을 희생하여서는 안 된다고 본다.

일곱째, 변호사제도에 대한 인식이 개인의 조절초점성향의 변호사 전문분야제도 및 변호사 유사직역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이라는 가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법학적 정책적 기질이 강한 자일수록 변호사 전문분야제도나 변호사 유사직역 제도를 시장적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총 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작용하여 변호사제도에 대한 인식이 전문분야제도나 유사직역에 대한 인식에 대한 조절초점성향의 총 효과를 일부분 설명할 수 있는 간접적 영향력, 즉 매개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여덟째, 변호사제도에 대한 인식이 개인의 조절초점성향의 변호사 양성·인증제도 및 변호사 상업광고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이라는 가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법학적 정책적 기질이 강한 자일수록 변호사 양성·인증제도를 공공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조절초점성향, 양성·인증제도, 매개변수인 변호사제도에 대한 인식의 총 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작용함으로써 변호사제도에 대한 인식이 변호사 양성·인증제도에 대한 조절초점성향의 총 효과를 일부분 설명할 수 있는 간접적 영향력 즉, 매개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변호사 양성·인증제도에 대한 인식이 공공적인 것은 개인이 법학적 정책적 기질이 강한 것이 그 이유가 되지만, 그러한 인과관계는 변호사제도에 대한 인식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실증되었다. 한편, 법학적 정책적 기질이 강한 자일수록 변호사 상업광고제도를 시장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변호사제도에 대한 인식이 변호사 상업광고제도에 대한 조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절초점성향의 총 효과를 일부분 설명할 수 있는 간접적 영향력 즉, 매개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변호사 상업광고제도에 대한 인식이 시장적인 것은 개인이 법학적 정책적 기질이 강한 것이 그 이유가 되지만, 그러한 인과관계는 변호사제도에 대한 인식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 실증되었다.

아홉째, 변호사 양성·인증제도에 대한 인식이 사고방식의 변호사 전문분야제도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이라는 가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의 자일수록 변호사 전문분야제도를 시장적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변호사 양성·인증제도에 대한 인식이 전문분야제도에 대한 사고방식의 총 효과를 일부분 설명할 수 있는 간접적 영향력, 즉 매개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열번째, 변호사 양성·인증제도에 대한 인식이 사고방식의 변호사 상업광고제도 및 변호사 유사직역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이라는 가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고방식이 전제주의자일수록 변호사 상업광고제도를 시장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사고방식, 상업광고제도, 매개변수인 변호사 양성·인증제도에 대한 인식의 총 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작용함으로써 양성·인증제도에 대한 인식이 변호사 상업광고제도에 대한 사고방식의 총 효과를 일부분 설명할 수 있는 간접적 영향력 즉, 매개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변호사 상업광고에 대한 인식이 시장적인 것은 개인의 사고방식이 전체주의적인 것이 그 이유가 되지만, 그러한 인과관계는 변호사 양성·인증제도에 대한 인식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인 자일수록 변호사 유사직역을 시장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변호사 양성·인증제도에 대한 인식이 변호사 유사직역에 대한 사고방식의 총 효과를 일부분 설명할 수 있는 간접적 영향력 즉, 매개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변호사 유사직역에 대한 인식이 시장적인 것은 개인의 사고방식이 전체주의적인 것이 그 이유가 되지만, 그러한 인과관계는 변호사 양성·인증제도에 대한 인식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실증되었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1. 직접적 시사점

첫째, 전문직에 관한 제도를 고안하거나 개혁함에 있어 실증적 연구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이다. 예컨대, 본 연구와 같은 실증적 연구가 없는 상태에서 10여년전 로스쿨제도가 기존의 “사법시험 plus 사법연수원 시스템”을 대체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그로 인하여 많은 사회적 갈등과 소모적 논쟁이 지속되어 왔다. 학제시스템의 개편이 항상 그렇지만, 시간이 가면서 급속히 그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문화의 한 부분을 구성하게 된다. 따라서 로스쿨제도를 다시 과거와 같이 되돌리는 것은 많은 정책적 비용을 야기하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 점진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가면서 시민에 대한 교육과 정보화를 통하여 보다 질 높은 정책(예컨대 교육의 기회균등과 사회적 계층화 해소라는 차원에서 예비시험제의 도입 등)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미국이나 일본의 경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장기적 관점에서 제도는 비판과 개혁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로스쿨제도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증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정당이나 정책담당자는 본 연구와 같은 접근방식을 통하여 변호사제도는 물론 시민과 정책간의 심도있는 이해를 증진하고 시민에 가까운 좋은 정책, 현실에 기반한 정책의 개발과 집행을 통하여 보다 고차원의 정치를 할 수 있다. 또한 정치나 선거문제와 관련하여서도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전체주의적 성격의 정당, 즉 우파나 좌우 통합정당의 집권가능성 문제 외에도, 그러한 경우 시민들의 사고방식과 연계되는 좋은 정책이 개발되고 집행될 것인가 하는 문제까지도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전문직 문제는 한 나라의 정치경제시스템을 구성하여 정치경제학 또는 경제 사회 문화가 복합된 제도론적 학문 영역이지만, 기존의 생산자 중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심의 원리탐구적 경제학 또는 유물론적 노동경제학과는 구별되는 제 3 영역 학문이라 할 수 있다. 즉 단순히 물질이나 수에 기반하여 접근하여서는 안되고, 추상적으로 노동자라고 보편화할 수 없는 독특한 성격의 문제가 전문직의 문제가 된다. 따라서 실증 연구에 있어 개인의 성향이나 사고방식 등을 변수로 하여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한다.

셋째, 변호사제도 및 양성·인증제도, 그리고 3개의 현안 쟁점에 관하여 개인이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의 자인가 아니면 분석주의적 사고방식의 자인가에 의하여 일정한 주 효과 및 매개효과가 발생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인가 분석주의적 사고방식인가는 국가의 정치적 이념이나 성향과도 관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보통 보수 내지 좌우 통합정당은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이 강하여 파토스(pathos)적이라고 할 수 있고, 극우주의나 제국주의로 나아가기도 한다. 분석주의적 사고방식은 보다 시장적이고 합리적이라 할 수 있으므로, 진보정당의 성격과 유사하다 할 수 있다. 개인의 사고방식은 변호사 양성·인증제도나 상업광고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변호사제도는 물론 공공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함에 있어 개인의 사고방식이나 그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 나아가 평생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나 분석틀은 변호사제도를 포함하여 향후 전문직에 관련된 법제를 개발하고 향상시킴에 있어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정당이나 정책 담당자들에게 유용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정부를 선택함에 있어 보다 정보화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다른 분야에서도 본 연구와 같은 후속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넷째, 개인의 조절초점성향은 고유한 것이 아니고 학습을 통하여 변화할 수 있다. 이는 향후 이해관계그룹들이 변호사제도에 대한 정책적 갈등이 있는 경우 시민에게 다가가 홍보나 설득의 노력이 유효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예컨대 변호사제도는 우리의 법 생활에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법은 본질적으로 상당한 수준 예방주의적 성격을 갖는다고 교양하면서 절제된 상업광고 정책을 지지하도록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사회에서 발생하는 정책적 갈등의 문제 외에도 법과대학 또는 로스쿨의 법학교육 전반에 걸쳐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개인의 조절초점성향을 하나의 변수로 이용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변호사제도나 법학교육이 기본적으로 심리학적 · 사회과학적 전통에 영향을 받아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변호사제도 및 변호사제도와 관련된 주요 쟁점을 시장성과 공공성이라는 이분법적 시각의 관점에서 시민과 정책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실증적 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단순한 실증조사를 넘어 경영 연구에서 자주 사용하는 개인의 조절초점성향과 사고방식을 조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실증 연구에서 드러나듯이 변호사제도는 시장적 성격을 무시할 수 없으며, 특히 변호사제도가 처한 국제적 현실은 시장개방과 자유경쟁이다(최남석, 2013). 전통적으로 공공적 성격의 제도로 인정되어 온 변호사제도가 시장논리에 따라 지식산업적 성격의 기업 내지 산업 문제로서의 성격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 하나의 의미는 전통적 법조윤리를 넘어 유명 CEO 등 경영인 연구에서 보듯이 전문직 윤리에 더하여 변호사들의 인식을 시장적으로 재무장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작금의 현실에서 변호사가 가져할 할 자세를 시장적 · 물질주의적 관점에서 제언해 본다(Baum, 1996; Buraway, 2003). 이는 전문직으로서의 법조윤리에 더하여 변호사의 실제와 그 정체성 확립에 있어 간과할 수 없는 정신영역이라 아니할 수 없다. 나아가 본 연구의 주된 방법론이 양적 접근법이라 할 때, 이하 새로운 변호사 상이란 제하에 이를 질적으로 보완하기를 조심스럽게 희망한다.

2. 새로운 변호사 像

변호사의 본질을 사회적 · 경제적 차원에서 규정할 때, 社會文化的 物質主義(socio-cultural materialism)의 3단계 주장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법률전문직 시장의 성격과 세계화로 인한 구조조정 문제에 닥친 현실에서, 뒤르켐, 베버, 탈코트 및 보르도우의 사회문화적 분석틀은 전문직 영역 내 새로운 물질주의가 하나의 정향점이 될 것이고 법률전문가의 자기성찰 내지 새로운 인식기준을 제공할 것이라고 본다(Collyer, 2015; Durkheim, 2013; Schinkel, & Noordegraaf, 2011). 사회문화적 분석틀은 보다 원초적이고 보편적이어서 교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육, 훈련, 징계 등 현상학적 문제들을 중심으로 한 실무적-예컨대 변호사 윤리-접근에 비하여 구체적이지 않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심화와 함께 강조되고 있는 새로운 윤리경영론(new entrepreneurship), 인적 자본(human capital) 혹은 사회자본론 (social capital)에서 볼 수 있듯이 인간개조나 철학적 재발견이 요구되는 우리의 현실에 필요하다 할 수 있다(Foucault, 2013: Chomsky, & Foucault, 2006).

변호사제도의 원칙과 내용을 정하는 주체인 우리 시민들의 인식조사에서도 확인되듯이 변호사의 정체성은 관료제나 국가제도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Weber, 1954). 또한, 변호사제도는 교육, 훈련, 징계, 전문직으로서의 동질감과 직무만족 등 여러 요소로 구성되며, 변호사라는 직업은 전문직의 하나로서 경제·사회·문화적 공동체를 구성하는 공적 성격을 갖고, 법률서비스를 대가로 수입을 창출하여 생계를 도모하는 경제적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변호사제도를 발전시키고 변호사들이 사회적 역할을 다함에 있어 새로운 물질주의 철학에 바탕한 자신의 정체감의 확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또한, 신 물질주의적 테제들은 법학교육이나 법률서비스 시장의 문제와 같이 지난 이십여년 간 변호사와 법학교수 및 이해관계자들을 중심으로 갈등을 빚어온 사법개혁 문제에 대한 원칙적 기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Maxeiner, & Yamanaka, 2004).

첫째로 사회구조와 변호사제도를 생각할 때, 이는 객관적 영역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즉 객관성과 사회적으로 표출되고 있는 인간들의 상호관계를 통하여 개념화될 수 있다. 사회구조는 인간과 물리적 대상에서 탄생하며, 인간관계의 빈도 (frequency), 집중도(intensity), 다양성(diversity)에 따라 기계적 사회와 유기체적 사회를 구분 지운다. 사회구조에 관한 기본 3요소는 변호사제도를 고안하는 정책 담당자들이 항상 마음에 담아두어야 하고, 전문직 그룹인 변호사집단의 사회화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동질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제도를 고안하여야 할 것이다(Durkheim, 2018; Schinkel, & Noordegraaf, 2011; Swartz, 2012). 이러한 과정에서 본 연구의 결과가 참고될 수 있다. 지난 이십여년 간, 그리고 앞으로도 문제될 수 있는 변호사제도 문제의 출발점은 변호사간 공유할 수 있는, 비물질적 · 추상적 상징과 거기에 부합하는 정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체성과 의미라 할 수 있고, 제도 변혁기의 정책담당자는 항상 그러한 차원에서 생각하고 반추해 보아야 한다. 로스쿨과 같은 법학교육의 혁신, 변호사간 빈부 격차, 변호사회의 여러 공적 프로그램이나 교육 훈련의 보조 등 정책적 문제들의 한 중앙에는 변호사들의 축제나 종교적 신성감의 문제가 자리잡고 있으며, 이는 고대 로마나 봉건사회의 원시적 변호사와 달리 근 · 현대 민주주의 내지 시민사회의 기본 인식틀과 공화되어야 하고, 새로운 경영학적 물질주의 철학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Lowith, 2002; Turner, & Factor, 2003).

두번째 요소인 문화는 에고 (Ego)와 대체에고 (Altar) 사이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관한 유의미한 내용을 발현하는 정신적 구조물로서 자아내 인식간극 (inter-subjective system)이나 정신의 이중발현 (double contingency) 과 같은 성격을 갖는다(Turner, 2002; Gerhardt, 1993). 그러나 집단적 양심 (conscience collective)이 문화를 구성한다고 하면, 법이나 윤리강령을 만드는 등 변호사제도를 고안한다거나 사법제도를 개혁하는 과정에서 집단적 양심의 문제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집단적 양심은 집단적 정체감과 관련되는 것으로 현대 정보화 사회, 초극적인 정보공유 시대, 토론장의 광역화, 새로운 변호사회와 리더십 등 기본적 문제와 관련하여, 최소한 전문직에 관한한 교육 · 전수가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 본 논문 방법론과 같은 양적 연구가 단순히 공공적 합리성을 위한 기초자료가 된다면, 그것만으로는 지난 20여년과 같이 변호사나 법학교수 등 이해관계자간 갈등과 합의의 부재만이 반복될 수 있다(Chen, & Morley, 2006; Hall, 1996). 변호사 사회 내 변호사들 사이에 공통되는 신념과 정서가 필수적 요소가 되어 문화와 관련하여 중요한 축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현대 전문가사회를 이해하는 사회학적 · 철학적 틀에 부합하는 것이다. 자아와 대체자아간 원활한 내적 소통을 위하여는 변호사들 스스로 새로운 규범과 가치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닥친 과제는 현재의 실제적 대상을 공유할 수 있는 태도를 견지하고, 그 바탕 하에 집단적 표상이 가능하도록 추상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에 설치된 새로운 사법정책연구원이 이러한 과제의 한 축을 맡을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교육계 화두인 평생교육 시스템과 맞물려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세번째 차원의 문제인 “인간의 인식 내지 의지 영역”과 관련하여 보면, 이는 매우 열악하고 외부의 힘, 비실증적이거나 주관적인 요소들에 의하여 수동적으로 형성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인간의 인식이나 의지는 현대 자본주의 및 전문직업인들이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창구가 된다. 한편으로 기존의 문화적 범주 속에서 영향을 받아 형성되지만, 새로운 정책이나 개혁적 대안 속에서 바뀌어 나갈 수 있다(Chomsky, & Foucault, 2006; Swartz, 2012; Hall, 1996). 예컨대 한국의 경우 성 자본주의 (gender capitalism)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행동강령이 필요한 것이 한 예가 된다. 즉 서구 자본주의 국가에 비해 그러한 논의가 빈약한 것은 바람직한 변호사 제도를 위하여 우려스럽다. 앞서 시민의 의식조사에서도 살펴보았지만 변호사의 상업적 광고 허용도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변호사 전분분야 등록 문제 역시 앞서 본 연구결과를 고려하여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로스쿨 제도도 미국과 다른 사회 문화적 성격을 갖는 한국사회 내에서, 그 상업적 성격의 정도나 헌법시스템 등 변수 등을 고려하여 항상 재검토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사회 구조라는 것은 단순한 사회적 사실에 불과하다. 사법시스템이나 변호사제도를 고안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행동주의와 개혁을 향하는 정책담당자들의 자세라 할 수 있다.

제 3 절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방향

첫째, 본 연구는 동일한 응답자가 모든 정보를 제시하였다는 측면에서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variance)[15]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 그룹, 즉 로스쿨 교수, 로스쿨 학생, 법과대학 교수, 법과대학 학생, 시민 그

15) 동일방법편의란 동일한 측정도구와 응답원에 의해 측정하였을 경우에 발생하는 오류로서, 이는 측정의 타당도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연구모형 내 변수 간 관계의 정도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켜 연구결과를 왜곡할 수 있다. 한편 응답자의 사회적 욕구가 개입하여 보다 개인의 편견과 객관적 공정성과 모순 될 수 있는 사회적 바람직성(social desirability)에 따른 문제점도 존재할 수 있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룹 등 여러 원천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온라인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온라인 사회조사에서 흔히 제기되는 문제인 통신망 이용자들의 구성과 일반 모집단의 인구학적 특성이라는 모집단 규정의 문제, 표본의 대표성 혹은 표집틀 오차의 문제, DB 다량이용자의 과잉대표와 같은 선택편기 문제 등이 본 연구의 한계가 된다. 한편, 설문문항이 약간 난해한 측면도 있어 응답자가 고의로 또는 사실에 대한 불충분한 이해로 왜곡되거나 정확하지 못한 정보를 제공할 응답오차(response error)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한계를 갖는다.

셋째, 본 연구는 조절초점과 사고방식을 변수로 사용하였다. 개인의 성향과 개인의 사고방식을 변수로 하여 법제도 또는 공공정책적 차원의 문제를 조사한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상호 비교 및 분석에 있어 한계와 제한점이 있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광고나 경영학적 차원에서 많이 이용하는 개인의 성향이나 사고방식과 공공정책적 문제들에 관한 보다 적극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조절초점성향이나 사고방식의 측정을 위해 외국에서 개발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는 서양 중심의 인간관 내지 세계관이 한국인, 한국사회 문제를 이해하는데 기준 척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나아가 본 연구의 한계가 된다. 국내 정서와 특성에 맞는 측정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다섯째, 본 연구는 변호사제도 및 4개의 개별쟁점에 대하여 조절초점성향과 사고방식의 차이에 따른 그룹간 비교를 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법과대학 교수와 로스쿨 교수간, 로스쿨 학생과 일반 대학생간 등등 연구자의 필요에 따라 변수들을 설정하여 실증조사를 기반으로 심도있는 연구를 행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향후 연구에서는 기각된 쟁점들에 관한 여러 하위요인을 고려한 연구를 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이 관계를 조절할 수 있는 생략변인 등에까지 확대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본 연구는 횡단적 분석만을 하였다는 한계를 가지는 바,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한계점을 극복하고 종단적 분석을 통해 변수간의 정확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한 인과관계까지도 규명할 과제가 있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참고문헌

국내문헌

강동욱. (2014). 피해자변호사제도와 그 개선방안. 홍익법학, 15(1), 249-276.

강명구. (1993). 한국 언론전문직의 사회학 (나남신서 263) (Vol. 263). 나남.

具相鎭. (2010). 새 법학교육체제의 운영방안: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지향점과 실무교육방안을 중심으로. 저스티스, 246-278.

김성만. (2010). 법조 전문화의 현황과 제고 방안. 저스티스, 636-647.

김성배. (2010). 영국의 법률전문가집단의 변화와 개혁. 유럽헌법연구, 8, 331-365.

김영환. (2012). 21 세기 지식기반사회와 변리사의 역할. 유럽헌법연구, 223-253.

김용섭. (2015). 변리사의 소송대리인 자격제도에 관한 법정책적 논의. 영남법학, 40, 101-127.

김재희. (2017). 범죄피해자 변호사제도의 의의 및 향후과제. 피해자학연구, 25(2), 5-29.

김제완. (2012). 일반논단: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졸업생의 진로와 제도개선방안.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3(2), 147-181.

김종철. (2005).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교육내용과 방법에 대한 소견. 동아법학, (37), 289-331.

김종철. (2006). 세계화시대의 법학교육의 과제와 전망. 저스티스, 149-167.

남선모. (2014). 현행 로스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법학논총, 31, 67-86.

민원홍, 이형섭, & 김현민. (2010). 보호관찰관의 사회복지전문직 정체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보호관찰, 10(2), 189-225.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박경재. (2011). 변호사의 상인성. 법조, 60(4), 119-157.

박동진. (2011). 법조인 양성을 위한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 방향. 저스티스, 35-64.

박선아. (2017).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와 직무외 비행. 법학논총, 34(4), 185-202.

박선영. (2010). 진입장벽 높은 로스쿨은 위헌적이고, 실무교육도 미흡해. 고시계, 55(8), 84-86.

백태승. (2011). 사법연수원은 로스쿨 시대에도 유지되어야. 고시계, 56(6), 76-78.

서순복. (2012). 이른바 '무변촌'의 해소와 소규모 간이법원에 관한 서설적 연구. 법학논총, 19, 89-115.

설민수. (2016). 머신러닝 인공지능의 법 분야 적용의 현재와 미래: 미국의 현황과 법조인력 구조 및 법학교육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저스티스, 269-302.

성중탁. (2018). 변호사시험제도 등에 대한 평가와 그 개선방안. 법학논고, 63, 21-54.

신동운. (1988). [한국의 법조제도의 현황 및 개선책]: 논문; 한국 검찰제도의 현황과 개선책.

신평. (2013). 전관예우의 근절책. 법학논고, 43, 1-28.

안경환. (1988). [한국의 법조제도의 현황 및 개선책]: 논문; 법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안경환. (2005). 'Law School'의 본질과 현상. 동아법학, (37), 277-288.

안현준, & 최재용. (2015). 개정된 피해자 변호인제도에 대한 고찰. 형사정책연구, 26(3), 129-155.

양정남, 최은정, 김장훈, & 김건태. (2015). 사회복지기관 실무자의 감정노동과 이직의도 간의 영향 관계에 관한 연구-전문직 자아개념과 사회적 지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교육, 32, 89-116.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염형국. (2013). 공익인권 법무 분야의 현황과 전망; 한국의 공익변호사 현황과 전망. 공익과 인권, 13, 5-47.

오정면. (2010). 신규법조인력의 활용 방안. 저스티스, 245-253.

오종근. (2007). 변호사업무광고에서 전문분야 표시의 문제점과 전문변호사제도 도입. 법조, 56(5), 5-43.

유선봉. (2003). 로스쿨제도 도입 후 학부과정에서의 법학교육방향과 패러리걸제도의 국내도입에 관한 소고. 중앙법학, 5(3), 103-128.

육소영. (2004). 미국 로스쿨 제도의 조망. 법학논총, 14, 165-181.

이경수, 김태형, 정재광, & 안상진. (201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정책의 타당성 검증을 위한 경제성및 로지스틱 회귀분석. J. Korean Soc. Hazard Mitig, 13(6), 167-178.

이경원, & 김정화. (1996). 기고논문: 법조인의 위기와 대응; 사법개혁의 정치; 사회학적 접근. 한국정책학회보, 5(2), 206-239.

이관희. (2005). [이달의 쟁점] 로스쿨 도입반대 이유와 대안. 고시계, 50(12), 98-104.

이관희. (2011). 한국법학교육의 정상화 과제. 공법연구, 39, 263-287.

이병규. (2018). 인공지능 (AI) 법률서비스에 대한 변호사법 제 109 조 제 1 호 적용 여부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18(2), 131-158.

이석현, 법률적, & 대책. (2017). 4 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공지능과 법률전문가의 대응. 글로벌기업법무리뷰, 10, 115-142.

Lee, Y. H. (2008). 프로페셔널리즘: 전문직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과 전망 (박호진 역). Korea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20(3), 276-276.

이용구. (2011). 신규 법조인력 활용방안. 저스티스, 91-122.

이재협, 이준웅, & 황현정. (2015). 로스쿨 출신 법률가, 그들은 누구인가?-사법연수원 출신 법률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 56(2), 367-411.

이제원. (2009). Global Law Column (5)-로스쿨 졸업 후의 변호사 교육. 고시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계, 54(5), 416-419.

이준웅, & 이재협. (2016). 경험적 법률가 연구의 발전을 위하여-이호선의 [법과 정책연구] 글에 대한 검토와 제언. 법과 정책연구, 16(2), 321-345.

이호선. (2012). 법조인력 양성제도로서의 사법시험 존치의 필요성과 그 당위성. 법학논총, 25(2), 9-54.

이호선. (2015-1). 미국식 로스쿨의 역사가 주는 제도적 시사점. 법학논총, 28(2), 9-54.

이호선. (2015-2). 법조인 양성을 위한 대한민국의 입법적 과제-현행 사법시험법 및 변호사시험법 개정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39(3), 435-468.

이호선. (2015-3). 한국 로스쿨 체제, 과연 사법시험의 대안인가?. 법과 정책연구, 15(4), 1547-1595.

이호선. (2015-4). 현행 로스쿨 운영 및 성과에 관한 실증적 분석과 그 시사점. 법과 정책연구, 15(2), 497-531.

이호선. (2016-1). 정의론적 관점에서 본 한국식 로스쿨 제도. 법학논총, 23, 39-80.

이호선. (2016-2). 헌법상 공무담임권의 철학적 함의. 유럽헌법연구, 423-455.

임지봉. (2010). 변호사시험에서 헌법분야의 출제방향 및 대응. 세계헌법연구, 16, 199-220.

전경근. (2014). 로스쿨 민법교육과정의 현황과 문제점. 아주법학, 7(4), 67-95.

정준영. (2004-1). 미국의 공적변호제도 및 그 도입가능성 (1). 법조, 53(7), 65-124.

정준영. (2004-2). 미국의 공적변호제도 (公的辯護制度) 및 그 도입가능성 (導入可能性)(2). 법조, 53(8), 101-178.

정지혜. (2015). 공판과정에서의 국선피해자참가변호사제도 도입을 위한 비교연구-일본변호사연합회와 법테라스의 운영현황 분석을 통한 시사. 비교형사법연구, 17(2), 21-44.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정형근. (2009). 변호사의 직업윤리에 대한 고찰. 법조, 58(6), 278-324.

정형근. (2010). 변호사의 보수에 관한 고찰. 법조, 59(6), 213-249.

조천권. (2017). 기업이 바라는 한국지식재산법률서비스의 미래-특허 등 침해 소송에서의 변리사 소송대리권을 중심으로. 산업재산권, 52, 33-69.

천경훈, & 이상훈. (2015). 보고: 로스쿨 도입 이후 일본의 학문후속세대 양성-서울대와 도쿄대, 교토대의 비교. 서울대학교 법학, 56(3), 223-248.

최남석. (2013). 법률서비스 시장개방과 규제개혁의 경제적 효과 분석. 규제연구, 22(1), 95-129.

카이쓰 맥도날드. & 오훈권. (1999). 전문직의 사회학: 의사, 변호사, 회계사의 전문직프로젝트 연구. 일신사.

하태훈. (2013). 사법에 대한 신뢰. 저스티스, 575-592.

한상희. (2004). '변호사 적정수'의 아젠다. 법과 사회, 27, 9-34.

한상희. (2008). 한국 법학전문대학원의 과제와 전망: 법조윤리,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법과 사회, 35, 73-102.

한상희. (2010). 다시 사법개혁을 말한다; 우리 변호사체계의 문제점-법치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실태분석. 민주법학, 43, 271-315.

한상희. (2014). 일반논단: 야간로스쿨 설치 방안: 법률전문직의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제안. 법과 사회, 46, 373-423.

황남석. (2010). 변호사의 상인성에 관한 소고. 성균관법학, 22, 1024-1046.

황승흠. (2004). 변호사의 공익활동의무. 법과 사회, 26, 237-263.

黃海鳳. (2007). 로스쿨법의 주요 쟁점과 과제. 공법연구, 36, 207-234.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국외문헌

Albrow, M. (1975). Legal positivism and bourgeois materialism: Max Weber's view of the sociology of law. Brit. JL & Soc'y, 2, 14.

Ball, S. J. (2013). Foucault and education: Disciplines and knowledge. Routledge.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 - 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

Baum, G. (1996). Karl Polanyi on ethics and economics. McGill-Queen's Press-MQUP.

Bernabe-Riefkohl, A. (1995). Tomorrow's law schools: globalization and legal education. San Diego L. Rev., 32, 137.

Bernstein, I. H., & Nunnally, J. C. (1994). Psychometric theory. New York: McGraw-Hill. Oliva, TA, Oliver, RL, & MacMillan, IC (1992). A catastrophe model for developing service satisfaction strategies. Journal of Marketing, 56, 83-95.

Black, K. D., & Black, S. T. (2004). A national tax bar: An end to the attorney-accountant tax turf war. . Mary's LJ, 36, 1.

Bok, D. C. (1983). Flawed System of Law Practice and Training, A. J. Legal Educ., 33, 570.

Brown, H. P. (1975). The Paralegal Profession. Howard LJ, 19, 117.

Brooks, M. (1994). Lawyer Advertising: Is There Really a Problem?. Loy. LA Ent. LJ, 15, 1.

Burawoy, M. (2003). For a sociological Marxism: the complementary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convergence of Antonio Gramsci and Karl Polanyi. Politics & Society, 31(2), 193-261.

Burlin, J. P. (1991). Lawyer Certification and Model Rule 7.4: Why We Should Permit Advertising of Specialty Certifications. Geo. J. Legal Ethics, 5, 939.

Burnham, W. (1995). Introduction to the law and legal system of the United States. St. Paul, Minn: West Publishing Company.

Calvani, T., Langenfeld, J., & Shuford, G. (1988). Attorney advertising and competition at the bar. Vand. L. Rev., 41, 761.

Chen, K. H., & Morley, D. (Eds.). (2006). Stuart Hall: Critical dialogues in cultural studies. Routledge.

Chitturi, Ravindra, Rajagopal Raghunathan and Viajay Mahajan (2008), "Delight by Design: The Role of Hedonic Versus Utilitarian Benefits," Journal of Marketing, 72(3), 48-63.

Choi, Incheol, Minkyung Koo, and Jong An Choi (2007), "Individual Differences in Analytic Versus Holistic Thinking,"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3(5), 691-705.

Chomsky, N., & Foucault, M. (2006). The Chomsky-Foucault debate: on human nature. The New Press.

Collyer, F. M. (2015). Practices of conformity and resistance in the marketisation of the academy: Bourdieu, professionalism and academic capitalism. Critical Studies in Education, 56(3), 315-331.

Crowe, Ellen and E. Tory Higgins (1997), "Regulatory Focus and Strategic Inclinations: Promotion and Prevention in Decision-Making,"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69(2), 117-132.

Dorf, M. C., & Sabel, C. F. (1998). A constitution of democratic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experimentalism. Colum. L. Rev., 98, 267.

Durkheim, E. (2013). Émile Durkheim on institutional analysi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Durkheim, E. (2018). The division of labor in society. In Inequality (pp. 55-64). Routledge.

Ehrmann, H. W. (1976). Comparative legal cultures (pp. 12-15). New Jersey: Prentice-Hall.

Evetts, J. (2003). The sociological analysis of professionalism: Occupational change in the modern world. International sociology, 18(2), 395-415.

Foucault, M. (2013). Politics, philosophy, culture: Interviews and other writings, 1977-1984. Routledge.

Fox, N. J., & Alldred, P. (2016). Sociology and the new materialism: Theory, research, action. Sage.

Friedman, L. M. (1975). The legal system: A social science perspective. Russell Sage Foundation.

Freidson, E. (1988). Professional powers: A study of the institutionalization of formal knowledg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Freidson, E. (1994). Professionalism reborn: Theory, prophecy, and polic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Freidson, E. (1973). The professions and their prospects.

Freidson, E., Chamboredon, J. C., & Menger, P. M. (1986). Les professions artistiques comme défi à l'analyse sociologique. Revue française de sociologie, 27(3), 431-443.

Fromson, D., & Miller, C. H. (1975). Specialty Certification, Designation, or Identification for the Practicing Lawyer-A Look at Midstream. . John's L. Rev., 50, 550.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Gentner, Dedre and José Medina (1998), “Similarity and the Development of Rules,” Cognition, 65(2-3), 263-297.

Gerhardt, U. (Ed.). (1993). Talcott Parsons on national socialism. AldineTransaction.

Giddens, A. (1971). Capitalism and modern social theory: An analysis of the writings of Marx, Durkheim and Max Weber. Cambridge University Press.

Glendon, M. A., Gordon, M. W., Osakwe, C., Gordon, M. W., & Osakwe, C. (1982). Comparative legal traditions in a nutshell. West Publishing Company.

Glenn, H. P. (2006). Comparative legal families and comparative legal traditions. In The Oxford Handbook of Comparative Law.

Gordon, R. W. (1996). The path of the lawyer. Harv. L. Rev, 110, 1013.

Hall, S. (1996). Who needs identity. Questions of cultural identity, 16(2), 1-17.

Haws, K. L., Dholakia, U. M., & Bearden, W. O. (2010). An assessment of chronic regulatory focus measure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47(5), 967-982.

Hayes, A. F. (2009). Beyond Baron and Kenny: Statistical mediation analysis in the new millennium. Communication monographs, 76(4), 408-420.

Heinz, J. P. (2011). Lawyers′ Professional and Political Networks Compared: Core and Periphery. Ariz. L. Rev., 53, 455.

Higgins, E. Tory (1997), “Beyond Pleasure and Pain,” American Psychologist, 52(11), 1280-1300.

_____ (2000), “Making a Good Decision: Value from Fit,” American Psychologist, 55(11), 1217-1230.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_____ (2002), "How Self-Regulation Creates Distinct Values: The Case of Promotion and Prevention Decision Making," Journal of Consumer Psychology, 12(3), 177-191.

_____, Ronald S. Friedman, and James Shah (1997), "Emotional Responses to Goal Attainment: Strength of Regulatory Focus as Moderat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3), 515-525.

Horsky, C. A. (1952). The Washington lawyer: a series of lectures delivered under the auspices of the Julius Rosenthal Foundation of Northwestern University School of Law, in April 1952. Little, Brown.

Hykand Jr, W. G. (2010). Attorney Advertising and the Delcine of the Legal Profession. J. Legal Prof., 35, 339.

Idson, Lorraine Chen, Nira Liberman, and E. Tory Higgins (2004), "Imagining How You'd Feel: The Role of Motivational Experiences From Regulatory Fit,"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0(7), 926-937.

Jain, Shailendra Pratap, Nidhi Agrawal, Durauraj Maheswaran (2006), "When More May Be Less: The Effects of Regulatory Focus on Responses to Different Comparative Frame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33(1), 91-98.

Ji, Li-Jun, Kaiping Peng, and Richard E. Nisbett (2000), "Culture, Control, and Perception of Relationships in the Environ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5), 943-955.

Johns, H. E. (1988). From Bigelow to Shapero: Steps Along the Way in Attorney Advertising. Akron L. Rev., 22, 173.

Johnstone, Q. (1989). Future of Paralegal Education, The. J. Paralegal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Educ. & Prac., 6, 27.

Kahn-Freund, O. (1966). Reflections on legal education. Mod. L. Rev., 29, 121.

Kaiser, H. F. (1974). An index of factorial simplicity. Psychometrika, 39(1), 31-36.

Kalyvas, A. (2008). Democracy and the politics of the extraordinary: Max Weber, Carl Schmitt, and Hannah Arendt.

Kennedy, D. (2007). Legal education and the reproduction of hierarchy: A polemic against the system. NYU Press.

Kilpatrick, J. (1997). Specialty Lawyer Associations: Their Role in the Socialization Process. Gonz. L. Rev., 33, 501.

Kim, Kyoungmi and Gangseog Ryu (2008), "Regulatory Focus and Tensile Price Claims," Journal of Korean Marketing Associations, 23(4), 197-217.

Kolsaker, A. (2008). Academic professionalism in the managerialist era: A study of English universities. Studies in Higher Education, 33(5), 513-525.

Koo, Minkyung and Incheol Choi (2005), "Becoming a Holistic Thinker: Training Effect of Oriental Medicine on Reasoning,"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1 (9), 1-9.

Kritzer, H. M. (1997). Rethinking barriers to legal practice. Judicature, 81, 100.

Lee Kiljae, Jungsil Choi, and Yexin Jessica Li (2014), "Regulatory Focus as a Predictor of Attitudes Toward Partitioned and Combined Pricing," Journal of Consumer Psychology, 24(3), 355-362.

Liberman, Nira, Daniel C. Molden, Lorraine C. Idson, and E. Tory Higgins (2001), "Promotion and Prevention Focus on Alternative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Hypothesis: Implications for Attributional Func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0(1), 5-18.

Lidsky, L. B., & Peterson, T. J. (2007). Medium-specific regulation of attorney advertising: A critique. U. Fla. JL & Pub. Pol'y, 18, 259.

Lowith, K. (2002). Max Weber and Karl Marx. Routledge.

Lumbard, T. (1981). Specialty Certification for Lawyers: The National Alternative to the Non-Existent State Programs. Women Law. J., 67, 23.

Macdonald, K. M. (1995). The Sociology of the Professions: SAGE Publications. Sage.

Manning, B. (1973). Law Schools and Lawyer Schools--Two-Tier Legal Education. J. Legal Educ., 26, 379.

Masuda, Takahiko and Richard E. Nisbett (2001), "Attending Holistically Versus Analytically: Comparing the Context Sensitivity of Japanese and Americans," Personality Processes and Individual Differences, 81(5), 922-934.

Maute, J. L. (1985). Scrutinizing Lawyer Advertising and Solicitation Rules Under Commercial Speech and Antitrust Doctrine. Hastings Const. LQ, 13, 487.

Maxeiner, J. R., & Yamanaka, K. (2004). The New Japanese Law Schools: Putting the Professional into Legal Education. Pac. Rim L. & Pol'y J., 13, 303.

Merryman, J. H. (1974). Legal education there and here: A comparison. Stan L. Rev., 27, 859.

Meyer, T. S., & Smith, R. E. (1978). Attorney Advertising: Bates and a Beginning. Ariz. L. Rev., 20, 427.

Mindes, M. W. (1975). Lawyer Specialty Certification: The Monopoly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Game. ABAJ, 61, 42.

Nisbett, Richard E., Kaiping Peng, Incheol Choi, and Ara Norenzayan (2001), "Culture and Systems of Thought: Holistic versus Analytic Cognition," Psychological Review, 108(2), 291-310.

Orenstein, T. P. (1984). Delegating effectively to a paralegal. Legal Econ., 10, 51.

Parsons, T. (1991). The social system. Psychology Press.

Perry, L. M. (1962). Unauthorized Practice of Law by Realtors and Title Insurance Companies. Temp. LQ, 36, 334.

Polanyi, K. (2018). The economy as instituted process. In The sociology of economic life (pp. 3-21). Routledge.

Raz, J. (1970). The concept of a legal system (pp. 26-43). Oxford: Clarendon.

Ritzer, G. (1975). Professionalization, bureaucratization and rationalization: The views of Max Weber. Social Forces, 53(4), 627-634.

Rhode, D. L. (1996). Professionalism in Perspective: Alternative Approaches to Nonlawyer Practice. NYU Rev. L. & Soc. Change, 22, 701.

Rousso, L. (2000). Japan's New Patent Attorney Law Breaches Barrier between the Legal and Quasi-Legal Professions: Integrity of Japanese Patent Practice at Risk. Pac. Rim L. & Pol'y J., 10, 781.

Schinkel, W., & Noordegraaf, M. (2011). Professionalism as Symbolic Capital. Materials for a Bourdieusian Theory of Professionalism. Comparative Sociology, 10, 67-96.

Smart, A. (1993). Gifts, bribes, and guanxi: A reconsideration of Bourdieu's social capital. Cultural anthropology, 8(3), 388-408.

Slapper, G., & Kelly, D. (2003). The English legal system.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Routledge-Cavendish.

Smith, R. E., & Meyer, T. S. (1980). Attorney advertising: A consumer perspective. Journal of Marketing, 44(2), 56-64.

Sonsteng, J. O., Ward, D., Bruce, C., & Petersen, M. (2007). A Legal Education Renaissance: A Practical Approach for the Twenty-First Century. Wm. Mitchell L. Rev., 34, 303.

Sypnowich, C. (1990). The concept of socialist law.

Sueldfed, P., & Tetlock, P. E. (1991). Psychologist as policy advocates: the roots of controversy.

Swartz, D. (2012). Culture and power: The sociology of Pierre Bourdieu. University of Chicago Press.

Swedberg, R. (2018). Max Weber and the idea of economic sociology. Princeton University Press.

Thies, D. (2009). Rethinking legal education in hard times: The recession, practical legal education, and the new job market. J. Legal Educ., 59, 598.

Trubek, D. M. (1972). Max Weber on law and the rise of capitalism. Wis. L. Rev., 720.

Tunney, J. V., & Frank, J. L. (1974). Federal Roles in Lawyer Reform. Stan L. Rev., 27, 333.

Turner, S. (2002). Brains/practices/relativism: Social theory after cognitive scienc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Turner, S. P., & Factor, R. A. (2003). Max Weber: The lawyer as social thinker. Routledge.

Turner, S. (1994). The Social Theory of Practices: Tradition. Tacit Knowledge,

Turner, S. (2001). What is the Problem with Experts?. Social studies of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science, 31(1), 123-149.

Wallace, J. P., & McKelvey, M. R. (1987). Regulating attorney advertising. Tex. Tech L. Rev., 18, 761.

Weber, M. (1954). Max Weber on law in economy and society (Vol. 6). Harvard University Press.

Yoo, Changjo and Soeun Hyun (2011), "Comparative Analysis on the Effects of Tensile Price Discounts by Discount Size and Regulatory Focus," Journal of Consumer Studies, 22 (2), 253-275.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부록]

<설문지>

한국의 변호사제도에 대한 인식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대학생과 시민들을 상대로 한국의 변호사 제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조사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평가결과는 김기영의 박사학위논문을 통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분석과 학문적인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통계법 제33조 따라 응답은 익명으로 처리되어 철저한 비밀이 보장될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설문에 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의: 조선대학교 경상대학 박사과정 김 기영 ☎ 062-230-7694
kiyoungkim@chosun.ac.kr

A. 아래 문항은 당신의 사고방식 유형을 알고자 하는 문항들입니다. 제시된 문항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매우 그렇다
1. 어떠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분보다는 전체에 주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부분은 전체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세부적인 사항보다 전체적인 맥락에 주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B. 아래 문항은 당신의 성격과 인지적 특성을 알고자 하는 문항들입니다. 제시된 문항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게 중요한 것을 성취할 수 있는 시점에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만큼 잘 해내지는 못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나는 내 삶을 성공적인 방향으로 잘 진행시켜왔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3.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발견하면 바로 신이 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나는 내가 희망하거나 열망하는 것을 어떻게 달성할까에 대해서 자주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나는 부모님이 정해 놓은 규칙과 규정을 잘 지킨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나는 주의를 충분히 기울이지 않아 문제가 생기곤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나는 내가 실수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나는 내 인생에서 어떻게 하면 실패를 하지 않을까에 대해서 자주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나는 주로 의무적인 나에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C. 아래 문항은 변호사 제도에 관한 당신의 생각을 알고자 하는 문항입니다. 제시된 문항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매우 그렇다
1. 변호사제도는 민주주의와 관련이 깊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변호사제도가 국민을 교육시키고 민주시민으로서 소양을 갖추도록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변호사가 국회의원이나 정계에 진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변호사들의 역할에 따라 자유주의나 사회주의와 같은 국가의 이념적 성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변호사제도를 규제함에 있어 국회가 제정한 변호사법이 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변호사제도와 관련하여 변호사회 윤리강령 등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보십니까?							
7. 변호사제도는 지식산업으로서 성격보다는 공공이익적 차원의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변호사들도 시장에서 일반기업과 똑같은 수준의 경쟁원리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변호사들에게 꼭 필요한 직업윤리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국가가 일부 비용을 보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국가나 변호사회의 관여 없이 변호사의 수임료 문제를 시장원리에 맞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 대형 로펌과 개인 변호사간의 소득격차 등 변호사간 부익부 빈익빈 문제는 당연한 것이며 공적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 법률소비자로서 변호사를 접견한다고 했을 때 대형 로펌과 소규모 변호사회사간 친근감에 차이가 존재합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3. 변호사는 지식산업이므로 공무원제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D. 아래 문항은 로스쿨과 법조관행에 관한 당신의 생각을 알고자 하는 문항입니다. 제시된 문항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설문항에서 로스쿨은 학부수료 후 대학원에서 3년의 수업을 통하여 변호사를 양성하는 한국의 법학전문대학원을 지칭하며, 이는 본 연구목적상 사법시험 플러스 사법연수원 2년 연수를 통한 변호사 양성제도와 대칭되는 개념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매우 그렇다
1. 변호사를 양성함에 있어 사법연수원과 같이 국가가 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사법시험 제도는 로스쿨 제도와 비교하여 부익부 빈익빈 사회에서 사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계층화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3. 현행 로스쿨 제도가 변호사를 양성함에 있어 충분한 기능을 다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로스쿨 졸업후에 국가나 변호사회의 6개월 수습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50% 이하로 낮아져도 이를 인위적으로 올릴 필요는 없다고 보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로스쿨 장학금 등으로 대학이 재정난을 맞는다면 국가가 그 손실의 일부를 보조해 주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하여 로스쿨과 사법연수원 중 로스쿨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고 보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로스쿨 제도로 인하여 판사, 검사, 변호사 등 소위 법조 3륜이 잘 융화되어 법조일원화가 현실화되어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귀하는 로스쿨 출신변호사와 과거 사법시험 출신변호사 중 어떠한 출신 배경의 변호사에게 친근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 아래 문항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당신의 생각을 알고자 하는 문항입니다. 제시된 문항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변호사 광고란 변호사나 변호사 회사 등을 대중에 노출시켜 위임인을 유인하는 상업적 목적의 광고를 의미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매우 그렇다
1.변호사가 상업적 광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광고의 시간과 수단은 국가가 규제하여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위 문항과 관련하여) 변호사회의 규제만으로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법률신문이나 법률케이블 채널 등 자신들의 직역과 관련된 미디어를 통해서만 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5. 인터넷 포털을 포함하여 가능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일반 신문이나 케이블 채널 전반적으로 가능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KBS 등 공영방송을 제외한 모든 TV 또는 라디오 방송에서 가능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광고의 내용에 관하여 국가가 규제하여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위 문항과 관련하여) 변호사회의 규제만으로도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학력, 경력, 출신기수 등 광고의 내용은 기본적인 사항만을 담은 간단한 것이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 자신의 수임건수, 승소율 등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담고 있어도 무방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 법률전문적 사항 외에 사회에의 공헌실적이나 정치적 업적을 삽입하여도 무방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3. 자동차광고와 같이 자극적인 배경을 가져서는 안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4. 허위나 반윤리적 광고에 대해서는 일반 기업의 경우보다 엄하게 처벌하여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F. 아래 문항은 변호사의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당신의 생각을 알고자 하는 문항입니다. 제시된 문항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변호사전문분야 등록 관리제도: 변호사전문분야 등록관리제도란 변호사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 동 규정 제 1조에서 "이 규정은 변호사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분야를 등록·관리함으로써 변호사 업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각 업무분야의 전문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하 전문분야 등록제도라 칭한다.**

1. 변호사의 전문분야 등록 제도에	전혀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대하여 찬성하십니까?	그렇지 않다						
2. 전문분야 등록제도는 현재와 달리 국가가 규제하여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전문분야는 20-30개 정도이면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전문분야가 50-60개 정도는 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엄격한 요건에 따른 심의를 거쳐 전문분야에 등록하였다 하더라도 5년후 다시 심사를 받는 제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전문분야의 등록이 변호사의 경쟁력을 참고함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전문분야 등록 심사비용은 고액이어도 상관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전문분야 등록제도로 변호사들이 자신의 업적을 관리하고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노력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전문분야 등록제도는 형식적인 것으로 변호사간 위화감만을 불러올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전문분야 등록에 있어 변호사 자격이 있는 법학교수의 경우 최근 3년 혹은 5년간 사건수임 수요건 등을 적용해서는 안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 전문분야 등록 사실은 변호사 광고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							
12. 세무분야나 특허분야 등 다른 전문직역과 경합할 수 있는 분야는 광고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G. 변호사와 세무사 또는 변리사 등 유사 전문직역간 관계에 관한 다음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설문에서 유사 전문직역이란 변호사 업무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부동산 중개사 등의 직역을 의미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매우 그렇다
1. 변호사와 유사 전문직역간 관계는 다른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엄격하게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법치주의 관점에서 다른 유사직역의 업무범위가 법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면 양자 관계는 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변호사가 당연히 세무사 또는 변리사 자격을 갖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변호사는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질 수 없는데, 공인회계사는 유사 전문직역으로서 세무사 또는 변리사와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변호사와 변리사가 특허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했을 때 변호사가 보다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변호사와 세무사가 세무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했을 때 변호사가 보다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특허법률서비스가 필요할 때 변호사보다 변리사를 선호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세무법률서비스가 필요할 때 변호사보다 세무사를 선호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마치면서 (해당되는 사항 옆 괄호에 O 표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직업은?

법학교수 ( )
비법학 교수 ( )
변호사 ( )
로스쿨 학생 ( )
법과대학 학생 ( )
회사원 ( )
기타 ( )

귀하의 성별은?

남성 ( )
여성 ( )

귀하의 연령은?

10대 ( )
20대 ( )
30대 ( )
40대 ( )
50대 ( )
60대 이상 ( )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